

| SRI-기본-2019-05 |

수원형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The Basic Research for the Establishment of a Barrier-Free Tourism Environment in Suwon

송화성

연구진

연구책임자 송화성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이한아름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조경신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연구 자문위원

엄서호 (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명예교수)
이수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본부 시군연구센터 연구위원)
이윤정 (호서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이진형 (목포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 2019 수원시정연구원

발행인 최병대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우편번호) 16429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00
<http://www.suwon.re.kr>
인쇄 2019년 12월 10일
발행 2019년 12월 10일
ISBN 979-11-90343-14-5 (93320)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 표시해 주십시오.
송화성. 2019. 「수원형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비매품

국문요약

수원시 인구 중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약 20%로, 장애인 인구는 경기도 시·군 중 가장 많고, 영유아는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다(2018년 기준). 수원시는 인구 현황과 시민의 필요를 반영하여 전국 최초로 고령·아동·여성친화도시로 모두 인증 받았으며, 장애인 친화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장애인복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광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조성을 목표로 다방면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수원 대표 관광자원인 수원화성 대상 현장조사 결과 도로나 화장실에 턱이 있어 장애인·고령자 이동에 제약이 있었으며, 영유아 편의시설의 안전장치 파손, 청결상태 불량으로 사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내 '관광활동의 차별금지' 조항이 신설되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로서 관광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서 수원화성의 실태는 수원시민이 권리로서 누려야 할 관광 향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관광 약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무장애 관광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관광약자들이 여가·관광 참여 시 경험하는 어려움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연구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선행연구 분석을 실시했으며, 국내 정책 및 국내·외 사례조사, 관광약자 의견조사 등을 통해 관광약자들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선행연구 분석 결과 장애인과 고령자, 영유아 모두 교통, 비용 등과 관련 있는 구조적 제약을 크게 인지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장애인은 시설(정보) 부족, 고령자는 경제적 부담, 영유아는 안전과 위생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대인적 제약에 있어 장애인과 고령자는 가족들의 염려 또는 반대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만 영유아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여가·관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아이의 행복에서 본인의 행복을 느낀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점은 관광 약자 대상 심층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대인적 제약에 있어 장애인과 영유아는 '조력자의 부재'를 경험했으며, 고령자는 '돌봐야 할 가족의 존재'로 인해 제약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조적 제약에서 고령자는 개인의 시간에 맞는 여가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장애인은 교통편, 편의시설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유아(보호자)는 아이들을 위해 수유실, 기저귀교환대, 놀이공간 등의 개선과 아이들을 고려한 먹거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처럼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는 사회적 약자로서 여가·관광 참여에 제약이 높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세부적인 제약의 내용들은 각자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관광약자 정책과 사업이 대부분 장애인을 중심으로 추진됨에 따라 고령자나 영유아의 필요와 욕구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을 기준으로 무장애 관광환경을 조성하는 것에서 나아가 각 집단의 유사점을 활용한 공통의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방안과 대상별 맞춤형 방안의 구분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기존 무장애 관광 정책 및 사업들과 차별화되는 수원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의 정책을 제안하는 바이다.

첫째, 장애인과 고령자, 영유아를 포괄하는 통일된 여가·관광 통계 조사가 필요하다. 무장애 관광을 위한 장기적·체계적 정책 실현을 위해 대상에 대한 세밀하고 정확한 실태분석이 필요하다. 수원시에서 '수원시 아동친화도 조사',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추진전략' 등을 통해 약자의 관광현황을 파악하였으나 상세한 정보가 부족하며, 연구별로 상이한 설문을 사용하여 공통점·차이점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수원시 무장애 관광' 정책 추진을 위해 관광 약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계의 정기적인 실시가 요구된다.

둘째,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 약자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해야 한다. 선행연구와 인터뷰를 통해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모두 '타인의 부정적 태도'라는 대인적 제약을 경험한 것을 확인했다. 장애인들은 이로 인해 '심리적 위축'이 발생하여 여가·관광을 포기할 것으로 우려되며, 최근 한국사회가 노인층에 대한 청장년층의 부정적 인식과 노키즈존으로 대표되는 영유아(보호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논란이 되는 바 관광 약자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 개선을 통해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가 여가·관광에 참여하는데 있어 '타인의 부정적 태도'로 고통 받지 않을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수원시 대표 관광지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한 '관광약자 별 맞춤형역 설정(zoning)'이 필요하다. 인프라 측면의 개선은 많은 예산과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표자원인 수원화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수원시 전역으로의 점진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시범사업지에 관광약자 공통방안과 대상별 맞춤형 방안을 적용하여 약자별로 맞춤형역을 설정한다면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의 세밀한 여가·관광 욕구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수원형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기반이 되는 수원시 조례 제정이 요구된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무장애 관광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률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책의 흐름을 점검하고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목표와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수원시가 관광 약자를 위해 추진해왔던 각종 사업과 계획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해왔던 '무장애 관광' 관련 정책이 관광분야에서 통합되어 관광 약자별로 보다 구체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무장애관광, 관광약자, 여가제약, 장애인·고령자·영유아관광, 관광약자 인식 개선 캠페인

차 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4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5
1. 연구 범위	5
2. 연구 방법	6
제2장 이론적 배경	7
제1절 관광약자의 여가제약	9
1. 여가제약의 개념 및 구성요인	9
2. 장애인의 여가제약	10
3. 고령자의 여가제약	13
4. 영유아의 여가제약	16
제2절 여가제약 비교 분석	20
제3장 무장애 관광여건 분석	25
제1절 국내 관광약자 정책	27
1. 관광약자를 위한 법률	27
2. 관광약자 관련 계획	39
3. 시사점	45
제2절 국·내외 무장애 관광 사례	46
1. 국내사례	46
2. 국외사례	51
3. 시사점	55

제3절 수원시 관광약자 정책	56
1.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추진전략	57
2. 수원시 장애인복지정책 5개년 기본계획 연구	58
3.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59
4. 시사점	60
제4절 수원화성 무장애 관광환경	61
1. 개요	61
2. 구간별 분석	63
3. 시사점	81
제4장 관광약자 관련 조사 및 분석	83
제1절 관광약자 여가·관광 실태	85
1. 분석 방법	85
2. 장애인 여가·관광 현황	86
3. 고령자 여가·관광 현황	89
4. 영유아 여가·관광 현황	92
5. 시사점	96
제2절 관광약자 여가·관광 제약	98
1. 조사 개요	98
2. 조사 결과	102
3. 대상별 분석	129
제5장 결론	141
제1절 종합분석	143
1. 연구 분석	143
2. 연구 시사점	147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149
제2절 정책 제언	150
1. 각 집단을 포괄하는 여가·관광 통계 실시	150
2. 관광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 실시	152
3.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한 ‘관광약자 별 맞춤형구역 설정(zoning)’	153
4. 무장애 관광을 위한 수원시 조례 제정	154

표 차례

〈표 2-1〉 여가제약	10
〈표 2-2〉 장애인의 여가제약	13
〈표 2-3〉 고령자의 여가제약	16
〈표 2-4〉 영유아의 여가제약	19
〈표 2-5〉 대상별 여가제약 비교분석	24
〈표 3-1〉 영유아·노인·장애인의 관광 관련 법률	27
〈표 3-2〉 ‘노인복지법’의 관광약자 관련 조항	29
〈표 3-3〉 ‘관광진흥법’의 관광약자 관련 조항	30
〈표 3-4〉 ‘장애인등편의법’ 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중 일부’ ..	32
〈표 3-5〉 ‘교통약자법’의 관광관련 조항	33
〈표 3-6〉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관광관련 조항	36
〈표 3-7〉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관광활동의 차별금지’ 조항	37
〈표 3-8〉 ‘가족친화법 시행규칙’의 관광관련 조항	38
〈표 3-9〉 ‘여가활성화법’의 관광관련 조항	38
〈표 3-10〉 무장애 관광 관련 계획	39
〈표 3-11〉 2015 ~ 2019 열린관광지	43
〈표 3-12〉 국·내외 사례 분석	46
〈표 3-13〉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국립독일박물관)	52
〈표 3-14〉 수원화성 무장애 관광환경 조사	62
〈표 3-15〉 수원화성 현장평가 개요	75
〈표 3-16〉 수원화성 주출입구 평가	76
〈표 3-17〉 수원화성 관광안내소·매표소 평가	77
〈표 3-18〉 수원화성 비치용품 평가	77
〈표 3-19〉 수원화성 입식관광 안내지도 평가	78
〈표 3-20〉 수원화성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평가	78

〈표 3-21〉 수원화성 이동 동선 평가	79
〈표 3-22〉 수원화성 부대시설 평가	79
〈표 3-23〉 수원화성 화장실 평가	80
〈표 4-1〉 수원시 관광약자 연구	86
〈표 4-2〉 장애인 여가·관광 현황 분석 개요	86
〈표 4-3〉 고령자 여가·관광 현황 분석 개요	89
〈표 4-4〉 영유아 여가·관광 현황 분석 개요	92
〈표 4-5〉 관광약자의 여가제약 선행연구와의 비교 분석	97
〈표 4-6〉 인터뷰 참가자 현황	99
〈표 4-7〉 인터뷰 내용 구성	100
〈표 4-8〉 지체장애인의 여가제약 조사결과	131
〈표 4-9〉 발달장애인의 여가제약 조사결과	132
〈표 4-10〉 고령자의 여가제약 조사결과	134
〈표 4-11〉 액티브시니어의 여가제약 조사결과	134
〈표 4-12〉 영유아의 여가제약 조사결과	137
〈표 4-13〉 대상별 조사결과 비교분석	140
〈표 5-1〉 수원시 관광약자 여가·관광 실태조사 설문지(안) 구성항목	151
〈표 5-2〉 수원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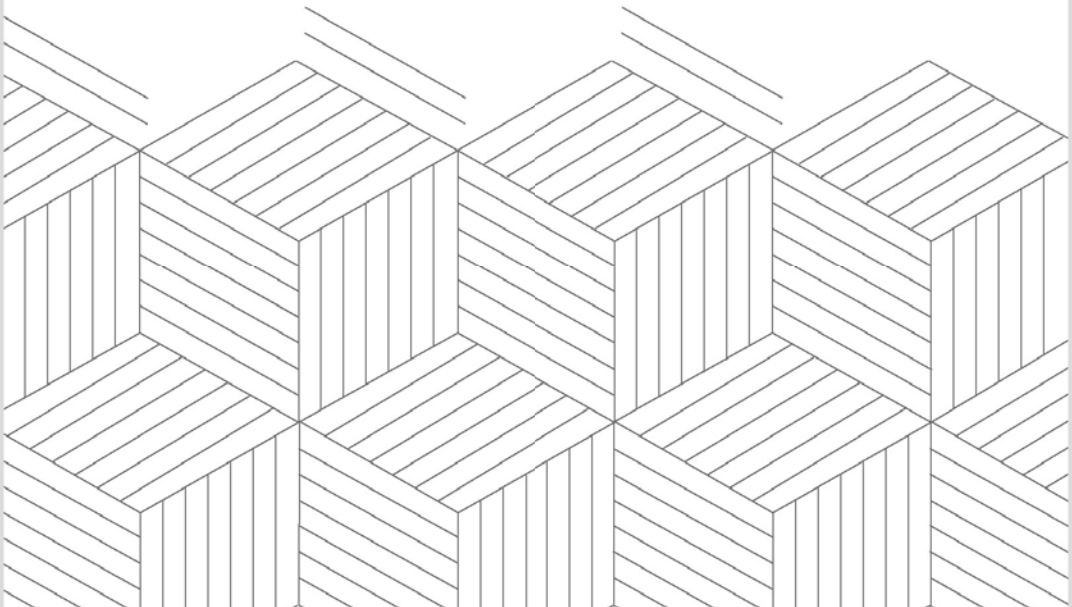
그림 차례

〈그림 2-1〉 대상별 여가제약 비교결과(선행연구 기준)	24
〈그림 3-1〉 무장애 관광레저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40
〈그림 3-2〉 서울시 무장애 관광도시 정책목표와 방향	41
〈그림 3-3〉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운영현황	42
〈그림 3-4〉 서울시 배리어프리 관광상품 개발 가이드북	47
〈그림 3-5〉 서울시 무장애 관광지 정보	48
〈그림 3-6〉 서울시 숙박시설 정보	48
〈그림 3-7〉 서울시 음식점 정보	49
〈그림 3-8〉 순천만습지 열린관광지 조성현황	50
〈그림 3-9〉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국립독일박물관)	51
〈그림 3-10〉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가이드투어 운영 현황(국립독일박물관)	52
〈그림 3-11〉 치매환자를 위한 가이드투어 운영 현황(국립독일박물관)	52
〈그림 3-12〉 ‘모두를 위한 관광’ 데이터베이스 현황(독일 관광청 홈페이지)	53
〈그림 3-13〉 장애유형별 필터링 기능(독일 관광청 홈페이지)	54
〈그림 3-14〉 LVR 로마 박물관(LVR-RömerMuseu) 무장애 관광 관련 문서	54
〈그림 3-15〉 수원시 친화도시 조성현황	56
〈그림 3-16〉 수원 고령친화도시 비전과 목표	57
〈그림 3-17〉 장애인복지정책의 비전과 목표	58
〈그림 3-18〉 수원 아동친화도시 비전과 목표	59
〈그림 3-19〉 방문(예정) 수원 관광지	61
〈그림 3-20〉 가장 많이 방문한 수원 여가·관광지	61
〈그림 3-21〉 수원화성 무장애 관광환경 조사	62
〈그림 3-22〉 1구간(팔달문 ~ 서장대) 무장애 관광환경 현황	64
〈그림 3-23〉 2구간(화성행궁 ~ 서장대) 무장애 관광환경 현황	66
〈그림 3-24〉 3구간(서장대 ~ 화서문) 무장애 관광환경 현황	68
〈그림 3-25〉 4구간(화서문 ~ 장안문) 무장애 관광환경 현황	70

〈그림 3-26〉 5구간(장안문 ~ 창룡문) 무장에 관광환경 현황	72
〈그림 3-27〉 6구간(창룡문 ~ 남수문) 무장에 관광환경 현황	74
〈그림 3-28〉 수원화성 현장평가 결과	75
〈그림 4-1〉 현재의 문화·여가활동(장애인)	87
〈그림 4-2〉 향후 희망 문화·여가활동(장애인)	87
〈그림 4-3〉 문화·여가 활동 시 주된 어려움(장애인)	88
〈그림 4-4〉 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 지원내용(장애인)	88
〈그림 4-5〉 집 주변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나 산책로 보유 여부	90
〈그림 4-6〉 가까운 곳에 고령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이나 체육시설 보유 여부	91
〈그림 4-7〉 수원시에 필요하거나 늘려야 하는 공공편의시설(고령자)	91
〈그림 4-8〉 수원시에 필요하거나 늘려야 하는 공공편의시설(52세 미만)	92
〈그림 4-9〉 지역 내에 운동하고 놀 수 있는 장소가 있다.	93
〈그림 4-10〉 지역 내에 자연환경이 잘 가꿔져 있다.	93
〈그림 4-11〉 다양한 문화이벤트, 축제 등에 참여/구경할 수 있다.	93
〈그림 4-12〉 여가·관광지 만족도(볼거리)	94
〈그림 4-13〉 여가·관광지 만족도(즐길거리)	94
〈그림 4-14〉 여가·관광지 만족도(할거리)	94
〈그림 4-15〉 여가·관광지 만족도(관광정보)	94
〈그림 4-16〉 여가·관광지 만족도(먹거리)	95
〈그림 4-17〉 여가·관광지 만족도(살거리)	95
〈그림 4-18〉 여가·관광지 만족도(교통 접근성)	96
〈그림 4-19〉 여가·관광지 만족도(편의시설)	96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과거에는 관광이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사치재로 인식됐지만 최근에는 해마다 1,000만 명 이상이 해외로 나가는 등 각자의 상황에 맞추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보편적 활동이 됐다. 한국사회의 급격한 경제성장이 관광 대중화의 주요 이유겠지만 무엇보다 관광은 모든 사람이 갈구하는 활동이라는 점이 성장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엄서호, 2018).

관광이 현대인의 삶의 일부이자 권리로서 인식됨에 따라 최근에는 사회적 약자의 관광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과거 지체장애인 중심의 ‘장애인 관광’은 산업이 아닌 복지 의 일환으로 시혜적 성격이 강하고 주로 이벤트성 행사로 개최됐으나(함계걸음, 2018.02.21.), 장애인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노력으로 201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내 ‘관광활동의 차별금지(제24조의 2)’ 조항이 추가되는 등 최근 사회적 약자의 관광도 비장애인들과 동일하게 개인의 권리로서 논의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민 국내여행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등을 위한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또한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계획(2017)을 수립하였다. 경기도와 전라남도에서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를 재정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의 관광권리 실현을 위해 보편적인 관광 향유를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수원시의 장애인 인구는 42,393명(보건복지부, 2018), 65세 이상 고령자 117,256명, 6세 미만 영유아 74,942명(행정안전부, 2018)으로 전체 인구의 약 20%에 육박한다. 특히 장애인 인구는 경기도 시·군 중 가장 많고 영유아 인구는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 차원에서의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필요성이 높은 실정이다. 또한 수원시는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고령자·아동·여성 친화도시로 모두 인증을 받은 최초의 도시이자 장애인 친화도시로의 변모를 위해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조성의 정책적 바탕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관광에 대한 대내외의 정책 흐름을 반영하고 시민의 관광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다만, 사회적 약자의 관광 정책이 ‘장애인 관광’에서 ‘무장애 관광’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과 별개로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관광 관련 법률과 사업의 세부 내용이 지체장애인을 기준으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한 단계 나아가 장애인과 고령자, 영유아 각 집단의 욕구를 반영한 수원만의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무장애 관광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등 각기 다른 대상의 교집합을 활용해 이들의 제약 상태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장애인이 편한 환경은 불특정 다수의 관광객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을 무장애 관광의 기준 값으로 삼아왔다(함께걸음, 2018.02.21.). 그러나 이로 인해 영유아, 고령자 등 다른 집단의 세세한 요구와 필요는 상대적으로 소외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여가제약에 대한 선행연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대상별 제약과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반영한 수원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1) 관광약자 별 특성 및 실태 파악

지체장애인 위주의 기존 무장애 관광에서 나아가서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를 포괄하는 수원만의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각 대상별 선행연구 분석과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내재적, 대인적, 구조적 차원에서의 여가제약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기초로 비교 분석을 실시하여 집단 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확인하여 수원시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의 여가관광 특성 및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2) 수원형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제언

무장애 관광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사회적 약자의 관광권리 실현을 위해 수원시의 무장애 관광 도시 조성이 요구됨에 따라 본 연구를 통해 무장애 관광 관련 법률 및 각종 사업, 국내외 사례 등을 분석하고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의 여가·관광 특성 및 실태를 파악하여 수원시만의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1) 대상적 범위

정부의 열린관광지 사업은 장애인, 어르신, 영·유아 동반가족 등을 포함해 모든 관광객이 이동의 불편 및 관광 활동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관광지 조성을 목표로 하며, 서울의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계획(2017) 또한 이와 유사하게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동반 가족관광객 등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경기도 및 전라남도의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에서도 장애, 노령,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관광약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고자 하며,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 접근 등의 제약조건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관광약자라고 명시하고자 한다(김광모, 2014). 또한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의미하며(장애인복지법 제2조), 고령자는 65세 이상 노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뜻한다(영유아보육법 제2조). 다만 선행연구에서 고령자나 영유아의 연령 기준을 상황에 따라 달리한 경우를 참고하여 유동적으로 적용하고자 한다.

영유아는 연령 특성 상 부모 또는 조부 등의 보호자와 함께 여가·관광활동을 즐기는 경우가 많고 관련 여가제약 관련 선행연구나 인터뷰에서도 보호자가 영유아와 함께 여가·관광을 즐기면서 느끼는 제약에 대해 논의하였기 때문에 영유아의 제약은 보호자가 영유아와 함께 여가·관광을 하면서 느끼는 제약을 의미한다.

2) 공간적 범위

수원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은 최종적으로 수원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지만 무장애 환경 분석, 시범사업 등은 수원시 대표 관광자원인 '수원화성'으로 한정하여 사업의 효율성 및 실현가능성을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3) 시간적 범위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9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10개월)로 한다.

4) 내용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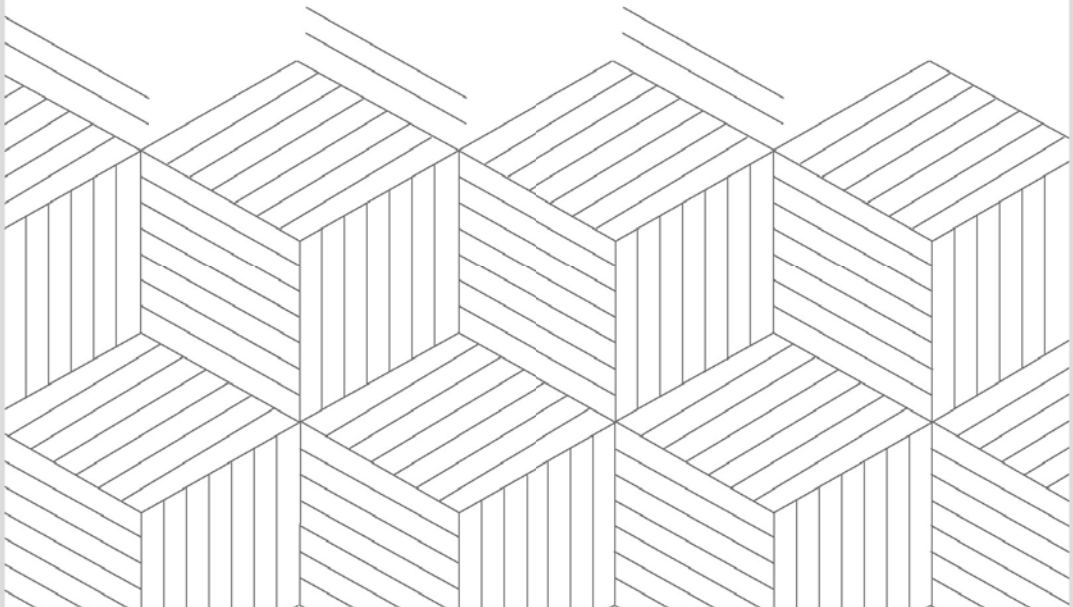
본 연구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수원시의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방향’ 도출을 위해 수원시 관광약자를 위한 법률과 사업들을 검토하였으며, 국내외 무장애 관광환경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수원시 무장애 관광 정책 및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환경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관광약자의 여가제약에 대한 선행연구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의 여가제약을 확인하고 대상별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문헌분석, 현장조사, 의견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관광약자들이 여가·관광 참여 시 경험하는 어려움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연구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대상으로 문헌분석을 실시하였다. 현장조사는 수원 대표 관광지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관광약자의 무장애 관광환경으로서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의견 조사는 이론적 배경에 기초해 장애인(보호자), 고령자, 영유아(보호자) 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해당 결과를 선행 연구와 비교분석하여 수원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방향 도출의 근거로 활용하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관광약자의 여가제약
제2절 여가제약 비교 분석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관광약자의 여가제약

1. 여가제약의 개념 및 구성요인

여가제약(leisure constraints)은 개인이 여가활동을 참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의미하는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개념으로 1980년대 관련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Witt & Goodale 1981; Wade & Hoover, 1985; Jackson & Searle.). 당시에는 제약의 존재 여부를 여가 참여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았기 때문에 제약을 '참여 장애(barriers to participation)'로 정의하기도 하였다(Crawford & Godbey, 1987; Jackson, 1988). 그러나 이후 여가제약이 반드시 여가 불참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장애(barriers)이라는 용어 대신 제약(constraints)이라는 표현이 자리 잡게 되었다²⁾(이인재·이훈, 2006; 류성옥·이영진·박승현, 2011).

여가제약의 유형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Henderson, Stalnaker, & Taylor(1987)는 여가 기회와 관련된 구조적 요인인 개입적 제약(intervening constraints)과 여가 태도와 관련된 인간 내적·상호적 요인인 선형적 제약(antecedent constraints)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Crawford & Godbey(1987)는 여가 선호와 참여와 관련한 영향 요인을 구분함으로써 여가제약을 내재적(intrapersonal)·대인적(interpersonal)·구조적(structural)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내재적 제약은 여가선호에 작용하는 개인의 심리상태와 및 태도와 관련이 있으며, 건강문제, 관심부족 등이 포함된다. 대인적 제약은 개인 간 특성 사이의 관계 또는 개인 간 상호관계의 결과에 의한 것으로, 여가 동반자의 부재나 동반자와의 시간 불일치 등이 해당된다. 구조적 제약은 여가 선호와 참여 사이에서 간섭하는 요인으로, 비용, 장비와 시설의 부족, 시간

1) Jackson(1988: 210)은 장애(barrier)를 “특정 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들의 부분 집합”으로 정의하였다.

2) 장애(barrier)가 특정 여가활동에 대한 선호가 형성된 이후 참여 활동을 막는 요소를 지칭하는 개념인 반면 제약(constraints)은 장애요소와 더불어 선호가 형성되는 과정을 방해하는 요소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활용된다(문화체육관광부, 2008).

부족 등을 의미하여, 이를 기준으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Crawford, Jackson, & Godbey, 1991; White, 2008; Hubbard & Mannell, 2001; 지현진·이철원, 2003).

본 연구에서는 여가제약 연구에서 폭 넓게 활용되어 온 Crawford & Godbey(1987)의 분류에 기초하여 관광약자의 여가제약을 내재적, 대인적, 구조적 제약 차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관광활동이 대표적인 여가활동 중 하나이자(김병용·조광익, 2019), 관광제약 연구가 여가제약이론을 근간으로 한다는 점(박승현·이영진, 2011)을 참고하여 관광활동에 대한 선행연구도(류성욱·이영진·박승현, 2011; 이려정·김병용, 2012; 류성욱·오치욱·이훈, 2012; Gassiot, Prats, & Coromina, 2018) 함께 분석하였다.

〈표 2-1〉 여가제약

구분	내용		선행연구
내재적 제약	건강 악화 흥미 부족	자신감 부족(부끄러움) 기술 부족	Crawford & Godbey(1987) White(2008) Hubbard & Mannell(2001) 지현진·이철원(2003)
대인적 제약	동반자와의 여가선호 차이 동반자의 부재		
구조적 제약	경제적 문제 제한된 자원 불충분한 시설	접근성 문제 시간 부족	

자료: 선행연구 종합하여 연구자 재구성

2. 장애인의 여가제약

사람은 누구나 여가나 관광 활동을 참여 과정에서 제약을 경험한다(Smith, 1987). 그러나 장애인은 여가·관광 활동 시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제약을 경험하며,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수성과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영향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제약의 정도가 월등하다는 게 기존 연구의 공통된 결론이다(Smith, 1987; McKercher, Packer, Yau, & Lam, 2003; 류성욱·이영진·박승현, 2011). 이에 고령자나 영유아 등 다른 관광약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애인의 여가제약 관련 연구가 더욱 활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McKercher, Packer, Yau, & Lam(2003)은 홍콩 여행사에 대한 이동 장애 및 시각 장애인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그들이 경험하는 제약을 확인하였으며, 내재적 제약으로 ‘장애인 스스로 관광권리에 대해 인식하는지’, ‘타인에게 짐이 된다고 느끼지는 않는지’에 대해 언급했다. Yau, Mckercher, & Packer(2004) 또한 이동 장애 및 시각 장애인 대상 인터뷰를 통해 장애인 스스로 본인의 장애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으로부터 관광을 시작할 수 있으며, 장애를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공공장소를 피하거나 관광을 거의 또는 전혀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Devile & Kastenholz(2018)의 연구에서도 ‘장애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인식’과 함께 ‘위험 인지’, ‘불편함과 스트레스’, ‘자율성의 부족’을 장애인의 내재적 제약으로 언급하였다.

Gassiot, Prats, & Coromina(2018)는 스페인의 신체·감각·인지 장애인들이 경험하는 관광제약의 측정 척도를 개발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는데, 연구를 통해 내재적 제약으로 ‘지식 부족’, ‘건강 관련 문제’, ‘신체적·심리적 의존성’의 세 가지 요인을 발견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타인에 대한 의존성’이 가장 주요한 제약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장애인들은 장애의 유형과 그 정도에 따라 동반자 없이는 여가·관광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국의 논문에서는 ‘장애에 대한 개인의 인식’, ‘타인에 대한 미안함’과 같은 내재적 제약에 대해 논의한 반면 국내 논문에서는 내재적 제약이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 관광제약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했던 박승현·이영진(2011)은 지체, 시각, 청각 장애인 모두 내재적 제약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장애인의 관광제약과 협상 과정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던 류성옥·오치옥·이훈(2012)의 연구에서도 지체, 시각, 청각장애인들은 구조적 제약에 비해 내재적, 대인적 제약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체장애인의 여가제약과 여가만족의 관계를 확인한 오찬교·박인아·장현(2014)의 연구에서는 내재적 제약이 여가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설문조사를 위주로 진행된 국내 논문이 장애인의 내재적 제약으로 ‘흥미 부족’, ‘기술 부족’ 등 제한된 내용만을 문의함에 따라 장애인이 경험하는 다양한 내재적 제약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예상된다.

장애인들이 지닌 ‘장애’ 요소가 내재적 제약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듯이 대인적 제약에 있어서도 장애인들만의 특수성이 발견됐다. 장애인들은 ‘타인(관광종사원)의 부정적 태도’, ‘가족의 지나친 보호’, ‘가족의 경제적·신체적·심리적 지지 부족’, ‘조력자 부족’ 등의 대인적 제약을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중 ‘타인의 부정적 태도’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자들은 이러한 제약이 장애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편견과 무지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McKercher, Packer, Yau, & Lam, 2003; Devile & Kastenholz, 2018)

McKercher, Packer, Yau, & Lam(2003)는 여행을 이용한 홍콩 장애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여행사 직원의 부정적 태도’를 언급하였으며, Yau, McKercher, & Packer(2004) 또한 ‘장애인들이 외부활동을 할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이나 ‘장애인 고객에 대한 비협조적인

여행사의 태도' 등이 장애인 관광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Devile & Kastenholz(2018)은 '관광종사자의 부정적 태도'가 장애인 관광에 있어 대인적 제약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부정적 태도는 이의 주체가 관광종사원 또는 비장애인일 경우 대인적 제약으로 분류되지만 사회의 일반적인 시선을 의미할 경우 구조적 제약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장애인들은 관광종사원이나 비장애인 등 타인에 비해 대인적 제약 외에도 가족으로부터 유발되는 다양한 대인적 제약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Yau, Mckercher, & Packer(2004)는 연구에 참여한 장애인이 어머니의 염려로 인해 예약해둔 비행을 취소해야 했다며 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지지 없이는 장애인이 관광에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주장하였다. 유사한 맥락으로 동반자로서 관광을 함께 즐길 가족의 부재로 제약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었다(박승현·이영진, 2011; Devile & Kastenholz, 2018).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장애인의 관광에 있어 가족의 역할이 지대하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다수의 연구에서 '적절한 관광 상품의 부재', '정보의 부족', '교통 이용의 어려움'과 같은 구조적 제약이 장애인이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밝혀졌는데(박승현·이영진, 2011; 류성욱·오치욱·이훈, 2012; Devile & Kastenholz, 2018), 내재적·대인적 제약과 동일하게 대인적 제약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차별화되는 장애인만의 특성이 발견된다.

비장애인에게 주요한 여가제약 중 하나인 시간 부족의 경우 장애인 관련한 국내의 연구에서 언급이 많지 않은데 류성욱·오치욱·이훈(2012)의 연구에서 그 이유를 유추해볼 수 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률이 낮기 때문에 시간 부족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이에 따라 여가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지역·국가에 따라 장애인 취업률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장애인이 지난 신체적·심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낮은 취업률로 인해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이 시간적 여유가 많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장애인의 낮은 취업률은 경제적 제약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McKercher, Packer, Yau, & Lam, 2003의 연구에서는 장애인에게 가족의 경제적 지지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박승현·이영진(2011)은 장애인들이 정부나 단체의 경비지원 부족으로 인해 관광참여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오찬교·박인아·장현(2014)의 연구에서도 경제적 제약은 여가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생계보장 및 소득보장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의 연구들은 모두 장애인들이 가족이나 정부 등으로부터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언급했는데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고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이것이 관광 참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할 수 있다.

이상 장애인 여가제약과 관련한 국내외 연구를 정리하면 <표 2-2>와 같으며, 내재적 제약으로 '관광권리에 대한 장애인 개인의 인식 부족', '타인에 대한 미안함', '위험 인지', '신체적·심리적

의존성' 등이 포함된다. 대인적 제약으로는 '타인의 부정적 태도', '가족의 지지 부족', '조력자의 부재'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조적 제약에는 '경제적 부담', '정보 부족', '시설 부족' 등이 해당된다.

〈표 2-2〉 장애인의 여가제약

구분	내용	선행연구	
내재적 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권리에 대한 장애인 개인의 인식 부족 타인에게 짐이 된다는 미안함 (본인)장애를 인정하고 수용하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 인지 불편함과 스트레스 자율성의 부족 지식 부족 건강 관련 문제 신체적·심리적 의존성 	<p>Mckercher, Packer, Yau, & Lam(2003) Yau, Mckercher, & Packer(2004) Devile & Kastenholz(2018) Gassiot, Prats, & Coromina(2018)</p>
대인적 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인(관광종사원)의 부정적 태도 가족의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지지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력자의(가족, 친구, 봉사자 등) 부족 	<p>Mckercher, Packer, Yau, & Lam(2003) Yau, Mckercher, & Packer(2004) 박승현·이영진(2011) Devile & Kastenholz(2018) Gassiot, Prats, & Coromina(2018)</p>
구조적 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세정보 부족 관광상품 부족 경제적 부담 정부/단체 경비지원 부족 관광 안내원의 (지식)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절한 교통수단의 부족(이동의 어려움) 숙박시설 부족 식당 부족 여가·관광지 (프로그램) 부족 	<p>Mckercher, Packer, Yau, & Lam(2003) Yau, Mckercher, & Packer(2004) 박승현·이영진(2011) 류성욱·오치욱·이훈(2012) 오찬교·박인아·장현(2014) Devile & Kastenholz(2018) Gassiot, Prats, & Coromina(2018)</p>

자료: 선행연구 종합하여 연구자 재구성

3. 고령자의 여가제약

의학 기술의 발달, 공중 보건 및 위생 상태의 개선, 소득 수준 향상 등에 의해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동시에 출생률은 감소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고령인구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노년기는 경제활동 참가율의 감소 및 자녀들의 독립으로 인해 여가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하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삶의 활력과 동기를 찾게 해주고, 정신적·사회적·신체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보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윤혜진, 2015). 하지만 고령자들은 수입의 감소, 건강의 악화, 여가 필요성에 대한 노인 스스로의 인식 부족 등으로 여가참여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leischer & Pizam, 2002; Gibson, 2002; Nyaupane, McCabe, & Andereck, 2008).

다수의 연구에서 고령자가 내재적 제약 중 '건강 악화'를 가장 크게 인지하는 것으로 확인

됐는데, 이유리·박미석(2005)은 고령자가 ‘체력이 약하다’, ‘신체적 제약으로 참여하기 어렵다’ 등의 건강 관련 제약을 대인적, 물리적 제약에 비해 많이 인지한다고 주장했으며, Huber, Milne, & Hyde(2018) 고령자가 건강악화로 인해 자신이 즐길 수 있는 관광활동의 범위가 제한됨을 느끼며, 심지어 관광자체를 하나의 스트레스로 인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세부 연령에 따른 ‘건강 악화’의 영향력 차이를 확인했는데, Fleischer & Pizam(2002)의 연구에 따르면, 65세를 기점으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이 악화되기 때문에 휴가일수가 점차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Nyaupane, McCabe, & Andereck(2008) 또한 45~59, 60~74세에 비해 75세 이상 고령자일수록 ‘건강 악화’가 더욱 큰 제약요인으로 인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건강 악화’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영향력이 강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65세에서 90세까지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Gibson(2002)의 연구에서는 내재적 제약으로 ‘건강 악화’ 외에 ‘흥미 부족’이나 ‘관광하기에 나이가 많다는 개인의 인식’이 발견됐는데, 인터뷰에 참여한 90대 여성은 본인 스스로 멀리 관광을 떠나기에 너무 나이가 많다고 여기고 있었으며, 81세 남성은 관광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이유리·박미석(2005)의 연구에서도 ‘새로운 여가활동을 시작하는 것은 귀찮은 일이다’, ‘여가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욕이 없다’와 같이 ‘흥미 부족’이 내재적 제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은 대인적 제약으로 ‘타인의 부정적 태도’가 주로 논의된 것과 달리 고령자 선행연구에서는 ‘동반자의 부재’ ‘가족의 반대’ 등을 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Gibson, 2002; 이영숙·박경란, 2009, Gao & Kerstetter, 2016). Gibson(2002)의 연구에 참여한 66세 미혼 여성은 관광을 가고 싶지만 동반자가 없어서 가기가 어렵다고 토로했으며, Huber, Milne, & Hyde(2018) 또한 배우자와의 사별 후 ‘동반자의 부재’로 대인적 제약을 경험하는 고령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숙·박경란(2009)은 고령자의 여가제약요인 사회적·개인적·가족적·경제적 제약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가족적 제약은 타 제약에 비해 영향력은 낮았지만 해당 연구를 통해 고령자가 ‘가족의 반대(지지 부족)’, ‘돌봐야 할 가족의 존재’와 같은 대인적 제약을 경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미경·김지은(2017)의 연구에서도 ‘가족의 반대(지지 부족)’, ‘과도한 집안일’과 같은 가족과 관련한 대인적 제약이 고령자의 여가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자의 대인적 제약에 있어 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령자의 구조적 제약으로는 ‘경제적 부담’이 가장 빈번하게 언급됐는데(Fleischer & Pizam, 2002; Nyaupane, McCabe, & Andereck, 2008; 이영숙·박경란, 2009; 이려정·김병용, 2012; 김철원·김응상·정병옥·이태숙, 2015; Gao & Kerstetter, 2016;

Huber, Milne, & Hyde, 2018), 이영숙·박경란(2009)과 이려정·김병용(2012)은 공통적으로 고령자가 타 제약에 비해 경제적 부담을 가장 높게 인지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낮은 취업률과 관련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령자는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여가생활을 위한 경제적 대비가 충분치 않아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예상된다(이영숙·박경란, 2009).

고령자는 ‘경제적 부담’ 외에 ‘이동의 한계’, ‘여가·관광지(프로그램/시설) 부족’, ‘지식/정보 부족’ 과 같은 구조적 제약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영숙·박경란(2009)은 고령자가 ‘시설/프로그램 부족’, ‘교통 불편’, ‘정보 부족’ 등으로 관광 참여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김철원·김응상·정병옥·이태숙(2015)의 연구 또한 이와 유사하게 고령자가 ‘정보 부족’, ‘관광상품 부족’ 등의 구조적 제약으로 관광 참여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확인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고령자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건강이 악화되고 경제활동이 단절되면서 여가·관광에 제약을 느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Fleischer & Pizam(2002)의 연구에서는 55~65세 고령자가 은퇴와 함께 시간 제약이 사라지고 소득은 최고조에 달하며 건강 제약은 아직 유효하지 않아 휴가일수가 최대치에 다다르게 되어 관광 업계의 중요시장으로 평가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고령자와 달리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높은 소득과 자산을 가지고 있으며, 소비 및 여가생활을 즐기고, 미용, 관광 등 자신을 위한 능동적인 소비 성향을 가지고 있는 고령자 집단을 액티브시니어(active senior)라고 부른다(한상철, 2013; 오훈성, 2018). 액티브시니어의 제약에 대한 국내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지만 국외 연구의 유사하게 국내 액티브시니어들도 고령자의 가장 주요한 제약인 ‘건강 악화’와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것을 예상된다.

고령자의 여가제약과 관련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표 2-3>와 같다. 내재적 제약으로는 ‘건강악화’, ‘안전 염려’, ‘흥미 부족’ 등이 포함되며, 대인적 제약으로는 ‘동반자의 부재’, ‘가족의 반대’ 등이 포함된다. 구조적 제약은 ‘경제적 부담’, ‘이동의 한계’, ‘여가·관광지 부족’, ‘지식/정보 부족’ 이 해당된다.

〈표 2-3〉 고령자의 여가제약

구분	내용	선행연구
내재적 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약화 안전 염려 흥미 부족 관광하기에 나이가 많다는 개인의 인식 	Gibson(2002) Fleischer & Pizam(2002) 이유리·박미석(2005) Nyaupane, McCabe, & Andereck(2008) 이영숙·박경란(2009) 김철원·김응상·정병욱·이태숙(2015) Gao & Kerstetter(2016) 김미경·김지은(2017) Huber, Milne, & Hyde(2018)
대인적 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반자(가족, 친구 등)의 부재 가족의 반대/지지 부족 보살펴야 할 가족의 존재 많은 집안일 	Gibson(2002) 이영숙·박경란(2009) 김철원·김응상·정병욱·이태숙(2015) Gao & Kerstetter(2016) 김미경·김지은(2017) Huber, Milne, & Hyde(2018)
구조적 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적 부담 이동의 한계 (교통수단 이용의 어려움, 교통수단의 위험성) 여가·관광지(프로그램/시설) 부족 지식/정보 부족 (정보 획득의 어려움) 	Fleischer & Pizam(2002) Nyaupane, McCabe, & Andereck(2008) 이영숙·박경란(2009) 이려정·김병용(2012) 김철원·김응상·정병욱·이태숙(2015) Gao & Kerstetter(2016) 김미경·김지은(2017) Huber, Milne, & Hyde(2018)

자료: 선행연구 종합하여 연구자 재구성

4. 영유아의 여가제약

영유아보육법에 제2조에 의거 6세 미만 아동으로 정의되는 영유아는 신체적·정식적으로 미성숙하지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되며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약자(선은애, 2018)이기 때문에 장애인, 고령자와 함께 관광약자로 분류되며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무장애 관광 관련 사업 등에서도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등을 주요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과 고령자들의 여가·관광 제약요인과 이를 타계할 방안 및 정책적 지원에 대해 연구들은 진행되고 있지만 영유아가 경험하는 여가·관광 제약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다만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의 여가·관광의 영향과 역할에 대한 연구(진미정·한경혜·장미나·변주수, 2012; 임지은·이우진, 2017)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광객의 의사결정 관련 연구(Therkelsen, 2010; Khoo-Lattimore, Prayag & Cheah,

2015; Khoo-Lattimore, delChiappa, & Yang, 2018), 키즈 마케팅 관련 연구(전미화·조재경, 2015; ÖZEL, 2015)를 통해 영유아의 여가제약과 욕구를 유추할 수 있었다.

다만 영유아의 신체적·정신적 특성 상 영유아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연구에 참여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각 제약요인들은 영유아가 인지할 만한 제약과 아이의 보호자로서 부모가 느끼는 제약이 혼재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각 연구가 영유아를 위한 편의시설이나 프로그램과 같이 구조적 제약과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영유아의 심리적·신체적 어려움과 관련이 있는 내재적 제약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진미정·한경혜·장미나·변주수(2012)는 영아기(0~2세)부터 학령초기(6~8세) 자녀를 둔 가족의 여가활동 빈도 및 만족도, 불만족 원인 등 전반적인 여가실태를 파악하였는데, 원하는 만큼 여가를 즐기지 못하는 이유로 과반수가 '남편의 시간 부족', 29%가 '경제적인 부담'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 부족'은 일반 성인이 흔하게 경험하는 구조적 제약요인이지만(윤채빈·박수정, 2018) 장애인, 고령자는 경제활동에 한계가 있어 이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반면 영유아에게 있어 가족과 관련한 대인적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경제적 부담' 또한 장애인, 고령자처럼 개인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제약이라기보다 보호자가 '경제적 부담'을 느낌에 따라 영유아에게 간접적인 여가제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hoo-Lattimore, Prayag, & Cheah(2015)의 연구에 따르면 동양의 영유아 부모들은 어린자녀와 휴일을 보낼 숙소를 선택하는데 있어 고려사항 중 하나로 '직원과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숙소의 직원들이 자녀에게 인사를 건네거나 놀아주는 등 적절한 상호작용을 할 때 아이들이 기뻐할 뿐 아니라 부모들도 만족하는 것을 나타냈다.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서양인 부모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Khoo-Lattimore, delChiappa, & Yang(2018)의 연구에서도 인터뷰에 참여한 대다수의 부모들이 관광종사원과 어린 자녀 사이의 친근하고 공손하며 전문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기를 기대했으며, 일부 부모는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상황에서 직원이 지속적으로 조용히 할 것을 요구했다거나 언어 장벽으로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불만을 느낀 것으로 나타나 '관광종사원과의 (긍정적) 상호작용 부족'이 영유아 여가·관광에 있어 대인적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임지은·이우진(2017)의 연구에서도 영유아와 관광종사원 간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영유아를 동반한 관광객들은 관광종사자들이나 다른 관광객들로부터 '영유아를 동반했다는 조건을 가진 관광객'으로 인식되며, 어린 자녀는 관광의 주체로 인식되지 않고 부모에게 동반된 대상으로 여겨져 관광종사자나 다른 관광객들로부터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관광의 주체

로서 영유아에 대한 타인의 불인정' 또한 대인적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예상되며, '관광 종사원과의 (긍정적) 상호작용 부족'을 함께 고려할 때 포괄적으로는 영유아에 대한 타인(관광종사원)의 태도에 따라 영유아와 그의 부모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구조적 제약의 경우 안전, 위생에 대한 언급이 자주 등장했으며 영유아를 위한 편의시설이나 서비스, 영유아와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영유아를 위한 놀이 공간, 아이들을 위한 음식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들은 영유아의 수면(낮잠 포함)을 위한 적절한 환경, 여행지까지의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를 통해 장애인이나 고령자에 비해 영유아가 구조적 제약에 있어 다양한 범위의 상세한 요구사항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Therkelsen, 2010; 진미정·한경혜·장미나·변주수, 2012; ÖZEL, 2015; Backer & Schanzel, 2013; 전미화·조재경, 2015; Khoo-Lattimore, Prayag, & Cheah, 2015; 임지은·이우진, 2017; Shuxia, 2018; Khoo-Lattimore, delChiappa, & Yang, 2018)

Therkelsen(2010)의 연구에 따르면 0~5세 영유아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자녀의 제 시간에 음식 먹기, 규칙적인 수면시간, 안전, 위생과 같은 기초적인 욕구를 중시하였으며, 바다, 모래, 자연 속에서의 활동과 같이 아이들에게 좋다고 여겨지는 체험 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acker & Schanzel(2013) 또한 숙소의 커튼이 빛을 막지 못해 자녀가 낮잠을 자기 어려웠거나 더러운 조리 기구, 먼지가 많은 침구, 세탁기 사용의 한계 등 위생 및 청결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여, 영유아의 여가·관광에 있어 안전과 위생, 음식, 수면과 같이 기초적인 욕구들의 해소가 필수 요구사항임을 알 수 있다.

전미화·조재경(2015)는 경제 불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키즈시장의 영향력으로 인해 국내 우수 호텔들이 키즈 대상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현상에 주목하여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는데, 대형호텔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키즈 아일랜드, 전용 수영장과 같이 전용 놀이공간을 마련했으며, 쿠킹 클래스, 지질공원 트레킹 등의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가구와 각종 편의시설로 꾸며진 전용 객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ÖZEL(2015)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영유아 시장을 고려하여 호텔들이 '어린이 전용 객실', '어린이를 위한 식사 및 음료', '어린이를 위한 활동', '가격 옵션', '안전 및 건강'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지은·이우진(2017)의 연구에서 '영유아용 변기를 갖춘 화장실', '유모차 대여' 등의 편의시설 및 서비스를 요구한 것과 유사한 맥락으로 호텔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이 고품질의 서비스가 있어야만 영유아가 여가·관광을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영유아는 장애인과 고령자와 달리 영유아에게만 특화된 기저귀교환대, 영유아용 소변기, 유모차 등 편의시설과 영유아 시각에 맞춘 프로그램 등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것들이 부족할 경우 영유아와 동반 가족에게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유아 여가제약과 관련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표 2-4>와 같다. 대인적 제약으로는 ‘관광종사원과의 (긍정적)상호작용 부족’, ‘관광 주체로서 영유아에 대한 타인의 불인정’ 등이 포함되며, 구조적 제약은 ‘음식 메뉴 부족’, ‘여가·관광 프로그램/시설 부족’, ‘편의시설 및 서비스 부족’ 등이 해당된다.

<표 2-4> 영유아의 여가제약

구분	내용	선행연구
내재적 제약	-	-
대인적 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편의 시간 부족 관광종사원과의 (긍정적)상호작용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의 주체로서 영유아에 대한 타인의 불인정
구조적 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적 부담 관광지까지의 이동거리 여가·관광 프로그램/시설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식 메뉴 부족 안전과 위생 부족 편의시설 및 서비스 부족
		Jinmi Jeong · Han Gyeong-hye · Jang Mi-na · Byeon Ju-su (2012) Khoo-Lattimore, Prayag, & Cheah (2015) 임지은 · 이우진 (2017) Khoo-Lattimore, delChiappa, & Yang (2018)
		Therkelsen (2010) Jinmi Jeong · Han Gyeong-hye · Jang Mi-na · Byeon Ju-su (2012) ÖZEL (2015) Backer & Schanzel (2013) 전미화 · 조재경 (2015) Khoo-Lattimore, Prayag, & Cheah (2015) 임지은 · 이우진 (2017) Shuxia (2018) Khoo-Lattimore, delChiappa, & Yang (2018)

자료: 선행연구 종합하여 연구자 재구성

제2절 여가제약 비교 분석

장애인과 고령자, 영유아의 여가제약을 확인한 결과 ‘건강 문제’, ‘흥미 부족’, ‘이동 거리’와 같이 각 집단이 보유한 신체적·정신적 특성으로 인해 일반 성인(비장애인)이 경험하는 여가 제약과는 차별화되는 제약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은 관광 약자로서 사회나 가족으로부터의 경제적·신체적·정신적 지지를 필요로 하거나 수준에 맞는 관광 프로그램이나 시설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유사점을 갖지만 개인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이나 타인과의 상호 작용 측면 등에서 차이점이 있다.

장애인은 개인이 지닌 ‘장애’가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구자들은 ‘관광권리에 대한 장애인 스스로의 인식’과 ‘장애에 대한 인정과 수용’, ‘신체적·심리적 의존성’ 등이 장애인들의 내재적 제약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McKercher, Packer, Yau, & Lam, 2003; Yau, Mckercher, & Packer, 2004). Gassiot, Prats, & Coromina(2018)의 연구에서 내재적 제약으로 ‘건강 관련 문제’를 언급하긴 했지만 다수의 연구에서 장애로 인한 신체적 한계보다 장애가 유발하는 심리적 문제와 관련된 내재적 제약을 주로 강조했다.

반면에 고령자들은 내재적 제약 중 신체와 관련된 ‘건강 제약’을 크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Fleischer & Pizam, 2002; 이유리·박미석, 2005; Nyaupane, McCabe, & Andereck, 2008; 김철원·김응상·정병욱·이태숙, 2015; 김미경·김지은, 2017; Huber, Milne, & Hyde, 2018), 이는 고령자 전체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도 세부연령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확인됐다. Fleischer & Pizam(2002)의 연구에서는 55~65세 고령자는 은퇴와 함께 시간 제약이 사라지고 소득은 최고조에 달하며 건강 제약은 아직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Nyaupane, McCabe, & Andereck(2008)의 연구에서도 45~59세, 60~74세 고령자에 비해 75세 이상 고령자가 건강을 더욱 큰 제약요인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는 장애인과 고령자와 달리 이를 대상으로 여가제약을 직접 주제로 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가족 여가·관광 또는 키즈 마케팅 측면에서의 연구를 통해 제약요인을 유추할 수 있었는데 영유아의 신체적·정신적 특성 상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연구에 참여했기 때문에 개인의 심리와 관련이 깊은 내재적 제약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대인적 측면에 있어 장애인은 타인(여행사 직원)의 부정적 태도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는데(McKercher, Packer, Yaum & Lam, 2003; Devile & Kastenzholz, 2018; Gassiot, Prats, & Coromina, 2018), Devile & Kastenzholz(2018)는 비장애인들의 이러한 태도가 장애에 대한 편견과 무지에서 기인했다고 주장했다. 영유아 관련 연구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타인의 부정적 시각이나 태도에 대한 어려움이 직접적으로 기술되진 않았지만

영유아가 관광지에서 하나의 주체가 아닌 부모에게 동반된 객체로 평가받는 상황에 대한 보호자가 불만을 느끼거나(임지은·이우진, 2017) 가족휴가의 숙소 결정 기준에 있어 부모가 영유아 자녀와 숙소 직원간의 상호작용을 포함시킨다는 점에서(Khoo-Lattimore, Prayag, & Cheah, 2015) 관광종사원의 태도가 영유아의 대인적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영유아 본인 스스로만의 제약이라기보다는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가 함께 느끼는 제약이라고 구분할 수 있다.

장애인과 고령자는 가족의 관계 속에서 대인적 제약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장애인은 가족의 경제적·신체적·심리적 지지가 부족할 경우 관광 참여가 어려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의 지나친 염려와 보호로 인해 관광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Yau, Mckercher, & Packer, 2004). 고령자는 남편, 아들, 며느리 등 가족의 이해가 부족(반대)하거나 집안일이 많아서, 또는 돌봐야할 가족의 존재로 인한 제약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영숙·박경란, 2009). 장애인과 고령자는 가족들의 지지가 부족할 경우 관광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점이 유사하지만 장애인은 가족들의 염려의 대상인 반면 고령자는 가족들을 돌봐야 하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한국사회의 전통적인 성역할을 고려했을 때 가족으로 인한 대인적 제약은 특히 여성 고령자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영유아는 장애인과 유사하게 신체적·정신적으로 보호자에 대한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기타 보호자의 도움 없이 여가·관광을 즐기는데 한계가 있고, 가족으로부터의 지지가 부족할 경우 대인적 제약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 그러나 영유아와 관련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영유아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 관광활동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고(Shuxia, 2018), 관광활동을 통해 자녀가 행복하다면 나도 행복하다고 말했으며(Therkelsen, 2010), 가족관광 의사결정이나 관광지 평가에 있어 자녀의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Kozak & Duman, 2012; Khoo-Lattimore, Prayag, & Cheah, 2015; Curtale, 2018;) 영유아가 관광활동에 참여하는데 있어 가족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이나 고령자에 비해 영유아에게 있어 가족은 관광의 제약요인보다는 촉진요인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고 추측된다.

장애인은 내재적·대인적 제약에 비해 구조적 제약을 가장 크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이봉구·안선희·이유하·공주, 2008; 박승현·이영진, 2011; 류성옥·오치옥·이훈, 2012; Devile & Kastenholtz, 2018), 신체적·정신적 한계로 인해 이동이나 활동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교통수단, 숙박, 식당, 관광지 등에서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 마련을 필요로 한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갖춰져 있다 해도 이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상세 정보의 부족도 구조적 제약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다(McKercher, Packer,

Yau, & Lam, 2003; Devile & Kastenholz, 2018; Gassiot, Prats, & Coromina, 2018). 또한 장애인들은 낮은 취업률로 인한 경제적 제약을 경험하고 있으며, 가족과 정부/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McKercher, Packer, Yau, & Lam, 2003; 박승현·이영진, 2011), 오찬교·박인아·장현(2014)의 연구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장애인들의 생계보장 및 소득보장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령자도 장애인과 유사하게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통수단, 숙박, 여가시설, 편의시설 부족 등 시설측면의 여가제약과 은퇴 이후 소득감소로 인한 경제적 제약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숙·박경란(2009)은 고령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여가생활을 위한 경제적 대비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가장 큰 제약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려정·김병용(2012)의 연구에서도 고령자들이 경제적 부분에 대한 관광제약을 매우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구조적 제약 중 가장 주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했지만, 국외 연구에서는 비용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Nyaupane, McCabe, & Andereck(2008)의 연구에 따르면 75세 이상 고령자는 수입 부족으로 인해 경제적 제약을 경험하긴 하지만 타 연령대에 비해 그 정도가 낮다고 주장했으며, Huber, Milne, & Hyde(2018)는 고령자의 수입이 줄어들지만 저렴한 관광상품을 이용하는 등 관광패턴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액티브 시니어는 생애주기 상 소득이 최고조에 달하기 때문에 경제적 제약을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leischer & Pizam, 2002).

영유아는 장애인과 고령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숙박, 편의시설 등으로 인한 제약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타 집단에 비해 안전과 위생을 강조하였으며, 아이들의 식사, 수면, 체험활동 등 다양한 범주에서 상세한 요구사항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Therkelsen(2010)의 연구에 따르면 영유아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제 시간에 음식 먹기, 규칙적인 수면시간, 안전, 위생, 자연 속에서의 활동 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acker & Schanzel(2013)의 연구에서는 영유아 부모가 커튼이 빛을 막지 못해 자녀가 낮잠을 자기 어려웠거나, 난방기·에어컨에 의한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기술했다. 또한 아이의 안전이 확보되지 못하는 극단적인 상황에는 관광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편의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관광 자체가 불가능하기 보다는 개개인이 상황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지은·이우진, 2017).

비장애인의 대표적 여가제약 중 하나인 시간부족은 장애인이나 고령자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장애인은 개인이 지닌 신체적·정신적 한계로 인해 취업을 하기 힘들고(류성옥·오치옥·이훈, 2012) 고령자는 연령 특성으로 인해 은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Fleischer & Pizam, 2002; Nyaupane, McCabe, & Andereck, 2008; Huber, Milne, & Hyde, 2018), 시간 제약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영유아는 부모와 동반하여 여가·관광을 즐겨야 하기 때문에 부모의 시간제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가족여가활동에 대한 진미정·한경혜·장미나·변주수(2012)의 연구에서 원하는 만큼 여가를 즐기지 못하는 이유로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남편의 시간 부족’을 선택하기도 했다. 그러나 Shuxia(2018)의 연구에서 1~6세 이하 자녀를 가진 부모는 주말을 이용해 단기관의 관광을 즐기고, 7~9세, 10~14세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여름·겨울 방학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 부모의 상황과 의지에 따라 시간제약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예상된다.

장애인과 고령자, 영유아의 여가제약을 비교분석한 결과 세 집단 모두 구조적 제약을 크게 인지하고 있으며, 대인적 제약 중 가족과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집단 별 구조적 제약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장애인은 시설(정보) 부족, 고령자는 경제적 부담, 영유아는 안전과 위생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가족과의 관련성 부분에 있어서도 장애인과 고령자는 가족들의 염려 또는 반대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만 영유아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여가·관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아이의 행복에서 본인의 행복을 느낀다는 점에서 제약 보다는 촉진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다만 국외연구에서의 고령자는 국내에 비해 경제적 제약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으며, 특히 일부 연령대의 경우 은퇴 이후 시간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우면서 수입은 상승하고 건강도 양호하기 때문에 기존의 고령자나 장애인, 영유아와 같은 관광 약자와는 달리 별다른 여가제약을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의 여가제약에 대한 선행연구를 비교 분석하여 집단 간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국내연구들은 대부분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됨에 따라 문항이 담아내지 못하는 제약요인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웠고, 장애유형별로 동일한 문항을 사용함에 따라 각 장애유형이 지닌 고유한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고령자 분야에 있어서는 국외 연구에서만 주로 액티브시니어에 대해 논의함에 따라 국내 액티브시니어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 영유아의 경우 여가제약을 주제로 한 연구가 부족함에 따라 마케팅이나 가족관광 측면에서의 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약을 파악해야 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집단의 제약요인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이에 기초하여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대상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선행연구에서 확인이 어려웠던 대상별 여가제약을 심도 깊게 파악하고자 한다.

〈표 2-5〉 대상별 여가제약 비교분석(선행연구 기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내재적 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권리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 부족 장애에 대한 인정과 수용 부족 <p>⇒ 장애로 인해 유발되는 심리적 제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 악화 <p>⇒ 노화로 인한 신체적 제약 (세부 연령에 따라 상이)</p>	-	
대인적 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인의 부정적 태도 가족의 지지 부족 <p>⇒ 타인과 가족으로 인한 대인적 제약 경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의 이해 부족 (반대), 돌봐야 할 가족의 존재 가족의 지지 부족 <p>⇒ 가족으로 인한 대인적 제약 경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를 위해 관광활동 필요, 자녀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 <p>⇒ 타인으로 인한 대인적 제약 경험 ⇒ 가족은 제약이 아닌 촉진요인</p>	⇒ 가족과의 관련성 ↑
구조적 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 숙박 등의 편의 시설 부족 정보 부족 경제적 부담 <p>⇒ 시설(정보) 부족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적 부담 <p>⇒ 경제적 부담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과 위생 강조 식사, 수면, 체험 등 다양한 범주에서 상세한 요구 <p>⇒ 안전과 위생 강조</p>	⇒ 구조적 제약을 상대적으로 크게 인지

〈그림 2-1〉 대상별 여가제약 비교결과(선행연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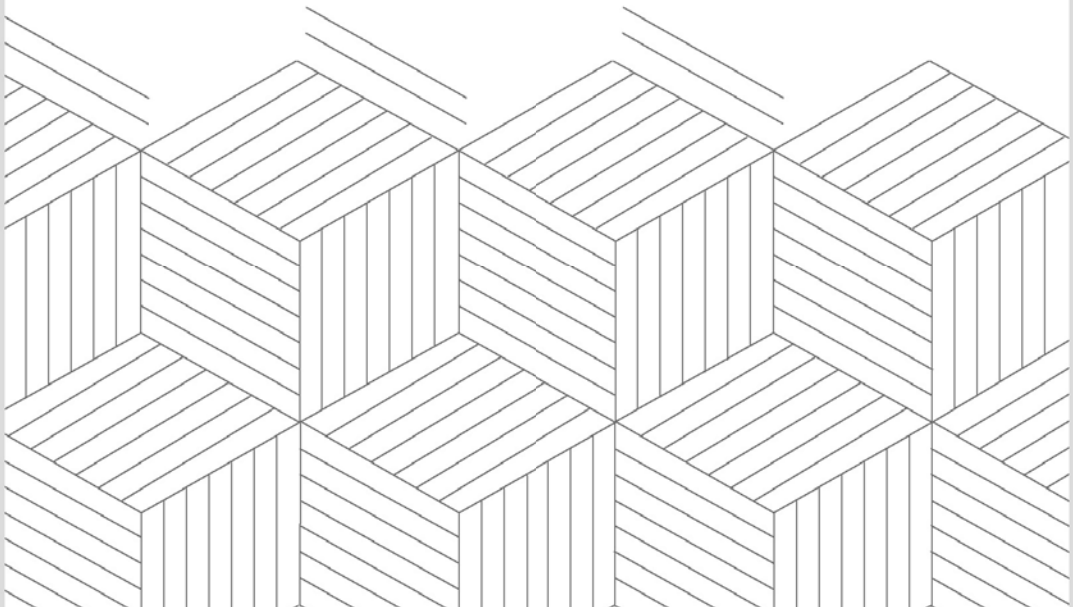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 구조적 제약/가족과의 관련성 ↑
그러나 세세한 요구사항은 대상 별로 상이

제3장

무장애 관광여건 분석

- 제1절 국내 관광약자 정책
- 제2절 국·내외 무장애 관광 사례
- 제3절 수원시 관광약자 정책
- 제4절 수원화성 무장애 관광환경



제3장 무장애 관광여건 분석

제1절 국내 관광약자 정책

1. 관광약자를 위한 법률

장애인·고령자·영유아를 위한 관광정책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관련 계획과 사업의 근간이 되는 법률을 검토하였다. 검토의 대상에는 ‘관광진흥법’,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이 관광이 직접 언급된 법률과 ‘장애인등편의법’, ‘가족친화법’과 같이 관광과 간접적(교통 및 여가 등)으로 연관된 법률이 포함된다.

〈표 3-1〉 영유아·노인·장애인의 관광 관련 법률

(정렬기준 : 제정일)

법률	제정일	관련 조항	비고
노인복지법	1981.06.05.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 최초 제정 당시부터 노인의 여가에 대한 내용 포함 - 관광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제외
관광진흥법	1986.12.31.	제47조의3(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제48조의5(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 2014년 장애인 관광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나 관련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미비 - 노인, 영유아(동반자)에 대한 내용은 부족
장애인등편의법	1997.04.10.	시행령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별표2	- 출입구와 보도, 화장실, 관광휴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과 같이 장애인이 관광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조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교통약자법	2005.01.27.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제17조(교통이용정보등의 제공)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인정하며 편리한 이동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한 기준 마련

법률	제정일	관련 조항	비고
장애인차별금지법	2007.04.10.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제24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2017년 '관광활동의 차별금지' 조항을 신설하며 장애인들의 '관광할 권리를 인정
가족친화법	2007.12.14.	시행규칙 제2조(가족친화제도)	- 가족여가문화 촉진제도를 명문화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미비
여가활성화법	2015.05.18.	제14조(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	- 해당 법률을 통해 여가를 국민의 권리로 인정했으나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조항은 미비

1)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1년 제정되었다.

제정 당시 제10조 '경로사업의 실시·지원'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심신건강의 유지와 여가선용을 위하여 교양강좌·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경로당·노인정·노인교실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국가가 노인의 여가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해당 조항은 2007년 삭제되었지만 현재 동법 제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 과 제37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를 통해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등과 같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였다.

또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 '비용의 보조'를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을 언급했고, 시행규칙 제24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를 통해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은 60세 이상의 자, 경로당은 65세 이상의 자가 이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설명하여 실질적인 법적용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본 법률에는 노인의 관광에 대한 조항은 없으며 여가에 있어서도 노인복지관 또는 경로당과 같이 공간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인 여가활동에 대한 언급은 부족하기 때문에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실질적인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해당 시설을 넘어서는 보다 폭넓은 여가활동에 대한 지원도 미비한 실정이다.

〈표 3-2〉 ‘노인복지법’의 관광약자 관련 조항

구분	내용
제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 8. 3.〉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삭제 〈2011. 6. 7.〉 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제37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 6. 7., 2018. 3. 13.〉 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8. 3. 13.〉

2) 관광진흥법

1986년 제정된 관광진흥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1960년대에 국가적으로 관광을 통한 외화 획득 가능성을 인지하여 이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관광사업진흥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

관광진흥법은 관광이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주요 전략사업으로 활용되던 시대에 탄생했기 때문에 최초 제정된 이후 줄곧 관광사업의 종류 및 등록,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과 같이 산업적 내용이 주를 이뤄 왔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 장애인과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박창석, 2013).

2011년 4월 5일 신설된 제48조의5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에서 관광객에게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할 수 있음을 명시하면서 이런 경우 장애인을 위한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최초로 장애인에 대해 언급했다.

장애인 관광을 주제로 한 최초의 조문은 2014년 5월 28일 신설된 제47조 3 ‘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인의 관광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18).

이 외에도 제47조의4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에서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나 관광취약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주로 의미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대상인 장애인, 노인, 영유아(동반자)의 관광여건 조성과 관련하여 실효성이 크지 않다.

〈표 3-3〉 ‘관광진흥법’의 관광약자 관련 조항

구분	내용
제47조의3 (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47조의4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48조의5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에게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 자원과 연계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을 위한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4. 5.]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998년 제정된 본 법률에서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으로 공원, 슈퍼마켓, 이용원, 파출소와 같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와 같은 공동주택 등을 지정하였으며, 시행령을 통해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명문화하였다(시행령 제4조, 별표2)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르면 공원의 경우 장애인의 이용이 가능한 출입구와 보도, 화장실, 점자 블록, 매표소 등을 구비해야 하며 숙박시설과 관광휴게시설 또한 주출입구접근도로, 전용주차 구역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밖에도 문화 및 집회시설, 수련시설과 같이 관광과 관련 있는 다양한 시설에 대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명시하여 장애인 등이 관광을 하기 위한 여건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했어도 실제 장애인들이 편의시설을 사용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곤 하는데 숙박시설의 경우 옷걸이나 샤워기가 너무 높이 설치되어 하반신이 불편한 장애인 위치에서는 손이 닿지 않는다거나 바닥에 흠이 패여 있어 휠체어 바퀴가 빠지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 단체 등에서는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한 여건 속에서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세밀한 법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SBS뉴스, 2018.04.22).

〈표 3-4〉 ‘장애인편의법’ 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중 일부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 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들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나) 자동차관련시설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8)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욕실은 1개실 이상을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9)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샤워실 및 탈의실은 1개이상을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3)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기숙사 및 숙박시설등의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1퍼센트 이상(관광숙박시설은 3퍼센트 이상)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객실 또는 침실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실로 본다.
(14)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열람석 또는 높이 차이가 있는 무대	(가)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및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의 1퍼센트 이상(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가 2천석 이상인 경우에는 20석 이상)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와 위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석으로 본다. (나) 공연장, 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15)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지역자치센터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접수대 또는 작업대는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각각 2대 이상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대만을 장애인들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16)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매표소(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판매기 및 음료대는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 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17)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등	임산부와 영유아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구조와 재질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휴게시설 내에는 모유수유를 위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약칭 : 교통약자법)

2005년 제정된 ‘교통약자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법률은 교통약자들도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며 이동할 수 있는 권리인 ‘이동권(제3조)’을 언급했으며,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5년 단위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⁴⁾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한 안내정보 등을 제공할 것을 명시했다.

법률 내에 관광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⁵⁾은 없으나 관광이 이동을 전제로 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관광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이라 할 수 있으며, 실제로 교통약자법에 근거하여 제주도에서는 교통약자용 버스정보안내기, 맞춤형 승차대, 짐자블럭, 저상버스 등을 도입하는 등 대중교통 시설 개선을 도모함에 따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보다 편리하게 일상생활 및 관광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굿뉴스365, 2018.12.26.).

〈표 3-5〉 ‘교통약자법’의 관광관련 조항

구분	내용
제14조 (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1.> 1. 교통약자에게 승하차 시간을 충분히 줄 것 2. 교통약자에게 승하차 편의를 제공할 것 3.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이하 "저상버스등"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버스와 저상버스등의 배치순서를 적절히 편성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할 때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면허기준을 갖추고 저상버스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臺數) 이상 운행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2. 21.> ③ 시장·군수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지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저상버스등 도입 및 저상버스등의 운영을 위한 버스정류장과 도로

4)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의미함(교통약자법 제2조(정의))

5) 교통약자법 제17조의2(교통수단 등 인증)제2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지역이 포함됨. 그러나 사업지역은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관광과 관련이 높다고 보기 어려움

구분	내용
	<p>등 시설물의 정비 계획을 반영하고, 이에 따라 저상버스등을 도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2., 2018. 2. 21.></p> <p>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저상버스등을 도입(할체어 탑승설비를 기존 버스에 장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교통약자의 인구현황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2. 21.></p> <p>⑤ 도로관리청은 저상버스등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버스정류장과 도로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⑥ 국가는 제5항에 따른 버스정류장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6. 1.]</p>
<p>16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p>	<p>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p> <p>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p> <p>④ 특별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외에는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 28.></p> <p>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할 수 있다.</p> <p>⑥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⑦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p> <p>⑧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17조 (교통이용정보 등의 제공)</p>	<p>① 교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약자 등이 편리하게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정보 등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와 한국어·통역 서비스 등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이하 "교통이용정보등"이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p> <p>② 국가는 교통사업자가 교통이용정보등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통이용 정보체제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③ 교통이용정보등의 제공방법, 운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p>

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해당 법률은 다양한 장애인 인권단체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라는 조직으로 뭉쳐 쟁취해낸 성과물이자 장애인을 단지 시혜나 배려의 대상으로 규정했던 이전의 법률과는 달리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여 장애인 인권신장에 기여했다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동아일보, 2008.04.09.; 월페이뉴스, 2017.04.05.; 함께걸음, 2019.01.09.)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고용과 교육, 토지 및 건물의 매매,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참정권 등과 같이 사회생활 전반에 있어 장애인들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관광활동과 관련된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접근, 문화·예술활동, 체육활동 등에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당시에는 관광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고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교통, 문화 등에 대한 조항만 있었으나, 2017년 9월 19일 ‘관광활동의 차별금지(제24조의 2)’ 조항을 신설하며 장애인들의 생활에 있어 관광권리를 인정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관광을 사치재가 아닌 인간이 누려야할 권리로 인정하고 장애인을 관광복지의 수혜자가 아닌 관광을 누리는 소비자로서 여기는 사회인식의 변화에 의해 촉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광활동의 차별금지’ 조항을 통해 관광에 있어서 장애인이 느끼는 차별이 모두 해소될 수는 없지만 물리적 차별 완화를 위한 지자체나 관광사업자들의 노력이 점차 증가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반면에 관광정보나 프로그램과 같은 서비스 부분에서의 차별 완화를 위한 노력은 미비한 실정이다(함께걸음, 2018.04.16.)

〈표 3-6〉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관광관련 조항

구분	내용
<p>제19조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p>	<p>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11.></p> <p>②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동반한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⑤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p> <p>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거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⑧ 제4항 및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0조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p>	<p>①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장애인 관련자로서 한국수어 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2. 3.></p>
<p>제24조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5조 (체육활동의 차별금지)</p>	<p>①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표 3-7〉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관광활동의 차별금지’ 조항

구분	내용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의2 (관광활동의 차별금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9.19.]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의2 (관광활동의 차별금지)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4의2와 같다. ②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관광시설 이용 및 관광지 접근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안내 2.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보조 인력의 이용 안내 [본조신설 2018. 3. 27.]
별표 4의2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1. 2025년 3월 20일부터 적용: 다음 각 호의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관광사업자 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5성급 또는 4성급의 호텔업 나.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국제회의시설업 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의 종합유원시설업 2. 2030년 3월 20일부터 적용: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사업자

6)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가족친화법)

가족친화법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7년 제정됐다.

본 법률에서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의 탄력적 근무제도,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등 출산·양육 및 지원 제도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며 관광에 대한 조항은 없지만 가족관계 증진제도, 가족친화 사회공헌제도, 가족여가문화 촉진제도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가족친화법 시행규칙을 통해 가족여가문화 촉진제도를 통한 가족단위 문화체험 지원을 명문화 하였으나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부족하여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알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법률상에 가족여가문화에 대한 내용을 언급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과 아동양육 등에 있어 여가의 필요성을 상기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

〈표 3-8〉 ‘가족친화법 시행규칙’의 관광관련 조항

구분	내용
가족친화법 시행규칙 제2조 (가족친화제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여성이 족부령으로 정하는 제도"란 다음 각 호의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10. 3. 19.> 1. 가족관계 증진제도 : 자녀 방학 중 휴가제, 근로자가족 초청행사, 정시퇴근제, 육아데이, 가정의 날 등 운영 지원 2. 가족여가문화 촉진제도 : 가족단위 문화체험 지원 3. 가족친화 사회공헌제도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祖孫家族),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장애인가 족 등 소외계층 지원제도

7)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약칭 : 여가활성화법)

이 법은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 일과 여가의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2015년 여가활성화법이 제정되면서 여가권은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무가 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는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여가를 통한 ‘일과 삶의 혁신적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제1차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해당 법률은 관광, 체육, 문화예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여가시설’, 여가활동,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을 가능하게 하는 ‘여가교육’, 여가활동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제작, 전시 등의 ‘여가산업’, 여가교육,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에 종사하는 ‘여가전문인력’ 등에 대해 명문화하여 국민이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법률 제14조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가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해당 조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회적 약자의 정의, 필요한 시책의 구체적인 형태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 방안으로 연계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표 3-9〉 ‘여가활성화법’의 관광관련 조항

구분	내용
제14조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관광약자 관련 계획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고령자 인구 증가로 인한 복지관광의 수요 증대, 관광약자를 타겟으로 하는 새로운 관광시장 개척 등을 위해 ‘무장애 관광’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의 일환으로 물리적 환경 개선, 콘텐츠 마련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문체부와 서울시의 ‘무장애 관광’ 관련 계획의 주요 대상과 세부 사업들을 검토하여 ‘무장애 관광’의 추진 흐름을 파악하고 수원형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표 3-10〉 무장애 관광 관련 계획

(정렬기준 : 연도)

명칭	연도	추진주체	비고
무장애 관광레저도시 조성방안	2006	문화체육관광부 (舊 문화관광부)	관광약자를 위해 사회적·경제적·물리적 장애가 없는 관광레저도시를 조성하고자 함
서울시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계획	2017	서울시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을 위해 관광시설, 콘텐츠, 정보, 사회적 인식 개선 추진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2019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약자를 포함해 모든 관광객이 최소한의 관광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물리적 개선, 홍보, 교육 등을 지원

1) 무장애 관광레저도시 조성방안(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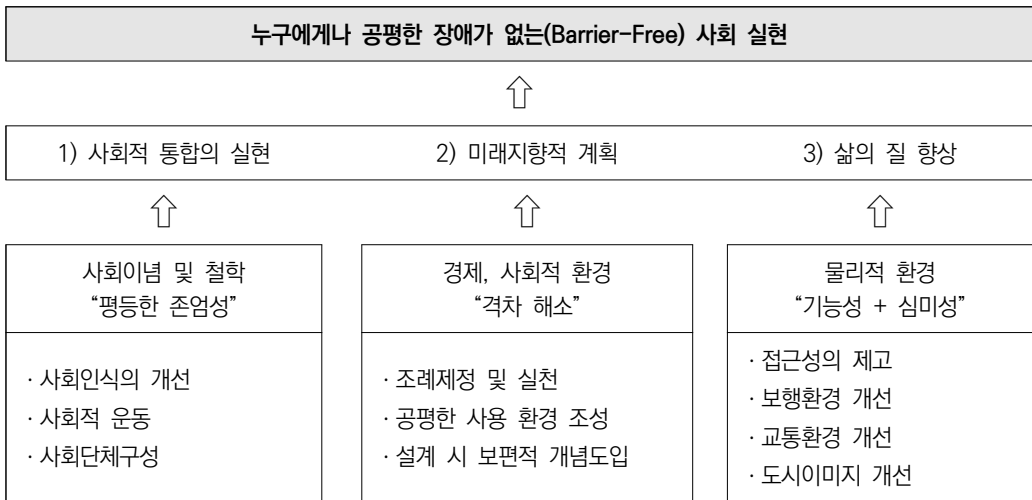
문체부에서는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후천적 장애인 증가,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무장애 도시(Barrier Free City), 무장애 운동(Barrier Free Movement)과 같은 새로운 도시건설이 요구됨에 따라 무장애 패러다임을 반영한 관광레저도시 조성 연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누구에게나 공평한 장애가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이념 및 철학’, ‘경제·사회적 환경’, ‘물리적 환경’의 세부 사업들을 제시하였다.

‘사회이념 및 철학’에서는 교육을 통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편견 등 ‘사회적 인식 개선’ 유니버설디자인 대회·무장애 운동 등 인식·태도·문화 장벽의 제거를 위한 ‘사회적 운동’, 지역사회 편의시설 촉진 활동 활성화와 사후 관리·감독의 시스템화, 제도적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사회단체구성’을 제안하여 ‘평등한 존엄성’을 달성하고자 했다.

‘경제·사회적 환경’ 부분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여건을 고려한 무장애 관련 ‘조례제정 및 실천’과 경제적 부담 없이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계층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공평한 사용 환경 조성’, 모두가 사용가능한 보편적 디자인 개념을 적용한 ‘설계 시 보편적 개념도입’을 제안하여 ‘격차 해소’를 도모하였다.

‘물리적 환경’ 분야에서는 ‘접근성 제고’를 위한 램프 설치, 보도 단차 줄이기, 유도블럭 설치를 제안했으며,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횡단보도, 육고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를 제시 하였다. 또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저상버스도입과 대중교통 접근성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 했고,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해 배리어프리 존(Barrier Free Zone)과 배리어 존(Barrier Zone)의 구성, 기능성과 심미적 기능을 갖춘 디자인 도입을 제안하여 ‘기능성과 심미성’을 모두 달성하고자 했다.

〈그림 3-1〉 무장애 관광레저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서울시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계획(2017)

서울시에서는 장애인구,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복지관광 정책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배려한 관광여건은 미흡한 지역 실정과 관광 약자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 장애인, 노인, 어린이 동반 가족을 타겟으로 한 미래 관광 수요 창출을 위해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고자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누구나 찾고 즐길 수 있는 모두를 위한 관광도시 서울’을 목표로 하여 ‘관광시설’, ‘관광 콘텐츠’, ‘관광정보’, ‘사회적 인식’ 분야에서의 개선을 추진하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무장애 관광도시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관광시설’의 핵심과제로 관광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관광시설 무장애 인증제 시행, 관광약자 관광욕구 및 접근성 실태조사, 장애인 관광버스 도입·운영을 계획하였으며, ‘관광콘텐츠’ 분야에서는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 콘텐츠 개발,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 민관협력을 통한 장애인 여행지원을 제시하였다.

‘관광정보’ 분야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관광정보 제공, 주요 문화시설 수어 동영상자료 제작·보급, ‘무장애 관광 지원 센터’ 개설·운영을 제안했으며, ‘사회적 인식’분야에서는 관광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 교육과 관광약자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사회적 인식 및 관광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그림 3-2〉 서울시 무장애 관광도시 정책목표와 방향

정책 목표	누구나 찾고 즐길 수 있는 모두를 위한 관광도시 서울			
정책 방향	관광시설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	관광콘텐츠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관광정보 관광정보 접근성 강화	사회적 인식 사회적 인식 및 관광서비스 개선
핵심 과제	① 관광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② 관광시설 무장애 인증제 시행 ③ 관광약자 관광욕구 및 접근성 실태조사 ④ 장애인 관광버스 도입·운영	⑤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⑥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 ⑦ 민관협력을 통한 장애인 여행지원	⑧ 다양한 매체 활용 관광정보 제공 ⑨ 주요 문화시설 수어 동영상자료 제작·보급 ⑩ 「무장애 관광 지원 센터」 개설·운영	⑪ 관광종사자 인식개선 교육 ⑫ 관광약자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3) 열린관광지 조성사업(2019)

문체부에서는 관광복지 확대를 위해 2015년부터 기존 관광지를 개·보수해 장애인, 고령자, 임신부, 영·유아 동반 가족 등 모든 관광객이 최소한의 관광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에는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용인 한국민속촌 등 6개소를 선정하였으며, 2019년에는 남이섬, 전주한옥마을, 올레7코스 등을 포함해 24개소를 선정하는 등 매년 사업의 대상을 확대해 2022년까지 10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2019년 현재 53개소 선정, <표 3-11 참조>). 2019년 공모 당시 이전 사업과 달리 ‘2019~2020 한국관광 100선’, ‘2016~2018 한국관광의 별’의 경우 가점을 부여하였는데, 수원시 대표자원인 수원화성은 ‘2019~2020 한국관광 100선’으로 선정된 바 있다.

열린관광지로 선정되면 맞춤형 컨설팅, 화장실, 편의시설, 경사로 등 시설 개·보수 비용, 무장애 관광코스 개발, 온·오프라인 홍보, 종사자 교육 등을 지원받는다. 2019년부터는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필수 조건을 충족하는 열린관광지에 ‘열린관광지 현판’을 수여하고, 정기적인 점검으로 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열린관광지와 기존 관광시설 등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무장애 여행 추천 코스 확대(2022년까지 200개소), 무장애 여행 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숙박·음식점 등 연간 1000개), 무장애 여행지 연계 나눔 여행 활성화(연간 600명) 등을 추진하여 '누구나 갈 수 있고' '주인공이 되는' 관광지를 만들고자 한다.

<그림 3-3>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운영현황



〈표 3-11〉 2015 ~ 2019 열린관광지

연번	지원연도	광역시	기초	관광지	비고
1	2015	대구	중구	근대역사골목*	2019~2020 한국관광 100선
2	2015	경기	용인	한국민속촌*	2016~2018 한국관광의 별
3	2015	전남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2019~2020 한국관광 100선
4	2015	전남	순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現 순천만습지)	2019~2020 한국관광 100선
5	2015	경북	경주	보문관광단지	-
6	2015	경남	통영	한려수도조망케이블카	-
7	2016	강원	강릉	모래시계공원	-
8	2016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	2019~2020 한국관광 100선
9	2016	전북	고창	선운산도립공원	-
10	2016	전남	여수	오동도	-
11	2016	경남	고성	당항포관광지*	-
12	2017	울산	중구	십리대숲	2019~2020 한국관광 100선
13	2017	경기	양평	세미원	-
14	2017	강원	정선	삼탄아트마인	-
15	2017	전북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
16	2017	경북	고령	대가야 역사테마파크*	-
17	2017	제주	서귀포	천지연 폭포	-
18	2018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	2019~2020 한국관광 100선
19	2018	경기	시흥	갯골생태공원	-
20	2018	강원	동해	망상해수욕장	-
21	2018	충남	부여	궁남지*	2019~2020 한국관광 100선, 세계유산
22	2018	충남	아산	외암마을*	-
23	2018	전북	무주	반디랜드	-
24	2018	전남	여수	해양공원	2019~2020 한국관광 100선
25	2018	전남	영광	백수해안도로	-
26	2018	전남	장흥	편백우드랜드	-
27	2018	경남	산청	전통한방테마파크*	-
28	2018	경남	함양	상림공원	-
29	2018	경남	합천	대장경기기록테마파크*	-

연번	지원연도	광역	기초	관광지	비고
30	2019	강원	춘천	남이섬	2019~2020 한국관광 100선, 2016~2018 한국관광의 별
31	2019	강원	춘천	물길로	-
32	2019	강원	춘천	소양강 스카이워크	-
33	2019	강원	춘천	박사마을 어린이글램핑장	-
34	2019	전북	전주	전주한옥마을*	2019~2020 한국관광 100선
35	2019	전북	전주	오목대*	-
36	2019	전북	전주	전주향교*	-
37	2019	전북	전주	경기전*	-
38	2019	전북	남원	남원 관광지*	-
39	2019	전북	남원	국악의 성지*	-
40	2019	전북	남원	지리산 허브밸리	-
41	2019	전북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체험관	-
42	2019	전북	장수	방화동가족휴가촌·자연휴양림	-
43	2019	전북	장수	장수누리파크	-
44	2019	전북	장수	와룡자연휴양림	-
45	2019	전북	장수	뜯봉생태관광지	-
46	2019	경남	김해	김해가야테마파크*	-
47	2019	경남	김해	낙동강레일파크	-
48	2019	경남	김해	봉하마을	-
49	2019	경남	김해	김해한옥체험관*	-
50	2019	제주	서귀포	서귀포 치유의숲	-
51	2019	제주	서귀포	올레7코스	2019~2020 한국관광 100선
52	2019	제주	서귀포	서복전시관*	-
53	2019	제주	서귀포	성산일출봉	2019~2020 한국관광 100선, 세계유산

자료 : 열린관광지 사업 공모(2019)

* 역사문화관광지(수원 대표관광지 수원화성과 유사성격 보유)

3. 시사점

관광약자와 관련한 법률을 검토한 결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내에 ‘관광활동의 차별금지(제 24조의 2)’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관광이 사치재가 아닌 장애인들도 누려야 하는 권리로서 인정받은 반면 영유아나 고령자 등 그밖에 약자에 대한 법률적 보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노인복지법이나 가족친화법, 여가활성화법 등에서 고령자의 여가시설 설치나 관광약자의 여가 필요성 등에 대해 일부 언급하고 있지만 콘텐츠에 대한 내용은 부족하거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여가 외에 관광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또는 관련 방안의 부족으로 법률상 실효성은 미비하다.

반면에 관광약자와 관련한 문체부의 열린관광지 사업이나 서울시의 조성 계획은 관광약자의 여가·관광 관련 법률과 달리 장애인 뿐 아니라 고령자와 영유아 등을 계획의 대상으로 포괄하고자 했으며, 사업 내용도 물리적 환경 개선 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장애 해소나 콘텐츠, 정보 등을 포함한 무장애 관광환경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체부의 사업을 통해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등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지자체 차원에서 인식하고 실질적인 결과로서 전국에 53개소의 열린관광지를 조성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수원시에서도 문체부와 서울시의 정책적 노력을 참고하여 관광약자 전체를 아우르는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이 필요하지만 국가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 법률 마련이 필요한 것과 같이 본격적인 사업 추진 이전에 ‘수원시 무장애 관광도시 조례’와 같은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법률과 같이 장애인 관광만을 고려한다면 고령자, 영유아 등 그밖에 관광 약자들이 소외되는 반쪽자리 관광환경 조성에 그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수원시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영유아 등 관광약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조례를 제정하고 문체부나 서울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장애인 뿐 아니라 고령자와 영유아 등 관광 약자 전체를 주요 대상으로 삼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괄하는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특정 대상의 소외를 최대한 방지하여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관광을 할 수 있는 수원형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국·내외 무장애 관광 사례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의 주요 대상과 내용적 범위, 각 방안들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무장애 관광환경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수원형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표 3-12〉 국·내외 사례 분석

구분	분석 대상	대상	관광환경	특성
국내	서울시 배리어프리 관광상품 개발 가이드북	(지체) 장애인	정보	장애인 관광상품 개발의 기준 마련
	순천시 열린관광지 (순천만습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등을 포함하는 모든 관광객	종합	장애인 위주의 관광환경 조성
국외	국립독일박물관	영유아, 고령자, (시각, 청각) 장애인	프로그램	모든 연령, 계층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독일 관광청 홈페이지	(지체, 발달, 시각, 청각, 인지) 장애인	정보	다양한 장애 유형을 모두 고려

1. 국내사례

1) 서울시 배리어프리 관광상품 개발 가이드북

■ 장애인 관광정보 제공 및 무장애 관광상품 개발의 기준 마련을 위해 가이드북 개발
서울시에서는 국내·외 장애인 관광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무장애 관광 자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장애인들의 관광활동이 제한될 뿐 아니라 관련 관광상품 개발도 미흡한 실정을 반영하여 ‘서울시 배리어프리 관광상품 개발 가이드북’을 출간하였다.

장애인 관광객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장애인 관련 단체·여행사의 무장애 관광상품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광지, 숙박시설, 음식점을 대상으로 주소, 대중교통 등 기본 정보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보유여부, 장애인 전용 객실유무 등 관광환경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서울을 대표하는 무장애 관광 추천코스 ‘배리어프리 6’을 선정하였다.

해당 코스는 창경궁과 정동극장을 중심으로 한 문화향연 코스, 여의도와 한강을 중심으로 한 한가람 코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인의 장애인 자문위원(지체장애인 3인, 시각장애인 3인)과 함께 각 코스를 방문하여 장애유형에 따라 무장애 관광코스로 적합한지 그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림 3-4〉 서울시 배리어프리 관광상품 개발 가이드북



자료 : 서울시 배리어프리 관광상품 개발 가이드북(2015)

■ 서울시 주요 관광지·숙박시설·음식점의 무장애 현황을 파악했으나 상세 정보 부족
 명동,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의 주요 관광지 39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들의 대중교통 접근성, 관광안내소와 매표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출입로, 보행로, 편의시설, 화장실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이밖에 음수대나 해설 이어폰 등 특이사항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각 항목의 구비여부를 픽토그램으로 표시하였으며, 항목별로 현황을 추가적으로 기술하여 장애인들의 관광활동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항목의 경우 정보의 구체성이 부족하여 서울시 관광을 희망하는 장애인 관광객과 무장애 관광상품 개발자는 가이드북에서 제공하는 정보 외에 추가적인 정보를 탐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각 젊음의 거리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주변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으로 ‘종로 젊음의 거리 끝에 위치한(청계천 방향) 공영주차장’을 제시하였고 ‘관광하는데 편리하다’라고 설명하였지만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떠한 측면에서 편리한지, 정확한 주소가 어디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며, 편의시설도 ‘대부분의 가게는 단차가 있어 휠체어 이동이 어려우나, 곳곳에 단차 없는 편의점, 카페가 있다’라고만 소개하고 있어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상업시설이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림 3-5〉 서울시 무장애 관광지 정보



자료 : 서울시 배리어프리 관광상품 개발 가이드북(2015)

숙박시설의 경우 명동이나 강남을 포함해 서울 전역에 위치한 32개소의 호텔 및 유스호스텔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각 시설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및 출입로와 보행로, 객실 정보, 객실 내 화장실, 공용 화장실, 기타 서비스 및 편의시설에 대해 확인했다.

장애인 전용 객실의 보유 여부와 객실 화장실 내 샤워기 설치높이 등에 대해 설명하고, 휠체어 이용자들이 보행로와 출입문 등의 지나가기 충분한지 ‘유효폭’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안내하고 있지만 ‘유효폭’이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전동 휠체어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상세 정보는 부족하다.

〈그림 3-6〉 서울시 숙박시설 정보



자료 : 서울시 배리어프리 관광상품 개발 가이드북(2015)

음식점 또한 서울시내 곳곳에 위치한 34개소의 시설을 대상으로 무장애 관광현황을 파악했으며, 각 식당의 주소와 영업시간, 가격 등 기본 정보와 함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출입로, 좌석 및 화장실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무장애 관광측면에서 음식점들의 현황 파악은 가능하지만 무장애관광지와 숙박시설 정보와 유사하게 상세 내용이 부족하거나 장애인 입장에서 부적절한 내용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장애인을 위한 가이드북으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로구에 위치한 '토속촌 삼계탕'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해 소개하면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없지만 토속촌 전용 주차장은 있다.', '주차장의 위치는 횡단보도만 건너면 된다.' 라고 기술했는데 휠체어를 이용하는 등 도보이동에 제약이 큰 지체장애인 입장을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운 설명이다.

화장실 또한 '입구에 단차가 있기 때문에 휠체어 이동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좌석이나 출입구도 장애인 관광객들에게는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식당이 '배리어프리 관광상품 개발 가이드북'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7〉 서울시 음식점 정보



자료 : 서울시 배리어프리 관광상품 개발 가이드북(2015)

2) 순천시 열린관광지(순천만습지)

■ 국내 최초의 열린관광지 중 하나인 순천만습지

문체부에서는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 모든 관광객이 이동의 불편 및 관광 활동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2015년부터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순천시의 순천만습지는 경주 보문관광단지, 대구 중구 근대골목 등과 함께 국내 최초의 열린관광지 6개소에 선정되었다.

문체부에서는 관광지 당 최대 2억 원의 개선비용을 지원했으며, 순천시에서는 순천만습지 일대에 경사로, 장애인 전용 주차장, 촉지 안내판, 휴식공간, 화장실 내 영유아거치대 등을 마련하여 관광약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였다. 또한 순천만습지 일대에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일반산책로와 별도로 열린관광산책로를 조성하여 순천만역사관, 순천만자연생태관, 갈대숲 탐방로 등 주요 시설물과 생태자원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3-8〉 순천만습지 열린관광지 조성현황



자료 : 순천만습지 홈페이지(<https://www.suncheonbay.go.kr/>)

■ 장애인 위주의 열린관광지 조성, 고령자, 영유아 등에 대한 관심 부족

2015년 열린관광지 조성 이후 순천만습지는 2019년 현재까지도 홈페이지를 통해 열린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은 무료 주차 및 입장이 가능하다. 순천만습지 내 주요 명소인 갈대숲탐방로와 용산전망대, 생태체험선의 경우 통로의 경사가 심하거나 공간이 협소한 등의 한계가 있지만 열린관광지로서 조성한 경사로 및 장애인화장실 등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지체장애인을 기준으로 열린관광지를 조성함에 따라 시각장애인이나 고령자, 영유아 등 그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은 미비한 실정으로 지체장애인 중심의 환경 조성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영유아, 그밖에 일반 시민들도 간접적인 혜택을 볼 수는 있지만 영유아는 연령에 맞는 안전한 놀이공간을 필요로 하거나 시각장애인은 화장실 내 점자블록과 점자표시를 필요로 하는 등 대상별로 특화된 환경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순천만습지에서는 수동휠체어와 유모차를 대여해주고 있지만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이 어렵고 순천관광 홈페이지(두근두근 순천여행)에서도 동일하게 수유실 보유여부나 유모차 대여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반면에 순천만국가정원이나 낙안읍성의 경우 수유실이나 휠체어/유모차 대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순천 대표 자원으로서 순천만습지의 관광환경 조성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국외사례

1) 국립독일박물관

- 관광 약자는 물론 연령별 특성에 맞는 다채로운 투어 프로그램 제공

국립독일박물관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등 관광 약자를 비롯해 치매환자, 일반성인 등 다양한 대상을 위한 투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개개인의 필요와 특성에 맞게 박물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주차장, 도로의 경사도, 화장실 등 인프라 개선과 함께 전용 가이드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유아를 위해서는 소리, 지하, 우주 등 여러 주제의 탐험 프로그램, 배 만들기, 책자 만들기 등의 제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도록 놀이공간도 조성하여 체험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배경지식을 지닌 사람들을 위해 특별 가이드 투어를 운영하여 폭넓고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그림 3-9〉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국립독일박물관)



자료 : 국립독일박물관 홈페이지(<http://www.deutsches-museum.de/>)

- 지체장애인뿐 아니라 청각·시각 장애인까지 고려

서울·순천시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국내의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을 기준으로 이들이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국립독일박물관에서는 지체장애인을 위한 시설조성 및 정보 제공 뿐 아니라 청각, 시각 장애인과 치매환자를 위해 장애 유형을 고려한 가이드투어를 제공하고 있다.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수화통역사가 동반하는 투어를 운행하여 전시품에 대해 이해하고 질문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후각이나 촉각을 이용해 전시품을 이해할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특정 주제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전시회 기간에는 이에 맞춰 주제를 변경하기 때문에 장애인들도 다채로운 프로그램 경험이 가능하다.

치매환자 대상 가이드투어는 참가자들의 감정과 감각을 자극할 수 있는 음악을 주제로 하여 매달 1회씩 경험이 많고 특별히 훈련된 직원들에 의해 운영하고 있다. 가이드들은 악기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주고 직접 악기를 연주할 뿐 아니라 참가자가 직접 악기를 연주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표 3-13〉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국립독일박물관)

프로그램명	구분	운영 기간	내용
Kosmos Kaffee (Blindentastführung)	시각 장애	2019년 9월 6일 10:30 ~ 12:00	코스모스 커피(cosmos coffee) 특별 전시회 중 시각 장애인을 위해 촉각, 후각, 그리고 정확한 묘사에 의해 전시품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Kosmos Kaffee (Führung für Gehörlose)	청각 장애	2019년 9월 20일 10:30 ~ 12:00	수화통역사가 동반하여 특별 전시회 주제에 대해 설명하고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자료 : 국립독일박물관 홈페이지(<http://www.deutsches-museum.de/>)

〈그림 3-10〉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가이드투어 운영 현황(국립독일박물관)



자료 : 국립독일박물관 홈페이지(<http://www.deutsches-museum.de/>)

〈그림 3-11〉 치매환자를 위한 가이드투어 운영 현황(국립독일박물관)



자료 : 국립독일박물관 홈페이지(<http://www.deutsches-museum.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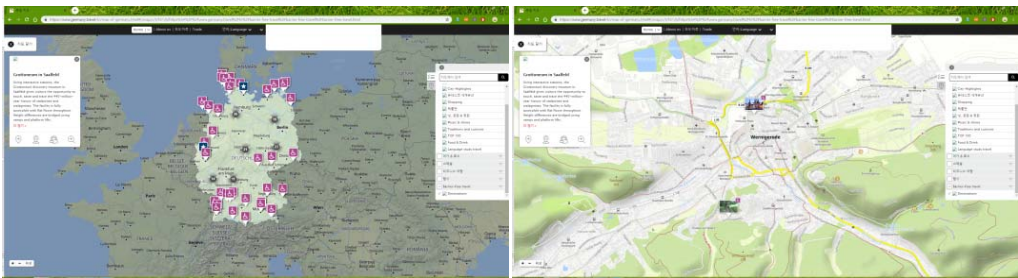
2) 독일 관광청 홈페이지

■ 독일의 무장애 관광 정보를 종합하여 ‘모두를 위한 관광’ 데이터베이스 개발

독일 관광청에서는 정부 지원 하에 독일 전역의 무장애 관광 정보를 총망라한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였다. ‘모두를 위한 관광(Travel for All)’ 이라고 명명된 해당 데이터베이스는 숙박, 레스토랑, 액티비티, 쇼핑 센터 및 교통편, 현지 관광안내소와 같은 필수 서비스를 비롯해 각 지역의 휴양 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독일 관광청은 독일을 찾는 관광객의 약 10%가 무장애 관광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접근가능한 관광이 21세기 관광산업의 핵심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1,500개 이상의 정보를 담고 있는 ‘모두를 위한 관광(Travel for All)’ 데이터베이스의 내용과 범위를 계속적으로 넓혀나갈 계획이다(Global Accessibility News, 2019.04.15.).

〈그림 3-12〉 ‘모두를 위한 관광’ 데이터베이스 현황(독일 관광청 홈페이지)



자료 : 독일 관광청 홈페이지(<https://www.germany.trav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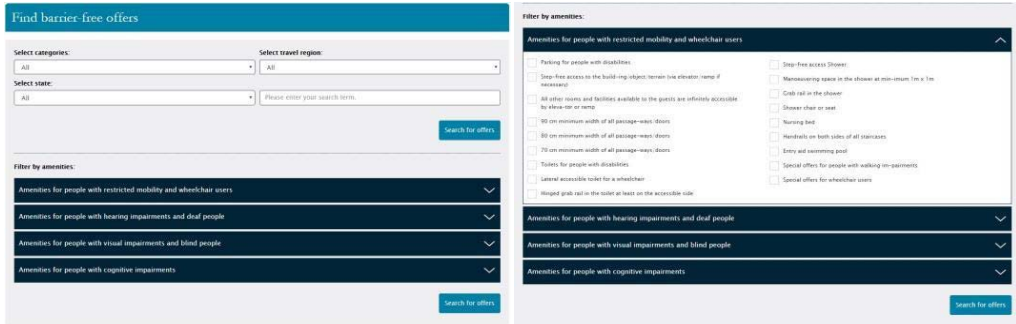
■ 장애유형별 특성과 욕구에 맞춰 세분화된 맞춤형 정보 제공

‘모두를 위한 관광’ 데이터베이스는 독일 관광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장애 유형별로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및 요구사항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체·청각·시각·인지기능 장애별 필터링 기능을 통해 맞춤형 관광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등 이동에 제약이 있는 지체장애인들은 ‘모든 계단의 양면 난간’, ‘모든 통로/문의 최소 폭 90cm’, ‘휠체어 사용자들을 위한 특별 행사’ 등의 항목 중 자신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선택하여 그에 맞는 관광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은 ‘보조견 동행 가능’, ‘점자로 된 정보’, ‘가이드 투어/오디오 가이드’ 등의 항목을 선택할 수 있다.

청각장애인은 ‘출입구에서 초인종을 대신할 불빛신호’, ‘엘리베이터 내 조난 호출의 시각화’ 등의 항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인지기능 장애인은 ‘쉬운 언어로 된 정보 제공’, ‘그림이나 이미지로 표시되는 정보’ ‘그림 안내 시스템’과 같은 항목을 선택하여 개인의 특성에 맞는 관광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림 3-13〉 장애유형별 필터링 기능(독일 관광청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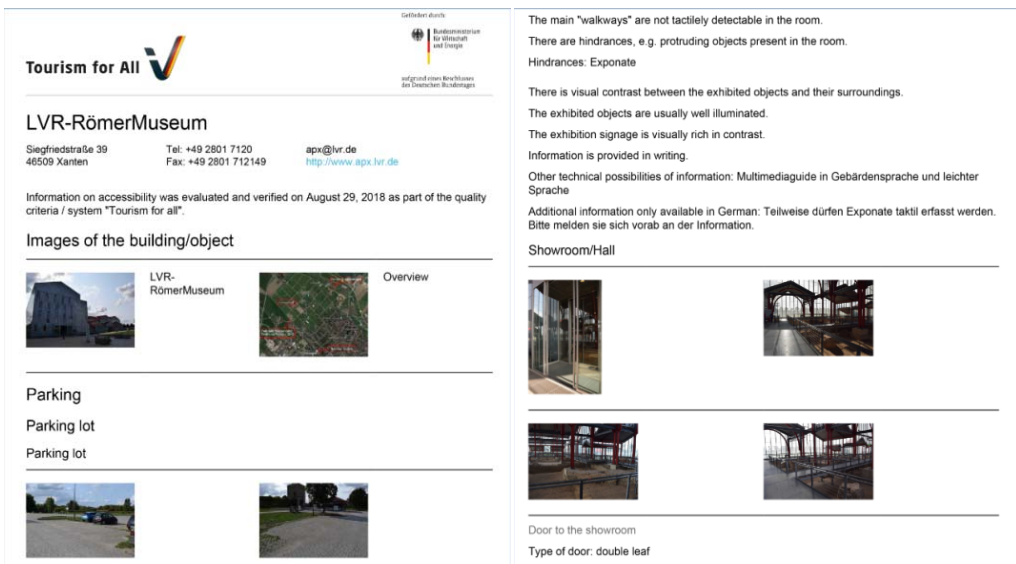


자료 : 독일 관광청 홈페이지(<https://www.germany.travel/>)

관광객이 희망하는 항목을 선택하면 그에 해당하는 관광지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관광지별로 주차장, 출입구, 전시장, 가이드 투어 등과 관련한 ‘무장애 관광’ 정보를 문서화하였기 때문에 상세한 현황 파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주차구역의 면적, 출입구와 주차장 사이의 거리, 계단의 칸별 높이, 계단 손잡이 설치 여부, 전시장의 출입문 여는 방식,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감안내시설의 설치여부, 장애 유형별 가이드 투어의 제공 여부 등을 기술하였으며, 항목별로 세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개인적 요구와 특성을 고려하여 목적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림 3-14〉 LVR 로마 박물관(LVR-RömerMuseum) 무장애 관광 관련 문서



자료 : 독일 관광청 홈페이지(<https://www.germany.travel/>)

3. 시사점

문체부는 ‘열린관광지’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100개소의 무장애 관광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무장애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관광 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러나 국내의 무장애 조성 사례를 살펴 보면 사업의 대상이 지체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사업 내용도 주차장이나 보행로 개선과 같이 물리적 환경 개선 위주로 되어 있어 고령자나 영유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콘텐츠나 정보에 대한 개선노력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지체장애인을 위한 도로폭 및 화장실 개선 등을 통해 영유아와 고령자 또한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지체장애인은 화장실 내에 안전 손잡이와 휠체어가 지나다닐 수 있는 유효폭에 필요로 하는 대신 영유아는 연령에 맞게 성인용보다 작은 크기의 소변기나 세면대를 필요로 하는 등 관광약자 별로 다른 특성을 보유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장애인 또한 지체, 발달, 시각, 청각 장애인 등 유형이 다양하고 각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무장애 관광 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지체장애인만을 중심으로 한 관광환경 조성은 ‘관광 약자를 포함해 모두가 편리한 관광환경 조성’이라는 무장애 관광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독일의 사례에서는 지체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자, 영유아 등 관광 약자 전체를 대상으로 시설적인 개선과 함께 프로그램, 정보 제공과 같이 폭넓은 관광환경 조성을 추구하고 있는데, 국립독일박물관에서는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서 각자의 장애특성에 맞는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치매노인을 위한 가이드투어도 운영 중이다.

독일 관광청 홈페이지에서는 무장애 관광 수요자를 위해 독일 전역의 무장애 관광 정보를 총망라한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해당 정보는 개인의 장애 유형에 맞게 유형화되어 있어 개인이 손쉽게 정보 탐색이 가능하다.

수원시에서도 지체장애인/하드웨어 중심의 국내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흐름에서 벗어나 국외 사례에서 추구하는 관광약자 전체를 아우르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양방향의 환경구축을 목표로 한다면 수원시만의 차별화된 무장애 관광환경을 구축하여 시민 모두의 만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내 무장애 관광 수요를 흡수하여 새로운 관광시장도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3절 수원시 관광약자 정책

수원시는 국내 광역·기초 지자체 중 최초로 고령자·아동·여성 친화도시로 모두 인증을 받은 곳이자 장애인 친화도시로의 변모를 위해 '장애인복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광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조성에 대한 다방면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분야별 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개별 연구를 실시하여 시설 개선 및 콘텐츠 개발 등을 제시하였고, 내용 중 일부는 '무장애 관광'과 관련한 여가환경 조성, 교통약자 배려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원시 관광약자 정책의 일환으로 고령자·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와 '장애인복지 5개년 기본계획'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그림 3-15〉 수원시 친화도시 조성현황



1.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추진전략

수원시는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고령자를 포함해 전 시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가 주관하는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기 위해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추진전략' 연구를 실시하였다.

'참여, 소통, 누림이 있는 활력 넘치는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을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비전으로 삼고 '은퇴대비 미래 환경 조성',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환경 조성', '사회통합과 소득창출환경 조성'의 3대 목표와 '인생 제2막 은퇴설계', '활동적인 생활환경', '건강한 노년', '활력 있는 노년', '사회적 존중과 세대통합', '안정된 노년 일자리'의 6대 영역으로 구분하여 세부 사업들을 제시하였다.

'활동적인 생활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고령자 사회복지시설 지원'과 '교통약자 배려환경 지원'을 추진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기존 노인복지관 기능 개편',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확대적용', '팔달구 노인복지관 건립 및 운영',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교통 분야와 관련해서는 '저상버스 도입 확대', '주차장 조성 확대', '교통약자 보호구역 확충', '교통약자 및 소외지역 편의증진 사업' 등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관광 약자의 여가공간 확충 및 교통편의를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무장애 관광'을 조성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활력 있는 노년'을 위해 '어르신 여가문화 지원'을 계획했으며, 세부 사업으로는 '시니어 문화존 조성사업', '6분 거리 내 시민의 숲 조성',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등의 사업을 제시하였고, 고령자가 편리하게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추진함에 따라 교통, 복지시설 부분의 개선과 함께 고령자의 '무장애 관광'을 위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 3-16〉 수원 고령친화도시 비전과 목표

비전	참여, 소통, 누림이 있는 활력 넘치는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3대 목표	은퇴대비 미래환경 조성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환경 조성	사회통합과 소득창출환경 조성
6대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생 제2막 은퇴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적인 생활환경 건강한 노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력 있는 노년 사회적 존중과 세대통합 안정된 노년 일자리

2. 수원시 장애인복지정책 5개년 기본계획 연구

수원시 등록 장애인은 42,393명(2018년 말 기준)으로 경기도 시·군 중 가장 많으며, 2007~2018년 간 수원시 전체 인구의 연평균 증감률(1.08%) 대비 등록 장애인 증감률(은 2.08%)은 약 2배로 나타났다. 등록 장애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 인구 비율도 2007년 3.17%에서 2018년 3.53%로 증가하였다.

수원 장애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장애등급제 개편, 부양의무제폐지 등 장애인복지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수원시에서는 장애인들의 복지욕구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절감, ‘수원시 장애인복지정책 5개년 기본계획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수원시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사회통합을 위해 수원시가 지향해야 할 장애인 정책의 기본 비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무장애·인권도시, 수원’으로 삼고 ‘권리보장 및 지원 체계 구축’, ‘권리의식 제고 및 권리보장 도구 지원’, ‘생애단계별 맞춤형 권리보장’이라는 정책목표 하에 세부 정책 과제를 수립하였다.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과 관련한 과제로는 ‘장애물 없는 안전 환경 구축’, ‘문화·여가권 보장’, ‘이동권 보장’이 해당되며, 인프라 및 콘텐츠 차원의 개선을 통해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가·관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장애물 없는 안전 환경 구축’의 세부 사업으로 ‘의사소통도구 및 정보접근성 확대’와 ‘교통 약자 이동편의시설 확대’ 사업을 제시하였고, ‘문화·여가권 보장’을 위해서는 ‘문화·여가 관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신청’, ‘장애인 공공체육시설 지정 및 보조인력 지원’을 계획 하였다.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동수단 확대 및 다변화’를 계획했다.

〈그림 3-17〉 장애인복지정책의 비전과 목표

비전	함께 만들어가는 무장애·인권도시, 수원		
추진방향	사회 통합, 생애단계별 연계성, 지역사회 협력체계, 장애인당사자 참여		
정책 목표	권리보장 및 지원체계 구축	권리의식 제고 및 권리보장 도구 지원	장애단계별 맞춤형 권리보장
정책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보장 인프라 및 제도 구축 • 장애물 없는 안전 환경 구축 •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식개선 및 권리의식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기 조기교육 확대 • 학령기 맞춤형 교육 지원 • 청년기 평생교육권 확대 • 청·장년기 자립 및 경제권 보장 • 장·노년기 건강권 및 보호권 보장 • 참정권 보장 • 문화·여가권 보장(공통) • 건강권 보장(공통) • 이동권 보장(공통)

3.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1996년 제2차 유엔인간정주회의(UN HABITAT II)에서는 도시가 모두에게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야 하며, ‘아동의 안녕이야말로 건강한 도시, 민주적 사회, 굿 거버넌스의 평가 지표’임을 선언하였고, 이 회의를 시작으로 유니세프에서는 각국의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원시에서도 저출산 극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과 아동의 권리, 아동의 행복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인지하여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나아가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였으며, 2017년 9월 국내 13번째 아동친화도시가 되었다.

수원시는 아동친화도시 정책을 통해 ‘아동의 행복한 삶이 실현되는 휴먼시티 수원’을 이루고자 했으며, ‘아동의 권리강화를 위한 수원형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문화공간 확보’, ‘시정 및 문화 참여확대’, ‘안전 강화’, ‘발달주기별 건강지원’, ‘수원형 교육서비스 구축’, ‘차별금지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동의 놀이와 여가를 위한 ‘문화공간 확보’ 사업의 세부 사업으로는 ‘꿈꾸는 놀이터 조성’, ‘아이러브맘 카페 운영’ 등이 있다. ‘꿈꾸는 놀이터’는 성인 위주의 기존 공원조성 방식에서 벗어나 어린이들의 의견과 디자인을 직접 반영하여 아이들의 상상력으로 가득한 놀이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속지산공원, 우정어린이공원 포함 6개소의 어린이공원에서 ‘꿈꾸는 놀이터’ 조성을 위한 어린이 디자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아이러브맘 카페’는 영유아와 자녀를 돌보는 부모에게 자녀출산에서 육아까지 종합적인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영유아 전용 놀이공간 및 놀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지점은 외지인에게까지 공간을 제공하여 시민과 관광객 모두의 ‘무장애 관광’ 공간으로 애용되고 있다.

〈그림 3-18〉 수원 아동친화도시 비전과 목표

비전	아동의 행복한 삶이 실현되는 휴먼시티 수원					
목표	아동의 권리강화를 위한 수원형 아동친화도시 조성					
세부 사업	문화공간 확보	시정 및 문화 참여 확대	안전 강화	발달주기별 건강지원	수원형 교육서비스 구축	차별금지 강화

4. 시사점

수원시는 관광 약자가 안전·안심·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WHO 고령친화도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로 인증을 받는 등 약자 친화적 도시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2017년 수립한 '수원시 장애인복지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을 구축하고자 했다.

각 사업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고령친화도시 사업은 '교통약자 및 소외지역 편의증진 사업', '6분 거리 내 시민의 숲 조성' 등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고령자의 편리한 이동과 여가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친화도시 사업은 아동의 여가와 놀이를 위해 '꿈꾸는 놀이터 조성', '아이러브맘 카페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이러브맘 카페에서는 영유아가 놀 수 있는 실내 놀이공간 제공부터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부모를 위한 상담까지 제공하는 등 영유아 가정을 위한 복합 여가·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장애인 분야의 경우 장애인복지정책 5개년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장애물 없는 안전 환경 구축', '이동권 보장', '문화·여가권 보장을 추진하여 고령자의 경우와 같이 이동과 여가환경 조성 등 여가·관광을 아우르는 장애인복지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추구하였다.

수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 약자와 관련한 일련의 사업들은 각 대상의 생애단계별 복지와 권리보장, 나아가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지자체 차원에서의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각 계획들이 수원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추진에 있어 정책적 기본바탕의 역할을 함에 따라 관련 조례나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체계적인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계획들 간의 상호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4절 수원화성 무장애 관광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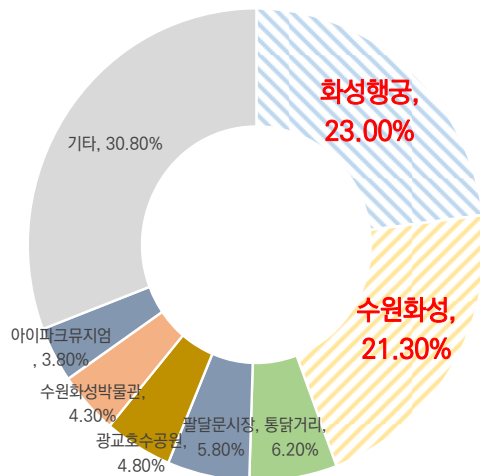
1. 개요

수원화성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2차 자료 분석 결과 방문객의 33.2%가 수원시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송화성, 2018), 수원시 거주자를 제외한 방문객 설문조사(송화성, 2017)에서 수원 내 방문(예정) 관광지를 문의한 결과 응답자의 44.3%가 수원화성·화성행궁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60대 고령자의 경우 과반수가 넘는 57.2%가 수원화성·화성행궁을 방문하였다.

미취학 자녀를 둔 수원시민에게 지역 내 가장 많이 방문한 여가·관광지를 문의했을 때도 동일하게 수원화성(화성행궁)을 선택한 경우가 43.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수원화성이 수원시민과 관광객, 고령자부터 영유아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수원 대표 관광지로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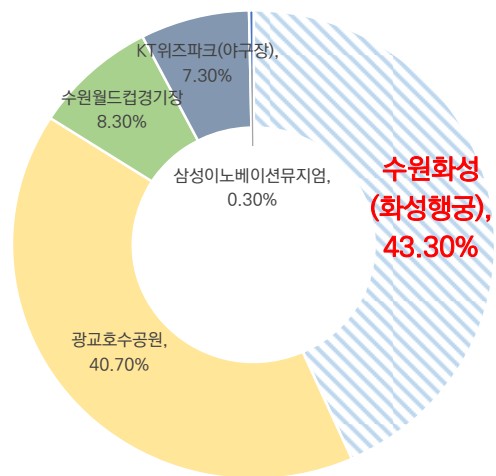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역 대표 관광지인 수원화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여가·관광활동을 즐길 수 있는 ‘무장애 관광’ 측면에서의 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무장애 관광지로서 수원화성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림 3-19〉 방문(예정) 수원 관광지
(수원시 거주자 제외)



자료: 송화성(2017)

〈그림 3-20〉 가장 많이 방문한 수원 여가·관광지
(수원시 영유아 동반가족)



자료: 송화성(2018)

수원화성 현장조사는 본 연구의 주제와 목적을 이해하고 있는 연구진이 직접 수행하였으며, 4대문 및 주요 자원을 중심으로 수원화성을 6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및 코스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수원화성박물관,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등 수원화성과 연계방문이 용이한 주변 문화자원도 함께 조사하였다.

〈그림 3-21〉 수원화성 무장에 관광환경 조사



〈표 3-14〉 수원화성 무장에 관광환경 조사

방법	연구진이 수원화성 일대를 대상으로 무장에 관광환경 조사
대상	① 팔달문~서장대 ② 화성행궁~서장대 ③ 서장대~화서문 ④ 화서문~장안문 ⑤ 장안문~창룡문 ⑥ 창룡문~팔달문
일자	2019년 1~7월 중 4회 방문 - 2019. 1. 24(목)/ 2019. 2. 1(금)/ 2019. 7. 12(금)/ 2019. 7. 24(수)

2. 구간별 분석

1) 1구간(팔달문 ~ 서장대)

1구간은 지면에 위치한 팔달문 매표소와 팔달산 정상에 있는 서장대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성곽길의 대부분이 팔달산 능선을 따라 조성되어 있으며, 진입로 초입에 위치한 남치에서 서남암문까지의 구간은 급경사의 비탈면과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어 휠체어나 유모차로 접근 시 안전문제 발생의 위험이 높아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서남암문에서 서장대까지 가는 길은 대부분이 평지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등의 도보이동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당 구간까지의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관광약자의 방문은 많지 않으며, 운동·산책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상태가 양호한 고령자가 종종 발견된다.

해당 구간에는 팔달문화장실과 진달래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팔달문화장실은 팔달문 매표소 인근 지면에 있어 관광약자의 접근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장애인이나 영유아 등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특히 남자화장실은 관련 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

팔달문화장실은 원형의 건물을 반으로 구분해 남녀화장실을 각각 조성하였기 때문에 반원형 공간의 둘레를 따라 좌변기들이 설치되어 있다. 건물이 작아 진입로와 통로가 협소하여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전동휠체어나 유모차 등은 진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을 위한 안전시설은 여성용 화장실 내의 1개의 좌변기 주변에만 설치되어 있으며, 세면대나 기타 시설에는 안전시설이 없어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 이용 시 안전문제 발생 위험이 높고, 특히 남성 화장실에는 장애인 시설이 전무하다.

영유아용 시설의 경우 기저귀교환대가 여성화장실에 있지만 영유아용 변기나 거치대와 같은 편의시설은 없어 기저귀를 착용하지는 않지만 몸집이 작아 연령에 맞는 좌변기나 세면대와 같은 시설을 필요로 하는 유아의 경우 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진달래화장실은 급경사의 도로를 지나야만 접근이 가능한 서포루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관광약자의 방문이 어렵지만 수원화성의 화장실들이 기저귀교환대를 화장실 입구 주변에 설치한 것과 달리 별도 칸에 설치하여 영유아의 생리현상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영유아 편의시설의 청결상태가 불량하여 위생문제에 취약한 영유아 사용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진달래화장실에는 영유아용 편의시설 외에도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세면대와 좌변기에 안전을 위해 손잡이를 설치하였으나 휴지걸이가 좌변기에 비해 높이 설치되어 있어 지체장애인들에게 불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22〉 1구간(팔달문 ~ 서장대) 무장애 관광환경 현황



〈남치 인근 : 급경사 도로로 관광약자 이용이 어려움〉



〈서장대 인근 : 평탄면으로 되어 있어 도보이용 편리〉



〈팔달문 화장실 : 협소한 공간, 장애인용 안전시설 부족〉



〈팔달문 화장실 : 여성화장실에만 장애인용 손잡이 설치〉



〈팔달문 화장실 : 진입로가 좁아서 휠체어 이용에 한계〉



〈진달래 화장실 : 장애인 화장실 휴지걸이가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어 이용 불편〉



〈진달래 화장실 : 영유아용 세면대 별도 설치〉



〈진달래 화장실 : 유아용 편의시설 청결상태 불량〉

2) 2구간(화성행궁 ~ 서장대)

2구간은 1구간과 유사하게 지면에 위치한 화성행궁과 팔달산 정상의 서장대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급경사의 계단이 설치되어 있지만 화성행궁에서 성신사를 연결하는 우회도로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해당 도로를 이용해 유모차로 이동하거나 영유아와 함께 도보로 이동하는 가족단위 관광객, 산책·운동 목적의 고령자 방문객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우회도로는 성신사 부근까지만 연결되고 성신사에서 서장대까지는 다시 계단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2구간의 일부분만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화성행궁 앞으로 광장이 조성되어 있고 화장실과 모유시설, 파고라·벤치 등의 편의시설이 다수 설치되어 있어 관광객 중 영유아 동반가족의 이용이 특히 많은 구간이다. 편의시설 외에도 행궁광장 한편에 바닥분수가 설치되어 있으며, 자전거택시, 화성어차 탑승이 가능하고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수원화성박물관도 가까워 영유아와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행궁광장의 바닥 중 일부에는 능행차도가 조각되어 있는 등 바닥재가 고르지 않아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고령자, 도보이동이 익숙하지 않은 영아 등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일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구간과 비교하면 2구간에는 편의시설이 많고 평지가 많아 관광객 이용이 상대적으로 편리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2구간에는 화성행궁화장실, 성신사 인근 전망좋은화장실이 있으며,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화장실, 행궁동행정복지센터 화장실과도 가까워 연계방문이 가능하다. 또한 수원화성박물관화장실, 팔달구청 화장실도 거리상으로는 6구간의 동이포루와 봉돈과 가장 가깝지만 구조적으로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 2구간에서의 접근이 가장 용이하다.

일부 화장실은 관광객을 위한 다목적화장실 내 대형쓰레기통과 청소용품을 보관하는 등 관리상태가 불량하지만 아이파크미술관이나 수원화성박물관 화장실은 비교적 최근에 지어져 영유아 편의시설 청결상태가 양호하며, 특히 아이파크미술관은 장애인 화장실을 남·여 각각 조성하여 남녀공용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타 화장실과 다르게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구간에는 화성행궁 수유실, 성신사 수유실이 있으며, 아이파크미술관과 수원화성박물관, 아이러브맘카페 행궁 아해 꿈 누리 지점에 각각 수유실이 마련되어 있다. 관리상태가 미비한 성신사 수유실과 시설 이용객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한 아이러브맘카페 수유실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유실은 관리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영유아의 기본 욕구 해결이 가능하다.

다만 현장 방문 결과 화성행궁 수유실은 3m 이내에 흡연부스가 있고 흡연자들이 부스 내·외부에서 담배를 피기 때문에 영유아가 담배연기에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림 3-23〉 2구간(화성행궁 ~ 서장대) 무장에 관광환경 현황



〈화성행궁 ~ 서장대 우회도로 : 관광역자 이용 가능〉



〈성신사 ~ 서장대 계단 : 관광역자 이용에 한계〉



〈행궁광장 : 넓은공간+편의시설+체험 프로그램〉



〈행궁광장 : 일부 바닥재가 고르지 않아 이동 불편〉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화장실 : 장애인화장실 남녀 구분〉〈수원화성박물관 화장실 : 영유아용 편의시설 청결상태 양호〉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수유실 : 관리상태 양호〉



〈성신사 부근 수유실 : 관리상태 불량〉

3) 3구간(서장대 ~ 화서문)

3구간은 팔달산 정상에 위치한 서장대에서 평지에 위치한 화서문 방향으로 이어지는 내리막길 구간으로 급경사의 계단이 일부 설치되어 있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이용할 경우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 다만 화서문 주변에 설치된 우회도로를 이용할 경우 평탄한 구간에 한해 유모차나 휠체어로 접근이 가능하다.

관광약자가 3구간 전체를 탐방하는 것은 물리적인 한계가 있지만 화서문의 남서쪽에 야생화와 거중기 모형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야생화산책로가 조성되어 있고 화서문을 통과하면 약 9,000평 규모의 화서공원이 있어 영유아 동반가족이나 장애인 등의 연계 방문이 가능하다.

화서공원의 대부분 완만한 평탄면으로 역새밭, 유실수원, 소나무밭 등 조경 시설과 휴식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수원화성의 견기 좋은 명소이자 사진 찍기 좋은 곳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으며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이용이 많은 곳이다.

3구간에는 화서문화장실과 화서사랑채화장실이 있는데, 화서문화장실은 일반화장실 내의 1개의 칸을 관광약자를 위한 다목적화장실로 조성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장애인화장실이나 다목적화장실의 출입문이 자동문 또는 미닫이로 되어 있는 것에 반해 출입문이 여닫이로 되어 있어 사용자의 불편이 예상된다.

다목적화장실 내 좌변기 양쪽으로 손잡이를 설치했지만 세면대에는 별도 안전시설이 없고, 공간도 협소하여 휠체어 이용자는 실제 이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영유아 관련 편의시설의 경우 기저귀교환대가 있지만 유아용 변기나 거치대, 유아용 세면대 등이 없어 관광약자의 이용이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화서사랑채화장실은 화서사랑채 이용자를 위해 건설한 곳이기 때문에 다른 화장실과 달리 관광객의 이용 빈도가 낮고 규모도 비교적 작다. 화장실 내에 영유아를 위한 기저귀교환대나 영유아용 변기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장애인용 화장실은 별도로 조성되어 있고 출입문 앞에 경사도를 조성하여 휠체어 이용자 등의 지체장애인이나 고령자가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24〉 3구간(서장대 ~ 화서문) 무장에 관광환경 현황



〈화서문 인근 : 관광약자가 이용 가능한 우회도로 마련〉



〈서장대 ~ 화서문 : 돌과 계단으로 되어 있어 위험〉



〈야생화 산책로 : 화서문 인근 야생화산책로에 꽃과 축성모형이 조성되어 있어 볼거리로 활용 가능〉



〈화서문 화장실 : 관광약자를 위한 다목적 화장실의 출입문이 여단으로 되어있고 공간이 협소하여 이용 불편〉



〈화서사랑채 화장실 : 장애인용화장실 별도 설치〉



〈화서사랑채 화장실 : 영유아 편의시설 미비〉

4) 4구간(화서문 ~ 장안문)

4구간은 1~3구간과 달리 대부분 평탄면으로 되어 있고 장안문 옆으로 우회도로가 있어 보행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이나 고령자, 영유아 등의 접근이 가능하다. 하지만 수동휠체어나 전동휠체어 등이 이동하기에 우회도로와 성곽길의 폭이 좁고 안전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전문제 방지를 위해 방문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장안문 누각 아래쪽의 바닥재가 돌로 되어 있고 포장재간에 틈이 있어 휠체어나 유모차 이동 시 바퀴가 빠지거나 강한 진동이 느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장조사 당시에 보호자가 유모차를 미는 방식으로는 이동이 원활하지 않아 앞에서 당겨서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4구간 일대에 관광약자가 참여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이나 기타 콘텐츠는 부족하지만 생태 교통마을, 행궁동 카페거리, 장안공원과 같이 연계방문이 가능한 자원이 다수 위치하고 있어 수원화성 방문 전후로 식사를 하거나 공원을 산책할 수 있다.

장안공원은 화서공원과 유사하게 평탄면으로 되어 있어 관광약자의 이동이 수월하지만 행궁동 카페거리 내 상업시설은 관광약자를 위해 턱을 제거하거나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관광약자 중에서도 휠체어를 이용하는 등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시설 이용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 카페는 노키즈존(No Kids Zone) 정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영유아 동반가족의 이용도 제한되어 있다.

4구간 주변에는 장안문화장실과 장안공원화장실이 있는데, 수원화성 일대 대부분의 화장실에 장애인과 고령자 등을 위해 다목적화장실이나 장애인 전용칸을 따로 마련한 것과 달리 장안문화장실은 관련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관광약자 이용이 불편한 실정이다. 영유아를 위한 기저귀교환대는 별도의 칸에 설치되어 있지만 아이를 고정할 안전장치가 파손되어 있고 청결상태가 불량하여 사용이 어렵다.

장안공원화장실은 장안문화장실과 달리 관광약자를 위한 다목적 화장실을 별도로 마련했으며, 안전을 위해 좌변기 양옆에 손잡이를 설치하였다. 하지만 휴지걸이의 위치가 좌변기와 떨어져 있어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이용하기 불편하고 거울도 휠체어 이용자의 눈높이보다 위에 설치되어 있어 확인이 어렵다.

영유아용 거치대는 다목적화장실과 일반화장실에 각각 1개씩 설치되어 있지만 청결상태가 불량하여 실제 아이를 앉히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며, 영유아용 변기나 세면대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성인용을 사용해야 한다.

〈그림 3-25〉 4구간(화서문 ~ 장안문) 무장애 관광환경 현황



〈장안문 인근 : 우회도로를 마련하여 관광약자의 이용 도모〉〈장안문 인근 : 바닥재의 일부가 돌로 되어있어 이동 불편〉



〈장안공원 : 평탄면이 많아 관광약자 이동 편리〉

〈행궁동 카페 : 노키즈존 안내문〉



〈장안문 화장실 : 관광약자를 위한 다목적화장실 미설치〉

〈장안문 화장실 : 기저귀교환대 안전장치 파손〉



〈장안공원 화장실 : 영유아용 편의시설 청결상태 불량〉

〈장안공원 화장실 : 다목적화장실 좌변기와 떨어져있는 휴지걸이〉

5) 5구간(장안문 ~ 창룡문)

장안문과 창룡문을 연결하는 5구간은 대부분 완만한 경사로 되어 있어 고령자나 영유아 동반가족의 이용이 비교적 수월하며, 동반자가 있을 경우 지체장애인의 이용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안전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안전문제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연무대 대표소에서 연무대를 지나 동북공심돈을 지나가는 길은 경사가 완만하여 유모차를 이용하는 가족단위 관광객이나 고령자 단체 관광객 등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다만 연무대 출입구에 높은 턱이 있기 때문에 유모차나 휠체어 이용 시에는 직접 들어서 이동해야 한다.

연무대와 창룡문 일대는 길이 완만할 뿐 아니라 넓은 잔디밭이 조성되어 있어 영유아 동반 가족 또는 고령자 등이 장시간 머물면서 놀이와 휴식을 즐길 수 있으며, 국궁체험, 플라잉수원 등의 체험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매점, 카페, 화장실, 수유실 등 편의시설도 다수 마련되어 있어 관광약자가 비교적 편리하게 수원화성을 탐방할 수 있다. 다만 카페는 2층에 위치하고 있고 계단으로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이거나 기타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관광약자는 이용에 한계가 있다.

5구간에는 4개의 화장실과 1개의 수유실이 있는데 이 중 연무대 화장 실은 유아용 변기와 거치대, 기저귀갈이와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고 청결상태가 양호하여 관광약자의 이용이 가능하며, 별도의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잦은 휴식을 필요로 하는 관광약자가 편리하게 화장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개장한 연무동 공영주차장 화장실은 청결상태가 우수하고 수원화성의 장애인 화장실이 대부분 남녀공용으로 되어있는 것과 달리 남녀 장애인 화장실을 각각 설치했으며, 장애인화장실과 별도로 가족화장실도 마련하여 장애인, 영유아가 독립된 공간에서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가족화장실 내에 영유아를 위한 세면대만 설치되어있고, 기저귀교환대와 영유아용 변기는 없어 반쪽짜리 가족 화장실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으며, 일반 화장실에는 온수가 나오지만 자동센서가 달린 가족 화장실에서는 온수 사용이 불가능하다.

화홍문 인근에 위치한 달맞이 화장실과 창룡문 뒤편의 창룡문 외성 화장실은 영유아 및 장애인을 위한 편의·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만 기저귀교환대의 청결상태가 불량하고 주 출입문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문을 열 때마다 외부에 아기가 노출될 확률이 높고 겨울에는 찬바람이 유입돼 낮은 온도에 취약한 영유아가 이용하기에 부적절한 상황이다.

연무대 공영주차장 입구 쪽에 수유실이 설치되어 있고 내부 환경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현장 확인 결과 운전자들의 흡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금연구역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요구되는 바이다.

〈그림 3-26〉 5구간(장안문 ~ 창룡문) 무장에 관광환경 현황



〈연무대 인근 : 완만한 경사도로 관광약자 접근용이〉



〈창룡문 인근 : 잔디밭이 조성되어 있어 나들이장소로 애용〉



〈연무대 2층 카페 : 계단만 있어 관광약자 이용 제한〉



〈연무대 수유실 : 내부 관리상태 양호〉



〈연무동 공영주차장 화장실 : 남녀 장애인화장실 각각 설치〉



〈연무동 공영주차장 화장실 : 온수사용이 불가한 가족화장실〉



〈달맞이 화장실 : 영유아용 편의시설 관리 불량〉



〈창룡문 외성 화장실 : 영유아용 변기 고장〉

6) 6구간(창룡문 ~ 남수문)

수원화성은 복원이 되지 않은 팔달문 주변을 제외하고 성곽을 따라 도보이동이 가능하지만 구간에 따라 경사가 가파르거나 바닥재가 흙이나 돌로 되어 있어 관광약자의 이용이 부분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반면에 6구간의 대부분은 바닥 포장상태가 우수하기 때문에 휠체어나 유모차로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부 구간은 도로폭이 다소 좁기 때문에 이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6구간은 창룡문이나 남수문을 이용해 진입이 가능한데 남수문은 가파른 계단으로 되어 있어 관광약자 진입이 어렵지만 창룡문에는 우회도로가 마련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면 성곽 위로의 이동이 가능하다. 창룡문과 남수문 외에도 성곽길 중간 중간에 진입도로가 마련되어 있지만 대부분 계단으로 되어 있고 6구간의 끝부분인 봉돈 주변에 성곽 아래와 위를 연결하는 완만한 경사면의 우회도로가 있다.

창룡문 ~ 남수문 구간은 주택가와 인접하기 때문에 산책·운동 목적의 지역주민 방문이 많고, 이들을 위해서 운동기구, 놀이터, 배드민턴장 등이 조성되어 있다. 또한 벤치가 다수 조성되어 있어 체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관광약자가 경관 감상 중에 휴식을 취할 수 있다.

6구간에는 있는 봉화대 화장실에는 관광약자를 위한 다목적화장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영유아를 위한 기저귀교환대, 유아용 거치대, 유아용 세면대가 마련되어 있다. 다목적 화장실 출입문은 자동문으로 되어 있으며 좌변기와 세면대에 안전손잡이가 각각 설치되어 있어 관광약자의 편리한 이용을 도모했다. 하지만 휴지걸이와 수거함의 설치위치가 휠체어 이용자에게 부적합하여 실제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유아용 거치대는 여성화장실 내에 모든 칸에 설치되어 있지만 일부 시설은 안전 고리가 없어서 실제로 아이를 앉히는 것은 불가능했고 청결상태도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저귀 교환대 또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위생에 민감한 영유아가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실정이다.

〈그림 3-27〉 6구간(창룡문 ~ 남수문) 무장에 관광환경 현황



〈남수문 인근 : 남수문에서 동남각루까지 지나는 길은 급경사의 돌계단이 연속되기 때문에 관광약자 이용이 불편〉



〈동일치 부근 : 접근로가 계단으로 되어있어 이용 불편〉 〈봉돈 인근 : 접근로가 경사면으로 되어 있어 접근용이〉



〈창룡문 ~ 남수문 일대 : 도로포장상태가 양호하고 경사도가 거의 없어 관광약자 도보이동이 용이〉



〈봉화대 화장실 : 영유아용 거치대 안전장치 파손〉

〈봉화대 화장실 : 영유아용 거치대 안전장치 파손〉

(2) 현장평가 결과

화서문~연무대 구간을 대상으로 한 현장평가 결과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가 2cm 이상으로 휠체어나 유모차가 지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며, 주출입구를 대신할 경사로가 각 문의 주변에 설치되어 있지만 경사도가 높아 동반자의 도움 없이는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경사도로 인해 활용에는 한계가 있지만 지체장애인이거나 영유아가 사용가능한 우회도로는 마련이 된 반면 주출입구 주변에 시각장애인이거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나 음성안내 시스템은 구비가 되어있질 않아 개인이 직접 찾거나 주변의 도움 없이는 관련 정보나 안내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표 3-16〉 수원화성 주출입구 평가

번호	분류	내용
1-1	주출입구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는 2cm이하인가?
1-2		주출입구의 높이차이가 2cm이상일 때 경사로, 엘리베이터, 휠체어 리프트 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1-3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다면, 기울기는 1/12(5도) 이하인가?
1-4		주출입구 전면 30cm에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는가?
1-5		주출입구,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가?

화서문~연무대 구간에는 4개의 관광안내소가 있으며 화서문 관광안내소 외에 장안문, 화홍문, 연무대 안내소는 매표소 역할도 하기 때문에 ‘관광안내소’ 및 ‘매표소’ 평가항목을 동시에 적용하여 현황을 점검했다.

연무대·장안문 관광안내소는 안내원이 실내에 있고 방문객은 실외에서 창구를 통해 매표를 하고 안내를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연무대는 창구의 높이가 낮아 휠체어 이용자와의 소통이 비교적 수월하지만 장안문의 경우 창구의 크기가 작을 뿐 아니라 건물이 디딤돌 위에 지어져 있어 휠체어 이용자의 눈높이에 비해 창구의 위치가 높다.

화홍문·화서문 안내소는 방문객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안내원을 만날 수 있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안내원과의 대화가 연무대·장안문에 비해 수월하지만 출입문이 여닫이로 되어있어 유모차를 이용하거나 보행에 제약이 있을 경우 접근이 불편한 실정이다.

특히 화서문안내소는 신발을 벗고 입장해야하며 입구에 디딤돌이 놓여 있어 휠체어 이용자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입장이 어렵다. 장애인이 안내소에 들어가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내원이 외부에 나와 도움을 주는 등의 절충안 적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 밖에 관광안내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장애인관광정보 제공 여부,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전화기 설치여부, 수화사용 안내원 근무여부, 수화통역센터 연계여부 등에서 모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매표소’로서 요금정보가 건물 외벽에 부착되어 있어 요금정보 파악이 용이했다.

〈표 3-17〉 수원화성 관광안내소·매표소 평가

번호	분류	내용
2-1	관광안내소	관광안내소에 높이차이가 없어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가?
2-2		관광지의 장애인관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가?(또는 안내원이 알고 있는가?)
2-3		관광안내소 또는 관광지 주요 시설에 화상전화기가 1대 이상 설치되어 있는가?
2-4		안내원 또는 직원 가운데 1명 이상이 수화를 사용할 줄 알거나, 지역의 수화통역센터와 연계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3-1	매표소	매표소에 높이차이가 없어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가?
3-2		매표소 안내창구 높이가 70~90cm인가?
3-3		요금정보가 읽기 쉽게 부착되어 있는가?

고령자나 장애인들이 이동 시에 필요한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등 보조기구 대여 가능 여부를 확인한 결과 화서문~연무대 구간에서는 모두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행궁이나 수원화성박물관같이 일부 폐쇄형 공간에서는 대여가 가능하지만 실외형 공간인 수원화성에서는 휠체어나 유모차와 같이 관광약자를 위한 보조기구 대여제도가 실시되고 있지 않다.

〈표 3-18〉 수원화성 비치용품 평가

번호	분류	내용
4-1	비치용품	입구에서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을 대여해주는가?

‘입식 관광 안내지도’는 장안문, 연무대 등에 설치되어 있는데 지도의 크기나 높이가 휠체어 이용자들도 확인하기에 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안내지도상에 장애인용화장실이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코스 등 관광약자 관련 정보가 미흡하며 각종 팸플릿이나 안내서에도 이런 정보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촉지도식 안내판이나 음성안내장치도 구비가 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들의 정보습득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9〉 수원화성 입식관광 안내지도 평가

번호	분류	내용
5-1	입식관광 안내지도	120cm 높이에서 봤을 때 읽기 적절한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가?
5-2		입식 관광안내지도에 장애인용화장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가?
5-3		필요시 (입식)관광안내지도에 휠체어 사용자가 갈 수 있는 코스나 동선이 따로 표시되어 있는가?
5-4		점자촉지도식 안내판 또는 음성안내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화서문~연무대 일대에 화홍문과 연무대 주차장이 각각 조성되어 있으며, 2019년에 연무동 공영 주차장이 새로 개설되어 총 3개소의 주차장이 있다. 각 주차장에는 규격에 맞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마련되어 있어 장애인들의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화홍문 주차장은 수원화성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차 후에 화홍문 또는 장안문 쪽으로 일정거리를 이동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고 연무대 주차장은 자원과의 거리가 비교적 가깝지만 이동하는 길에 돌로 된 계단이 있어 휠체어 이용자는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연무동 주차장은 동암문과 가깝지만 연결도로가 계단으로 되어 있어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화홍문 주차장의 경우와 동일하게 화홍문까지 이동해야 성곽으로의 접근이 가능하다.

연무대에는 국궁체험장 옆으로 간이주차장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 자원과의 거리가 가까워 연무대나 창룡문 쪽으로 이동하기가 비교적 수월하다. 현장조사 중에 연무대 공영 주차장 대신 해당 간이 주차장을 사용하는 지체장애인들을 실제로 목격할 수 있었다.

〈표 3-20〉 수원화성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평가

번호	분류	내용
6-1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일반 주차구역이 있는가?
6-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는가?
6-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가 3.3m×5.0m 이상인가?
6-4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관광지의 주요 이동코스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 있는가?

‘관광지 내 이동 동선’과 관련하여 ‘관광지의 주요 코스의 이동 동선에 턱이나 계단은 없는가?’라는 항목을 확인한 결과 높은 경사도의 계단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화서문이나 장안문 주변에 우회도로가 있지만 계단과 유사하게 경사도가 높아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들은 주변의 도움 없이 수원화성 성곽 위로 이동하기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원화성 성곽 아래의 일반 보행로도 돌로 포장되어 울퉁불퉁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광약자들은 화성 주변을 단순 통행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장안문 관광 안내소 주변과 화홍문 주차장에서 장안문으로 이동하는 길도 돌로 포장되어 있는데 포장재 사이에 틈이 넓기 때문에 휠체어나 유모차 이동 시 탑승자에게 강한 충격이 전해질 우려가 높다.

〈표 3-21〉 수원화성 이동 동선 평가

번호	분류	내용
7-1	관광지 내 이동 동선	관광지의 주요 코스의 이동 동선에 턱이나 계단은 없는가?
7-2		턱이나 계단이 있다면, 경사로나 엘리베이터/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는가?

화서문~연무대 구간의 부대시설 중 하나인 연무대 앞쪽의 매점과 카페는 출입구에 턱이 설치되어 있고 2층을 연결하는 승강기나 우회도로가 없기 때문에 휠체어 이용자를 포함해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 또는 고령자의 접근에 한계가 있다. 장안문 남쪽의 매점도 진입로에 경사로는 있지만 출입문의 폭이 좁아 휠체어가 통과할 수 없다.

장안문 인근에 위치한 한옥기술전시관은 주출입구에 턱이나 계단이 없어 관광약자의 이동이 용이하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시스템이나 키오스크와 같은 정보전달도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대신 전시실 내에 상영 중인 자원안내 동영상에 자막이 함께 제공되어 있어 청각 장애인들의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표 3-22〉 수원화성 부대시설 평가

번호	분류	내용
8-1	부대시설	관광지 내 각종 전시실 및 부대시설(기념품점, 휴게시설 등) 주출입구에 턱이나 계단이 없는가?
8-2		관광지의 각종 전시실 및 부대시설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시스템이 있는가?
8-3		관광지에 키오스크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동영상에 자막이나 수화가 제공되는가?

화서문~연무대 일대에는 6개의 화장실이 있는데 이 중 장안문 화장실은 제외하고 모두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이용 가능한 다목적화장실을 마련하였다. 대부분의 다목적화장실은 관광약자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출입구까지의 높이 차이를 없애고 내부의 유효면적을 확보 하였으며, 자동문을 설치하였다.

하지만 화서문화화장실은 일반 화장실의 한 칸을 다목적화장실로 조성하였기 때문에 공간이 협소할 뿐 아니라 여닫이문으로 되어 있어 휠체어이용자의 이용이 어렵다.

연무동 공영주차장 화장실은 장애인용화장실을 남녀 별도로 설치하고 가족화장실도 조성하여 관광약자의 편의성을 도모하였지만 연무대 화장실, 달맞이 화장실, 장안공원 화장실, 화서사랑채 화장실은 남녀공용으로 1개소만 설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된다.

다목적(장애인용)화장실은 모두 관광약자의 안전을 위해 손잡이를 설치하였지만 청각장애인을 위한 긴급문자번호 안내판이나 화재발생 시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점멸장치,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표지판이나 음성안내시스템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3〉 수원화성 화장실 평가

번호	분류	내용
9-1	화장실	관광지 내 화장실에 장애인용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가?
9-2		장애인용화장실 출입구까지 높이차이가 없는가?
9-3		장애인용화장실은 남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가?
9-4		장애인용화장실 내부 유효면적은 140×180cm 이상, 대변기 전면의 유효면적은 140×140cm 이상인가?
9-5		장애인 화장실 출입문의 종류는 자동문, 바깥여닫이문, 미닫이문, 접이문인가?
9-6		화장실출입구의 폭은 80cm 이상인가?
9-7		대변기 양쪽에는 수평수직손잡이 및 회전식 수평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가?
9-8		일반 및 장애인용화장실 내부에는 긴급통화장치 및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을 위한 긴급문자번호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가?
9-9		일반 및 장애인용화장실 내부에 화재 발생시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점멸장치가 있는가?
9-10		일반화장실 입구에 점자블록과 남자와 여자를 구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 또는 음성안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가?
9-11		일반화장실의 대변기칸 출입문에 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장치(알리미)가 설치되어 있는가?

3. 시사점

4대문과 공심돈, 봉돈 등으로 구성된 수원화성은 지역의 주요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도시를 보호하고 전쟁에 대비한 공격·방어용 시설을 목적으로 축성됐기 때문에 석재를 주재료로 하였으며 가파른 계단이 연속되는 등 관광약자의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창룡문이나 장안문, 화서문 주변으로 성곽 아래와 위를 연결하는 경사면을 추가적으로 만들고 화성행궁 뒤쪽으로 성신사 부근까지 연결되는 우회도로를 조성하여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관광약자들을 배려했지만 도로의 폭이 좁거나 바닥이 흙으로 되어 있고, 안전펜스 등의 장치가 미비하여 관광약자 이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성행궁 주변, 연무대 ~ 창룡문 구간은 행궁광장, 잔디밭이 조성되어 있는 평탄면으로 화장실, 수유실, 매점 등의 편의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주차장과도 가까워 관광약자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편리하지만 팔달문에서 저장대, 저장대에서 화서문, 남수문 구간은 경사가 가파르고 폭이 좁거나 높은 계단으로 되어 있어 일반 성인에 비해 이동에 제약이 많은 장애인, 영유아 등의 접근에 한계가 있다.

화장실의 경우 장안문화장실을 제외하고 모든 화장실에 장애인이나 고령자, 영유아를 위한 다목적화장실이나 장애인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였지만 일부 화장실은 문이 여닫이로 되어 있거나 폭이 좁아 휠체어 이용자의 사용이 어려웠고, 자동센서 수도꼭지를 설치하여 온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화장실 내에 기저귀교환대, 영유아용 변기와 같이 영유아용 편의시설도 대부분 설치되어 있었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청결상태가 불량하거나 안전장치가 파손되어 위생에 민감한 영유아가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반면에 수유실은 화장실에 비해 관리상태가 우수하여 사용에 큰 불편이 없었으나 화성행궁과 연무대 주차장에 설치된 수유실은 흡연자들의 담배 연기에 노출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화서문 ~ 연무대 구간을 대상으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주출입구, 관광안내소, 이동 동선 등에 대해 현장평가를 실시했을 때도 현장조사 결과와 유사하게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대부분 관광약자가 이용하기에 높이가 맞지 않거나 턱이 있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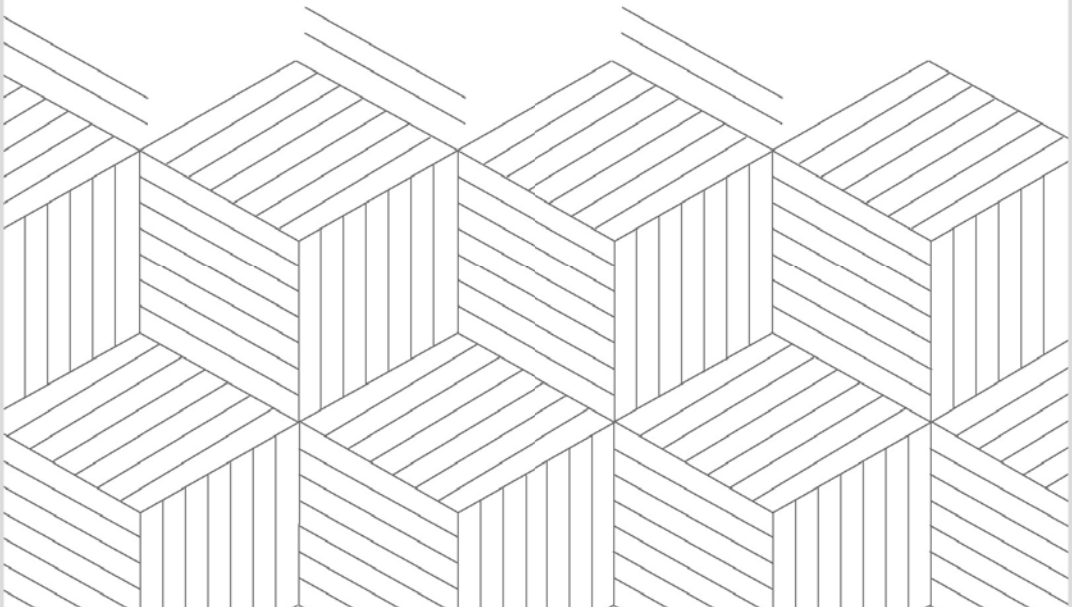
현장조사 및 평가 결과 수원화성은 관광약자가 이용하기에 구조적·물리적 제약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화장실이나 관광안내소 등의 편의시설은 개선이 가능하지만 수원화성이 보전해야 할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경사면이나 계단, 포장재 등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수원화성을 대상으로 수원형 무장애 관광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개선 가능범위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선별적으로 개선안을 적용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제4장

관광약자 관련 조사 및 분석

제1절 관광약자 여가·관광 실태

제2절 관광약자 여가·관광 제약



제4장 관광약자 관련 조사 및 분석

제1절 관광약자 여가·관광 실태

1. 분석 방법

수원시 관광약자의 여가·관광 실태 파악을 위해 <표 4-1>의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대상 2차 자료 중 여가·관광 관련 항목을 선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장애인은 ‘수원시 장애인 복지정책 5개년 기본계획 연구(한연주, 2017)’, 고령자는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추진전략(박용수, 2016)’, 영유아는 ‘모든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위한 수원시 아동친화도 조사(이영안, 2018)’를 대상으로 한다.

한연주(2017)는 수원시가 지향해야 할 장애인 정책의 기본방향과 장애인 정책 제시를 목표로 연구를 추진하면서, 장애인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문항은 장애인들의 ‘교육’, ‘사회활동 및 참여’, ‘건강 및 의료’, ‘권리보장’ 등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했고, 이 중 ‘사회활동 및 참여’의 일환으로 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 문화·여가 활동 시 어려움, 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 지원 내역 등에 대해 문의하였다.

수원시 고령친화도시 인증 추진전략을 수립한 박용수(2016)는 연구 과정에서 수원시 거주 고령자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세부적으로 ‘주거생활’, ‘교육·고통’, ‘보건·복지·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 문의하였다. 여가·관광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항은 없지만 여가·관광의 대상자인 공원이나 산책로와 관련하여 해당 시설이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공원, 박물관 등 공공편의시설 중 확대를 희망하는 시설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조사했다.

이영안(2018)은 수원시의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해 ‘놀이와 여가’, ‘안전과 보호’, ‘건강과 위생’ 등 7개 영역에서의 충족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놀이와 여가’ 항목에는 지역 내 아동이 놀 수 있는 장소, 자연환경 등의 조성 여부, 문화이벤트, 축제 등에 참여 또는 구경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문의하였다.

〈표 4-1〉 수원시 관광약자 연구

연구	연구자	연구대상	주요 항목
수원시 장애인 복지정책 5개년 기본계획 연구(2017)	한연주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주된, 향후 희망) 문화·여가 활동 • 문화·여가 활동 시 주된 어려움 • 향후 문화·여가 활동을 위한 지원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추진전략(2016)	박용수	고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친화시설 인식 비교 • 수원시에 필요하거나 늘려야 하는 공공편의시설
모든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위한 수원시 아동친화도 조사(2018)	이영안	영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와 여가

2. 장애인 여가·관광 현황

1) 분석 개요

수원시에서는 ‘수원시 장애인복지정책 5개년 기본계획 연구’의 일환으로 지역 내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문화·여가 활동 시 주된 어려움, 향후 문화·여가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등의 항목을 분석하여 수원시 장애인의 여가·관광 현황을 파악하였다.

〈표 4-2〉 장애인 여가·관광 현황 분석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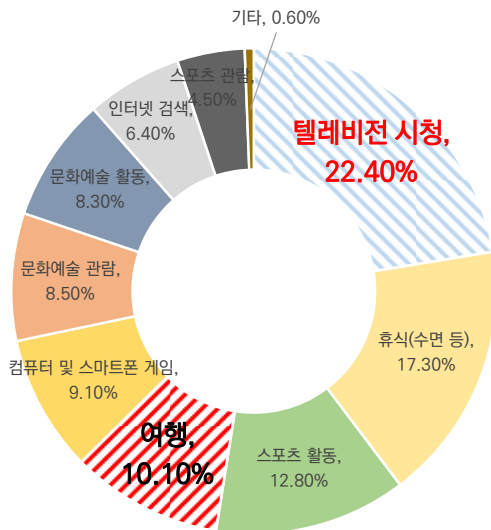
구분	주요 내용	
조사대상	수원시 등록 장애인	
유효표본	700명	
분석방법	수원시 거주 장애인의 현재 및 향후 희망 여가활동 및 제약, 지원 관련 문항을 통한 여가패턴 분석	
분석항목	구분	세부 항목
	(현재 주된, 향후 희망) 문화·여가 활동	텔레비전 시청, 여행, 문화예술 관람, 문화예술 활동, 컴퓨터 및 스마트폰 게임, 인터넷 검색,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휴식(수면 등), 기타
	문화·여가 활동 시 주된 어려움	어려움 없음, 여가시설 및 편의시설 부족, 경제적 부담, 도우미(봉사자) 부족, 주변사람들의 편견, 이용방법 설명 부족, 체력 부족
	향후 문화·여가 활동을 위한 지원	문화여가시설 확대, 문화여가프로그램 확대, 참여 권리에 대한 인식개선, 읽기 쉬운 설명서 비치, 나들이 교통수단 지원, 도우미(봉사자) 지원, 기타

자료 : 수원시(2017)

2)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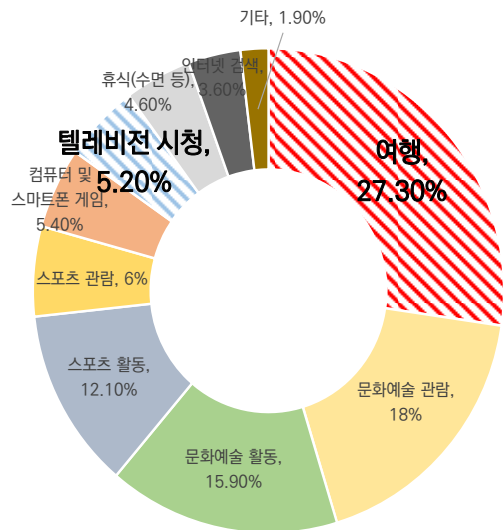
수원시 장애인을 대상으로 현재 주로 참여하는 문화·여가활동을 문의한 결과 ‘텔레비전 시청’이 22.4%로 가장 높았으며, ‘여행’을 선택한 경우는 10.1%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향후 참여를 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문의에는 ‘여행’을 선택한 경우가 27.3%로 가장 높았으며, ‘텔레비전 시청’은 5.2%로 낮은 비율을 보여 문화·여가활동에 있어 장애인의 희망사항과 현실 간에 괴리가 있음을 확인했다.

〈그림 4-1〉 현재의 문화·여가활동(장애인)



자료: 수원시(2017)

〈그림 4-2〉향후 희망 문화·여가활동(장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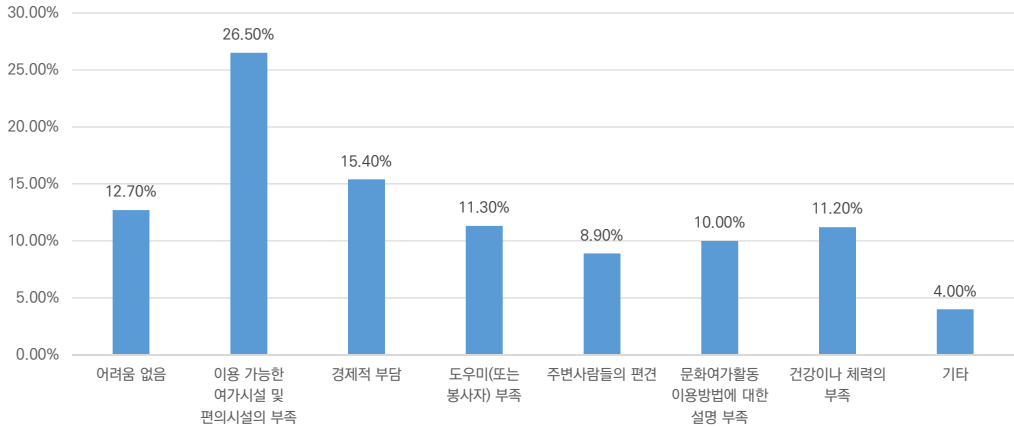
자료: 수원시(2017)

문화·여가 활동 시 경험하는 주된 어려움에 대한 항목에는 ‘이용 가능한 여가시설 및 편의 시설의 부족’을 선택한 경우가 26.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경제적 부담’(15.4%)을 선택해 여가제약요인 중 구조적 제약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 여가제약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장애인들이 ‘구조적 제약’을 가장 크게 느낀다는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여가시설이나 교통, 비용 등과 관련된 구조적 제약은 개인이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의 관광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구조적 제약 외에도 ‘도우미(봉사자) 부족’(11.3%), ‘주변 사람들의 편견’(8.9%)과 같은 대인적 제약 역시 인지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내재적 제약인 ‘건강이나 체력의 부족’으로 인해 여가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11.2%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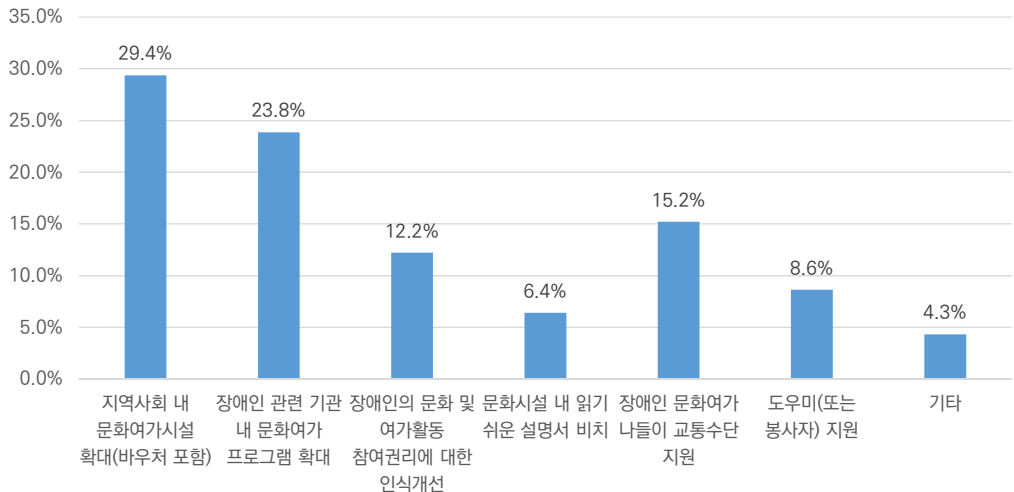
〈그림 4-3〉 문화·여가 활동 시 주된 어려움(장애인)



향후 문화·여가 활동 시 필요한 지원내용으로는 ‘지역사회 내 문화여가시설 확대(바우처 포함)’(29.4%), ‘장애인 관련 기관 내 문화여가 프로그램 확대’(23.8%), ‘장애인 문화여가자들이 교통수단 지원’(15.2%)과 같이 구조적 제약과 관련한 항목들을 주로 선택했다. 이는 장애인이 여가활동 시 경험하는 주요 어려움 중 구조적 제약을 가장 높게 느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여가활동 참여 권리에 대한 인식개선’(12.2%), ‘도우미 지원’(8.6%) 등 대인적 제약과 관련한 지원은 구조적 제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택 비율이 낮지만 장애정도에 따라 도우미나 봉사자가 없다면 여가·관광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조적 제약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대인적 제약에 지원도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그림 4-4〉 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 지원내용(장애인)



3. 고령자 여가·관광 현황

1) 분석 개요

수원시에서는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추진전략’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수원시 거주 19세 이상 시민과 고령자(1955년~1963년생 기준)를 대상으로 고령친화시설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고 고령자가 필요로 하는 공공편의시설에 대해 조사했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항목을 재분석하여 고령자 측면에서의 수원시 여가·관광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표 4-3〉 고령자 여가·관광 현황 분석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조사대상	수원시 거주 19세 이상 시민 및 고령자 - 고령자는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를 기준으로 함 (65세 이상 : 고령자, 52~64세 잠재적 고령인구)	
유효표본	500명	
분석방법	수원시민 및 고령자의 고령친화시설 인식 비교 및 고령자 필요 공공편의시설 조사 분석	
분석항목	구분	세부 항목
	고령친화시설 인식 비교	- 집 주변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다 - 가까운 곳에 고령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이나 체육시설이 있다
	수원시에 필요하거나 늘려야 하는 공공편의시설	- 어린이 놀이터 / 공원·유원지 / 보건의료시설 / 사회복지시설/ 주차시설 / 문화예술시설 / 도서관 / 박물관 / 체육시설 및 경기장 / 자전거도로 및 거처대

자료 : 수원시(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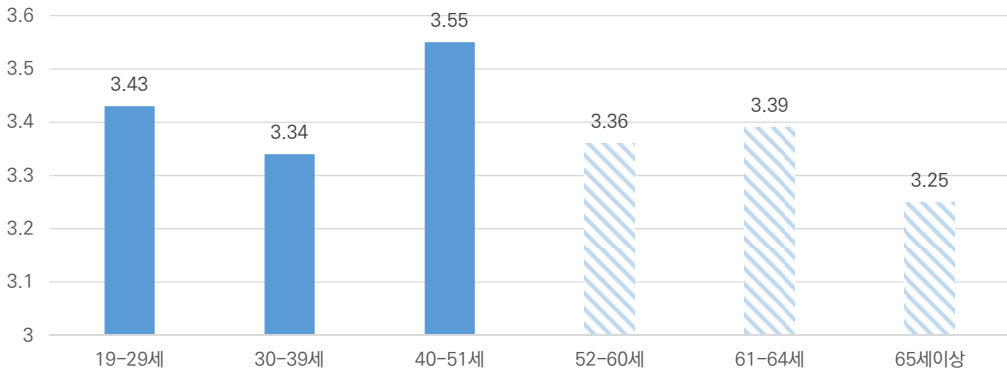
2) 분석 결과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집 주변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나 산책로 있는지’를 문의한 결과 전체 평균 3.39점(5점 만점)으로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51세가 3.55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했으며, 19~20세 3.43점, 61~64세 3.39점 순으로 나타났다.

52세 이상의 고령자와 그 이하의 연령대를 상호 비교했을 때에 고령자(3.33점)가 52세 미만(3.46점)에 비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3.25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하여 고령자들이 상대적으로 ‘공원이나 산책로’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령자가 주로 거주하는 지역에 공원이나 산책로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동일한 시설이 있어도 고령자가 52세 미만 시민에 비해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됐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림 4-5〉 집 주변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나 산책로 보유 여부(수원시민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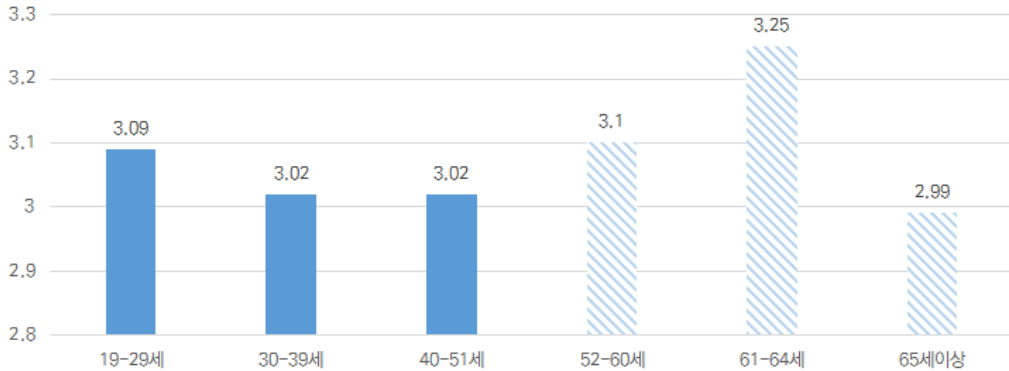
시설의 실 사용자를 ‘고령자’로 특정하여 ‘가까운 곳에 고령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 시설이나 체육시설이 있는지’를 문의했을 때에는 앞선 질문 결과와 반대로 52세 미만 시민들 평균 3.03점으로 평가하여 고령자(3.11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52세 미만 시민들은 가까운 곳에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나 산책로는 비교적 충분하지만 해당 시설들이 고령자가 이용하기에는 난이도나 안전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고령자는 52세 미만 시민에 비해 본인의 연령층이 사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이나 체육시설 유무여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3.11점)를 했지만 ‘집 주변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보다 높은 3.33점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집 주변의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긴 하지만 고령자 스스로 본인에게 적합한 여가환경은 아니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예상가능하다.

또한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고령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이나 체육시설 보유 여부에 대해 가장 낮은 2.99점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신체적 제약이 커질수록 현재 수원시 여가·체육시설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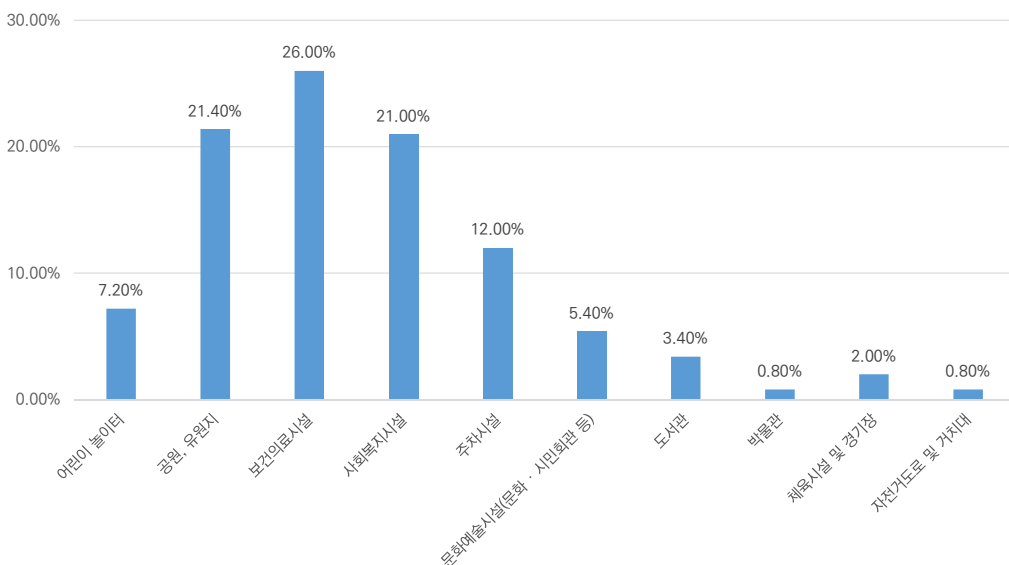
〈그림 4-6〉 가까운 곳에 고령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이나 체육시설 보유 여부(수원시민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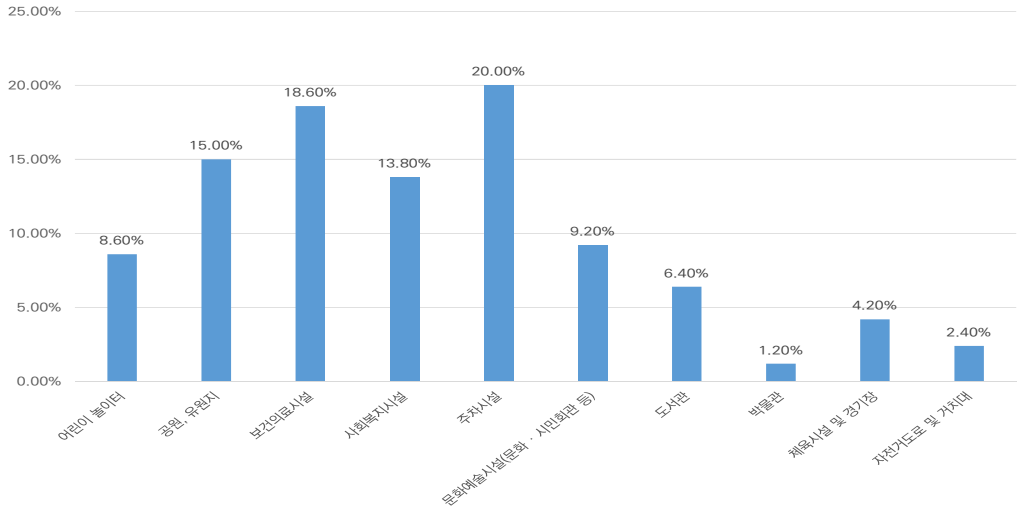
‘수원시에 필요하거나 늘려야 하는 공공편의시설이 무엇인지’에 대해 문의한 결과 고령자들은 ‘보건의료시설’(21.0%), ‘공원·유원지’(21.4%), ‘사회복지시설’(21.0%)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2세 미만 시민은 ‘주차시설’(20.0%), ‘보건의료시설’(18.6%), ‘공원·유원지’(15.0%)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에 상관없이 ‘보건의료시설’과 ‘공원·유원지’에 대한 선호도는 모두 높지만 특히 고령자가 52세 미만에 비해 공원·유원지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차시설’의 경우 52세 미만이 필요로 하는 공공편의시설 중 1위(20.0%)로 선택했지만 고령자는 4순위(12.0%)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7〉 수원시에 필요하거나 늘려야 하는 공공편의시설(고령자)



〈그림 4-8〉 수원시에 필요하거나 늘려야 하는 공공편의시설(52세 미만)



4. 영유아 여가·관광 현황

1) 분석 개요

수원시는 국내에서 13번째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았으며, 관련 사업의 일환으로 아동친화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조사 내용 중 놀이와 여가에 대한 항목을 활용하여 수원시 영유아의 여가·관광 환경을 파악하고자 했다.

설문의 응답자는 초등학생, 중학생, 미취학 아동 부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영유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만을 확인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는 영유아 기준(6세 미만)을 참고하여 미취학 아동 부모의 응답(300부)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4〉 영유아 여가·관광 현황 분석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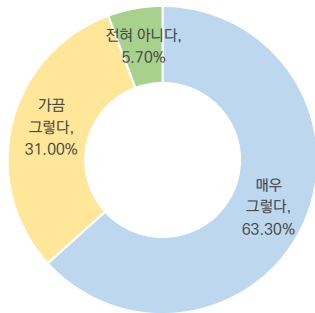
구분	주요 내용	
조사대상	미취학 아동 부모	
유효표본	300명	
분석방법	아동친화도 조사 대상자 중 미취학 아동 부모 샘플(300명)만 재분류하여 여가환경 실태 분석	
분석항목	구분	세부 항목
	놀이와 여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에는 아동이 운동하고 놀 수 있는 장소가 있다. - 지역 내에 숲과 나무 등의 자연환경이 잘 가꿔져 있다. - 아동은 다양한 종교와 문화이벤트 또는 축제 등에 참여하거나 구경할 수 있다.

자료 : 수원시(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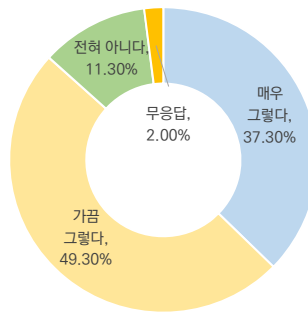
2) 분석 결과

수원시 영유아의 놀이 및 여가환경에 대해 확인하고자 미취학 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놀 공간과 자연환경 조성여부, 이벤트 참여 가능여부를 문의한 결과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긍정 응답이 모두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수원시 내에 영유아가 뛰어놀 수 있는 활동공간 및 자연환경이 비교적 우수하고 영유아 수준에 맞는 이벤트·축제 등이 다채롭게 개최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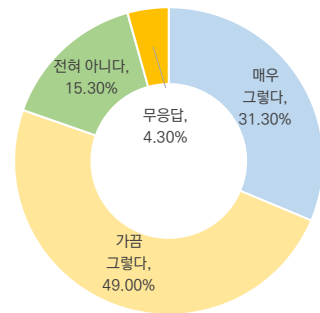
〈그림 4-9〉 지역 내에 운동하고
놀 수 있는 장소가 있다.



〈그림 4-10〉 지역 내에
자연환경이 잘 가꿔져 있다.



〈그림 4-11〉 다양한 문화이벤트,
축제 등에 참여/구경할 수 있다.



수원시 영유아 동반가족이 자주 찾는 여가·관광지는 수원화성(화성행궁), 광고호수공원, KT위즈파크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여가·관광지에 대한 만족도를 볼거리, 관광 정보, 먹거리, 교통 접근성 등 8개 영역에서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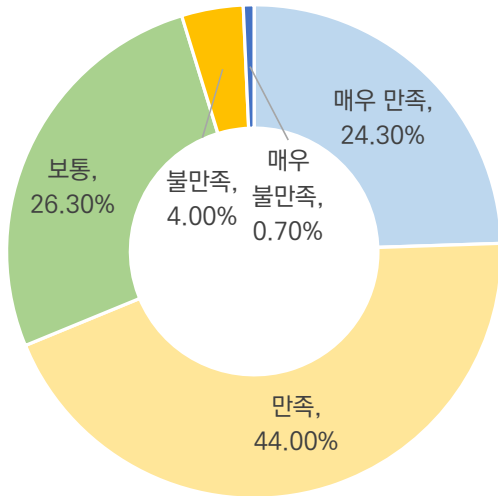
그 결과 ‘볼거리’, ‘즐길거리’, ‘할거리’와 같이 콘텐츠와 관련한 항목은 ‘만족’, ‘매우 만족’의 긍정 평가가 50% 내외를 차지하지만 ‘먹거리’, ‘살거리’는 긍정 평가가 30% 내외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자연경관, 전시/문화, 스포츠 관람 등 볼거리’에 대해서는 ‘만족’ 이상의 응답이 68.3%로 다른 항목에 비해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축제, 이벤트, 공연 등 즐길거리’에 대해서도 ‘만족’, ‘매우 만족’이 57.0%로 나타나 볼거리와 함께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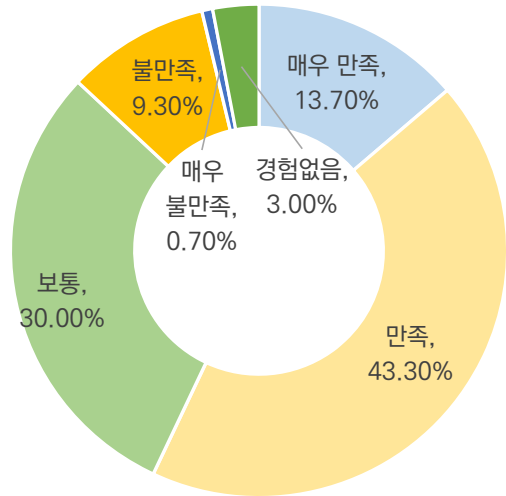
반면에 ‘각종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할거리’에 대해서는 ‘만족’ 이상이 44.3%로 ‘볼거리’나 ‘즐길거리’에 비해 낮아 개인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할거리’가 다소 수동적인 감상 위주의 ‘볼거리’나 ‘즐길거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추정된다.

관광정보 및 안내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매우 만족’이 48.7%로 나타났는데, ‘보통’을 선택한 경우도 38.7%로 다른 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응답자들이 이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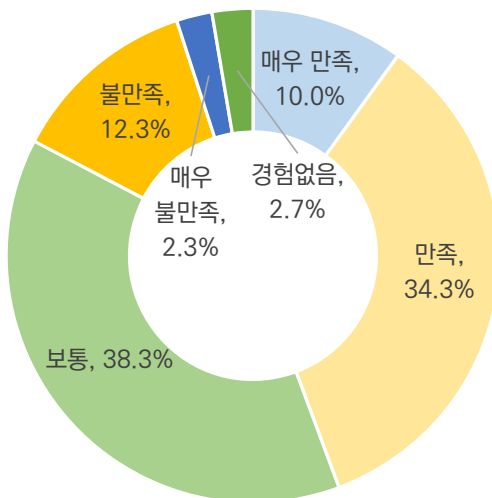
〈그림 4-12〉 여가·관광지 만족도(볼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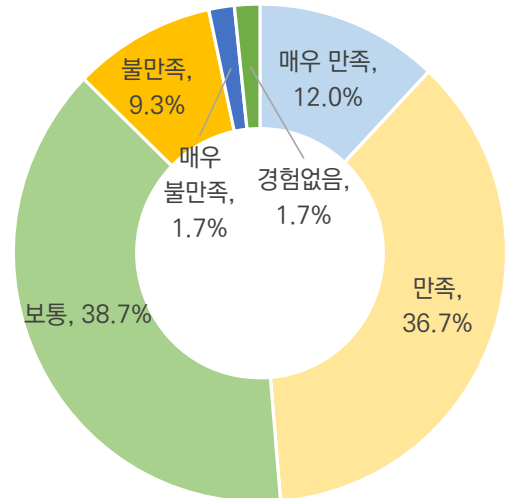
〈그림 4-13〉 여가·관광지 만족도(즐길거리)



〈그림 4-14〉 여가·관광지 만족도(할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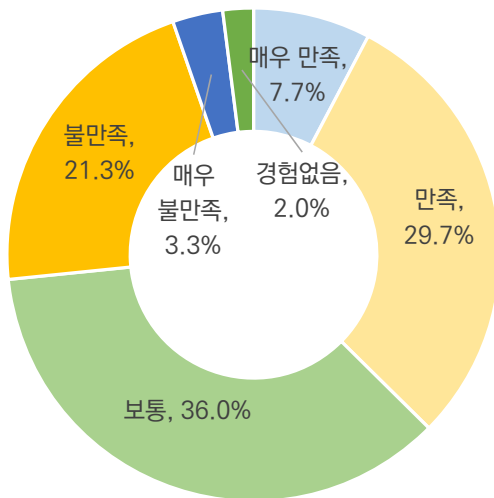
〈그림 4-15〉 여가·관광지 만족도(관광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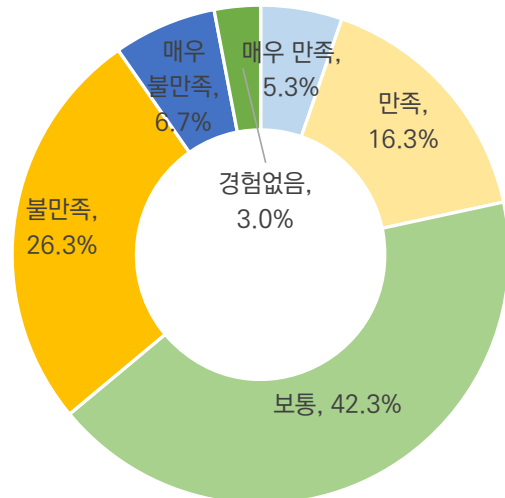
‘다양한 먹거리와 서비스’ 및 ‘기념품, 특산품 등 살거리’의 경우 ‘불만족’, ‘매우 불만족’을 선택한 경우가 다른 항목에 비해 가장 높았고, 특히 ‘살거리’는 ‘불만족’ (26.3%), ‘매우 불만족’ (6.7%)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 항목 중에 가장 높았다.

‘먹거리’에 대해 ‘매우 만족’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7.7%로 ‘살거리’(5.3%)에 비해 높지만 ‘불거리’(24.3%), ‘즐길거리’(13.7%) 과 비교하면 최하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유아 동반 가족 측면에서 ‘먹거리’와 ‘살거리’의 개선이 요구되는 바이다.

〈그림 4-16〉 여가·관광지 만족도(먹거리)



〈그림 4-17〉 여가·관광지 만족도(살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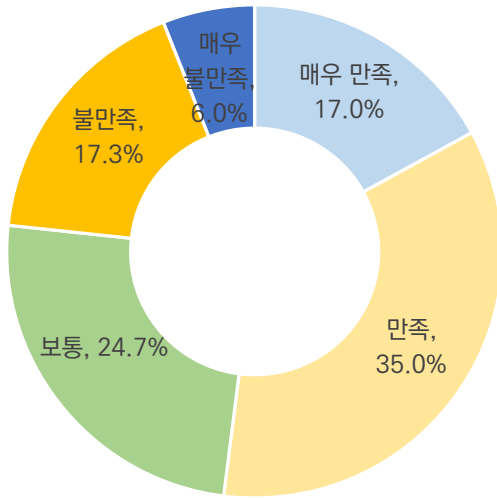
‘주차, 대중교통 이용 편리 등 교통 접근성’에 대해서는 ‘만족’ 이상의 응답이 52.0%로 다른 항목과 비교해도 긍정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불만족’ 하다고 평가한 경우가 23.3%로 ‘살거리’, ‘먹거리’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매우 불만족’ 하다고 평가한 경우가 6.7%로 ‘살거리’ 다음으로 ‘매우 불만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을 선택한 경우는 24.7%로 모든 항목 중에서 가장 낮아 ‘교통 접근성’에 대한 평가가 개인에 따라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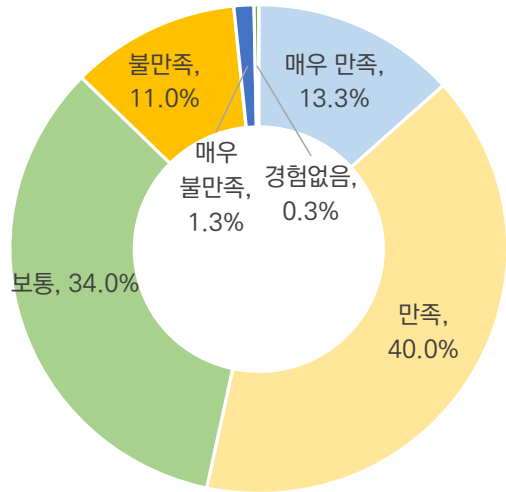
수원화성의 무장에 관광환경 조사 결과 화장실 내 영유아 편의시설의 청결 및 관리상태가 대부분 불량하고 휴식시설도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화장실, 휴식공간과 같은 편의 시설’에 대해서 ‘만족’, ‘매우 만족’을 선택한 경우가 53.3%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으나 영유아를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개인의 기대치가 높지 않거나 수원시 영유아 동반가족이 자주 찾는 여가·관광지 중 수원화성을 제외한 나머지 장소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림 4-18〉 여가·관광지 만족도(교통 접근성)



〈그림 4-19〉 여가·관광지 만족도(편의시설)



5. 시사점

수원시 장애인(수원시, 2017), 고령자(수원시, 2016), 아동(이영안, 2018)의 여가·관광 환경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2차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아동 > 고령자 > 장애인 순으로 관광환경을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 대상의 여가·관광 현황을 동일한 기준으로 파악한 통합형 자료는 없기 때문에 각각의 2차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했으며, 이에 따라 상호비교에 한계가 있지만 대상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장애인은 관광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텔레비전 시청과 같이 수동적 여가를 주로 즐기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고령자는 집 주변에 공원이나 산책로는 비교적 충분하지만 본인 연령대에 이용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유아의 경우 지역 내에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자연환경과 문화·이벤트 등이 충분하다고 응답했으며, 자주 가는 수원시 여가·관광지의 만족도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세부적으로는 관광지의 볼거리, 즐길거리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먹거리, 살거리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광약자별 여가·관광 현황을 여가제약 선행연구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면 〈표 4-5〉와 같다. 수원시 장애인은 내재적·대인적·구조적 제약 모두를 경험하지만 구조적 제약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으며, 고령자 또한 구조적 제약을 경험하고 있고 영유아는 상대적으로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고령자와 영유아의 경우 제약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결과를 활용해 제약이 없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여가·관광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타개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현재의 조사는 아동친화도시, 장애인복지정책 등과 같이 관련 연구가 있을 경우에 한해 대상별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약자의 통합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고 척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대상별 비교 분석을 통한 공통의 욕구 및 개별 욕구를 구별하기도 어렵다.

대상별 필요로 하는 관광환경의 공통점과 차이점, 특성 등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사업 내용의 중복, 수요에 맞지 않는 공급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실상에 맞는 무장에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관광약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실시가 필요하다.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등 관광약자를 포괄하는 여가·관광 실태조사를 통해 무장에 관광 조성부터 관리, 조성의 효과 파악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4-5〉 관광약자의 여가제약 선행연구와의 비교 분석

구분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내재적 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이나 체력의 부족 	관련 문항 없음	관련 문항 없음
대인적 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우미(또는 봉사자) 부족 주변 사람들의 편견 	관련 문항 없음	관련 문항 없음
구조적 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가능 여가시설 및 편의시설 부족 경제적 부담 문화여가활동 이용방법에 대한 설명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 주변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나 산책로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내에 아동이 운동하고 놀 수 있는 장소 보유 지역 내에 자연환경 우수 이벤트·축제 등 참여 가능

제2절 관광약자 여가·관광 제약

1. 조사 개요

1) 연구방법 및 참여자 선정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관광약자 별 제약요인을 더욱 세밀하게 파악하여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대상으로 질적 연구방법인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양적 연구방법은 주로 특정 사회 현상에 대한 일반화와 예측, 인과관계적인 설명을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실시된다. 반면에 질적 연구방법은 주로 특정 사회현상을 관련된 사람의 시각에서 이해하려고 할 때 사용된다(Glesne, 2008). 또한 양적연구는 연구모형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유용하지만 연구대상자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지 맥락적인 차원에서 의미를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다(Creswell, 2007; 이상훈·고동완, 2017 재인용).

본 연구는 단일 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여가·관광 제약 연구와 달리 세 집단을 비교 분석하여 대상별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고자 하는 새로운 유형의 연구이다. 따라서 관광약자의 제약을 탐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기준으로 비교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질적 연구방법이 연구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를 통해 관광약자가 왜 그러한 제약을 느끼고 있는지 맥락을 이해함으로써 약자의 여가현실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심층인터뷰는 자연스러운 대화환경을 조성하여 대상자의 생각과 의견을 공유하기 적합한 방법으로(Devile & Kastenholz, 2018), 심층적이고 풍부한 사실 발견과 조사 설계 및 자료 수집에 있어 융통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송미·윤희정, 2019). 이에 따라 질적 연구방법 중 심층인터뷰를 실시하되 참여자가 원할 경우 1:1 인터뷰 뿐 아니라 그룹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고령자는 선행연구에 따라 연령 기준이 상이하였는데, Kazeminia, Del Chiappa, & Jafari(2015)는 50-64세, 김미경·김지은(2017)은 60세 이상, 이려정·김병용(2012)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연령 기준과 할머니라는 사회적 역할을 함께 고려하여 5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의 고령자 중 손자녀가 있는 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자와 개인적 친분이 있는 1인을 선정한 후,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방식을 사용해 소개를 받아 총 4명의 고령자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다만 4명의 고령자가 주요 활동지역이 같고 직업도 유사하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편증을 막기 위하여 수원시 고령자 관련 기관으로부터 2명의 참여자를 추가로 소개받았다.

장애인과 영유아 또한 수원시 내 단체 및 기관 등 관련 전문기관의 추천에 기초하여 선정하였다. 각 기관에 참여자 추천을 요청하면서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했으며 담당자

들은 이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해 줄 대상자를 추천하였다. 이를 통해 지체장애인 3명, 발달장애인 보호자 3명, 영유아 보호자 4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발달장애인과 영유아는 직접 인터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호자(부모)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참가자는 <표 4-6>과 같이 총 16명이다. 질적 연구에 있어 표본의 크기에 관하여 고정된 답이란 있을 수 없으며, 연구자가 추구하는 비교의 성격이나 연구 문제 등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Mason, 2010). 본 연구에서는 16명과의 인터뷰를 통해 연구 목적의 실현을 위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론적인 포화(theoretical saturation)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다(Glaser & Strauss, 1967; Glesne, 2008 재인용)

<표 4-6> 인터뷰 참가자 현황

	구분	성별	연령(만 나이)	인터뷰 형태
장애인	지체장애인 A	남	57	단독 인터뷰
	지체장애인 B	남	52	단독 인터뷰
	지체장애인 C	여	58	단독 인터뷰
	발달장애인 보호자 A	여	47	집단 인터뷰
	발달장애인 보호자 B	여	51	
	발달장애인 보호자 C	여	60	
고령자	고령자 A	여	63	집단 인터뷰
	고령자 B	여	58	
	고령자 C	여	70	
	고령자 D	여	59	
액티브시니어	액티브시니어 A	남	66	단독 인터뷰
	액티브시니어 B	남	71	단독 인터뷰
영유아	영유아 보호자 A	여	40	단독 인터뷰
	영유아 보호자 B	여	40	단독 인터뷰
	영유아 보호자 C	여	39	단독 인터뷰
	영유아 보호자 D	여	43	단독 인터뷰

2) 조사 및 분석 방법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관광약자 별 여가·관광제약을 내재적, 대인적, 구조적 제약으로 구분하여 <표 4-7>과 같이 관련 질문지를 작성하였었다. 선행연구에서 별다른 영향력이 없다고 밝혀진 항목이라도 개인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하지 않고 질문에 포함시켰다. 다만 설문지에 의존하기 보다는 응답자가 형식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며, 질문 순서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배치하여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심층인터뷰는 2019년 4월 중 진행됐으며, 각 대상의 편의를 고려하여 일정 및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복지관 내 카페, 식당, 지원센터 등에서 인터뷰가 진행됐으며, 차나 식사를 대접하여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뷰 진행 방식도 개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조절하였는데, 발달장애인과 고령자는 그룹 간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집단 인터뷰를 희망하여 이에 맞춰 진행하였다.

인터뷰 실시에 앞서 응답자들에게 연구 참여 동의를 구했으며, 인터뷰 당일에도 연구의 취지와 목적 및 참여자들의 개인적 비밀과 익명성이 안전하게 보장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경험을 최대한 담아내기 위해 동의서에 녹음기를 사용하였고 면담내용의 신뢰성 상생을 위해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하였다. 인터뷰 이후에는 16명의 모든 녹취 자료를 전사하여 문서화하였으며, 해당 자료의 정확한 의미 파악을 위해 수차례 반복하여 검토하면서 내재적·대인적·구조적 여가 제약의 틀 안에서 참여자의 의견을 정리하였다.

지체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보호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그룹 별 차이점이 발견되어 장애인 내에서도 장애유형에 따라 내용을 구분하였다. 고령자 또한 국내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일반적인 고령자와 국외 연구에서 발견된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 액티브시니어로 구분이 가능하여 인터뷰 결과를 각각 분석하였다.

<표 4-7> 인터뷰 내용 구성

대상	구분	내용	선행 연구
장애인	내재적 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가(관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걱정 때문에 못하신 적이 있나요?(막연한 두려움) 낮선 환경에서 불안감이나 위험을 느껴서 참여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습니까?(낮선 환경에서 불안/위험을 느낌) 	이봉구·안선희·이유하·공주(2008)
	대인적 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거나 혹시 무시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여가(관광) 활동에 어려움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다른 사람들의 	이봉구·안선희·이유하·공주(2008), 박승현·이영진(2011)

대상	구분	내용	선행 연구
		<p>부담스러운 시선, 장애인에 대한 편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이나 자원봉사자(전문 간병인)가 없거나 함께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서 여가(관광)활동을 못하시는 경우가 있습니까?(도와줄 가족, 자원봉사자의 부재) 	Devile & Kastenholz(2018)
	구조적 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여가(관광)를 즐기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나요?(경제적 어려움/비용 부담, 시간 부족) ▪ 여가활동을 즐기고 싶어도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어떻게 정보를 찾는지 몰라서 참여를 못하시는 경우가 있나요?(관광정보 얻기의 어려움) 	Mckercher, Packer, Yau, & Lam(2003), 오찬교 · 박인아 · 장현(2014), Gassiot, Prats, & Coromina(2018)
고령자	내재적 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관광)를 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으신가요?(흥미가 없어서) ▪ 나이가 들수록 건강문제가 많이 발생하곤 하는데 체력/건강 문제가 여가(관광)활동에 방해가 되진 않으시나요?(건강과 체력 때문에) 	Fleischer & Pizam(2002), 이유리 · 박미석(2005), Nyaupane, McCabe, & Andereck(2008), Huber, Milne, & Hyde(2018)
	대인적 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 친구의 부재, 자녀의 결혼) 함께 여가를 즐길 사람이 없어서 여가활동을 못하시는 경우가 있나요?(함께 여가/관광을 즐길 동반자/친구가 없어서) ▪ 가족 분들(남편, 자녀, 며느리 등)이 반대하거나 이해를 해주지 않아 여가(관광)활동을 못하시는 경우가 있나요?(가족의 반대/이해가 부족) 	Gibson(2002), 이영숙 · 박경란(2009), 김철원 · 김응상 · 정병욱 · 이태숙(2015), Gao & Kerstetter(2016), 김미경 · 김지은(2017), Huber, Milne, & Hyde(2018)
	구조적 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관광)장소까지의 이동/교통수단, 목적지의 편의시설 부족, 숙박시설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 여가(관광)을 주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까?(숙박시설이 불편해서/ 교통수단이 불편해서) ▪ 주변에 마땅한 여가장소가 없거나 시설이 있어도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없어서 여가를 즐기기 어려우신가요?(주변에 갈만한 곳이 없어서/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의 부재) 	Fleischer & Pizam(2002), Nyaupane, McCabe, & Andereck(2008), 이영숙 · 박경란(2009), Gao & Kerstetter(2016), Huber, Milne, & Hyde(2018)
영유아	내재적 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입장) 심리적/체력적으로 지쳐서 여가(관광)가 하기 어렵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 (아이 입장) 아이가 여가(관광)에 흥미를 보이지 않아서 함께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

대상	구분	내용	선행 연구
	대인적 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에 대한 타인의 부정적 태도/인식으로 인해 여가(관광) 참여에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있습니까?(직원의 친절함, ex 노키즈존) 영유아를 관광의 주체가 아닌 부모와 동반한 객체로 여기는 인식 때문에 관광에 어려움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식당에서 접시를 깬을 때, 성인이 그랬다면 종업원이 관찮나고 걱정을 했겠지만 아이의 경우에는 치우는 것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임) 	Khoo-Lattimore, Prayag, & Cheah(2015), 임지은 · 이우진(2017), Khoo-Lattimore, delChiappa, & Yang(2018)
	구조적 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여가(관광)를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여가(관광)장소까지의 이동/교통수단, 목적지의 편의시설 부족, 숙박시설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 여가(관광)을 주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Therkelsen(2010), 진미정 · 한경혜 · 장미나 · 변주수(2012), ÖZEL(2015), Khoo-Lattimore, Prayag, & Cheah(2015), Shuxia(2018)

2. 조사 결과

1) 장애인의 여가제약

(1) 지체장애인

■ 내재적 제약

지체장애인들은 장애 그 자체를 제약으로 느끼기보다는 이로 인해 유발되는 심리적 위축, 두려움, 타인에 대한 미안함 등의 내재적 제약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외연구에서 말한 장애인 스스로 타인에게 짐이 된다고 느끼는 것이나(McKercher, Packer, Yau, & Lam, 2003) 장애인 스스로 본인의 장애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으로부터 관광을 시작할 수 있다(Yau, Mckercher, & Packer, 2004)라고 주장한 것과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비장애인하고 있을 때는 항상 읊조려있고 못 따라가니까. 다른데서는 내가 월등이 잘할 수 있는데. 이제 안 되니까 벌써 위축이 되는 거예요. ... 그러니까 앞에 나서고 싶은데도 못하고 그러니까 엄청 그렇게 살았어요. 사실은. 체념을 한건 십년정도, 그전에는 많이 마음 아파했죠. 여러 가지로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활동범위 제약이 많잖아요. 제약이. (지체장애인 C)

비장애인분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딱 그것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 만약에 노래교실을 갔다. 가면은 딱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모여서 또 다른 행동을 게시해요. 근데 끼고 싶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피해 줄까봐. 이동하는데. 그게 제일 먼저 앞서요. 그러니까 먼저 나도 모르게 핑계대고 빠지고. (지체장애인 C)

무섭죠. 운전하고 가도 무서워요. ... 이제 장거리는 마음먹고 가야지 여럿이 가면 하는데 혼자서는 마음은 있는데, 뭔가 이렇게 세상이 무섭고 제 몸이 제 마음대로 도망도 못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못가는 거지. 항상 마음은 있어요. (지체장애인 C)

지체장애인 C씨는 문화센터, 학부모 모임 등에서 만나는 비장애인들과의 여가생활을 희망했지만 비장애인 앞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자신으로 인해 활동에 차질이 생기거나 시간이 소요되는 등 피해를 준다는 미안함으로 인해 여가생활을 포기했다고 토로했다. 또한 동반자 없이 낯선 곳에 갈 경우 장애로 인해 활동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안전문제에 원활하게 대처하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한데 소변 이런 장애,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사실 남자건 여자건 소변의 문제가 있어요. 급하면 막 하시는 경우 그래서 남들 보기에 똑같은 다 장애인이지만 사실 다 자존심이 강하신 분들이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싶지 않은 거지. (지체장애인 A)

너무너무 나가고 너무너무 나가면 좋아하세요. 그 일을 추진하고 현장에 담당자들이 힘은 들지만 회원님들 좋아하시니까, 너무너무 나가고 싶어 하시니까. 저희들도 힘들어도 일 년에 두 번씩은 행사를 계속 계획을 하고 있고 작년부터 저희는 이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지체장애인 A)

지체장애인 A씨는 중증장애인일수록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높으며, 이러한 한계가 여가·관광 참여의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지체장애인 C씨가 비장애인 앞에서 심리적으로 위축감을 느낀 것처럼 중증장애인들은 신체적 한계로 인해 자존심에 상처를 받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을 많이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인터뷰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장애인들이 내재적 제약을 겪더라도 여가·관광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활동을 포기하기보다는 대안의 방법을 선택한다고 말했다. 국내 연구에서 활용한 내재적 제약의 설문문항과 인터뷰 결과에는 차이가 있지만 다른 제약에 비해 제약요인으로서 영향력이 낮다는 점에서 유사점을 보였다.

■ 대인적 제약

지체장애인들의 대인적 제약 중 가장 빈번하게 언급된 것은 타인의 부정적 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다수의 연구자들은(McKercher, Packer, Yau, & Lam, 2003; ,Deville & Kastenzholz, 2018) 타인의 부정적 태도로 인해 장애인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태도는 장애에 대한 비장애인들이 편견과 무지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하였다.

비장애인 분들을 위한 시설에 장애인이 가게 되면 아무래도 좀 눈총을 받죠. 그분들은 장애인들은 뭘 해도 느리잖아요. ... 천천히 속도도 느리고 하니까 뒤에서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요. 아 이런 데 왜왔어 장애인들인데. 같이 빨리빨리 못해. 왜 이렇게 저사람 때문에 뒤에 다 이렇게 서있는데 왜 저 사람이 여기 와있나 이런 이야기들. (지체장애인 A)

같이 갔을 때는 아무 이야기 없었다가 그다음에 또 갈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내 이름을 부르면서 누가 “이 언니하고 같이 가 들어 시간되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언니 다리가 너무 느리잖아” 그러니까 야차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는 딱 접었어요. (지체장애인 C)

지금은 그렇지만 덜하지만 2-3년 전만에도 많이 했죠. 보는 앞에서 쫓쫓 혀를 차면서. 특히 어머니들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 “쫓쫓 어쩌다 저랬노” 막 이러면서 묻는 사람도 있어요. ... 그리고 갈 때까지 쳐다봐요. 내가 없어질 때까지 쳐다보고 있어. 불쾌할 정도로. (지체장애인 C)

지체장애인들은 비장애인으로부터의 불평불만이나 무시, 염려 등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체장애인 C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비장애인과 활동의 포기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분들은 그 분들이(활동 보조인) 반드시 필요하니까 어디 여행을 가시더라도 그분들 항상 같이 대동해서 가시려고 하니까. (지체장애인 A)

인터뷰에 참여한 지체장애인들은 보조기구 없이 이동에 한계가 있는 중증장애인이었으나 직접 운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 봉사자로부터의 도움 없이도 당일 나들이나 복지관 이용 등은 가능했지만 장애의 정도가 심해질수록 조력자의 도움 없이는 활동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지체장애인 A씨는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장애인단체에서 주기적으로 인원을

모집하여 당일여행을 가고 있는데, 이 때 전동휠체어 이용자들은 보조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를 통해서 장애의 정도에 따라 가족이나 봉사자와 같은 동반자가 부재할 경우 여가·관광 참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지체장애인 C는 두 명의 대학생 자녀가 있지만 자녀들과 여행을 하는 등 여가활동을 시도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면서 “쌓인 게 많다, 포기한 게 많다”라는 말을 하여 가족의 지지를 요청할 수 없어 느꼈을 답답함을 추측할 수 있었다.

애들이 학생이고. 둘이 다 대학생이고. 시간이 안 맞더라고요. 또 고등학생 때는 고등학생이라고 공부한다고 하고.. 이게 맞아요. 그래서 절대 아예 시도를 안 해요. 아예 접어요.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는 쌓인 게 많죠. 워낙 포기한 게 많으니까. ... (지체장애인 C)

■ 구조적 제약

선행연구에서 장애인들의 가장 주요한 제약요인으로 구조적 제약을 언급한 것과 동일하게 (이봉구·안선희·이유하·공주, 2008; 박승현·이영진, 2011; 류성욱·오치욱·이훈, 2012; Devile & Kastenzholz, 2018) 인터뷰 중에 교통이나 편의시설, 경제적 부담과 같은 구조적 제약들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특히 교통과 관련한 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일치기 여행이지만 가려고 해도 사실 리프트 차가 없어요. ... 복지관엔 리프트 차량이 있으니까. 비는 시간 날짜 맞춰서 그렇게 이제 한 대 정도 하다보니까 그 한 대에 많은 사람을 태울 수가 없잖아요. ... 그 리프트 차량의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거를 네다섯 대 실으면 더 이상 못 실어요. 부피가 커서. (지체장애인 A)

지체장애인 A씨는 장애인들과 단체 여행을 떠날 때 전동휠체어 운반을 위한 리프트 시설이 탑재된 차량을 구하기가 어렵고, 구하더라도 전동휠체어의 부피가 커서 수용 가능한 인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중증장애인들은 평소에도 여가·관광을 즐기기 어렵기 때문에 기회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나 이동 자체에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런 분들은 사실 대중교통을 타봐야 지하철밖에 안돼요. 그나마 지하철은 도움을 좀 받을 수가 있고 올라타고 내려 타는 휠체어 타시는 분들도 버스보단 덜 불편하니까. ... 그전엔 경증장애였다가 중간에 또 사고가 있어서 중증의 장애가 저희가 이렇게 된 건데. 이제 그 이후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본 적이 없어요, 불편하니까. 저같이 그래서 자차로 이동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나은 편에 속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 다 대중교통 이용해서 가셔야 하잖아요. (지체장애인 A)

KTX 경험을 한 번 했는데 그래도 KTX는 잘 되어있더라구요. 미리 요청, 예매를 할 때 요청을 해놓으면 역에 도착해서 휠체어를 갖고 나오시는 분이 계시고, 거기서 태우고 이제 탑승하는 데까지 모셔다드리고 리프트가 기다리고 있다가 리프트로 올려서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거는 그래도 아마 기차는 괜찮은 거 같아요. 일반 버스는 좀 힘들다고 봐야하고요. (지체장애인 A)

버스를 올라가지 못해서 아예 불가, 그 다음에 보행이 조금 불편한 장애인 그분들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자유롭게 내려서 이만큼 돕시다.’ 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보조가 안 맞잖아요. 걸음걸이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포기한 사람만 있겠죠. 그런 식으로 대중교통, 일종의 대중 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거. (지체장애인 B)

전혀. 버스도 탈 수가 없어요. 너무 이게 턱이 높아서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발을 양손을 해서 올렸어요. 그럼 잡고 몸을 올려야 되는데 도저히 안돼요. 근데 또 버스가 기다려주지도 않고. 여기 있는데 저기 가버리면 절대로 못 타요. 몇 번을 기다렸다 내 앞에 있으면 타요. (지체장애인 C)

자동차가 없으면 전 죽어요. 그것 때문에 자동차를 제가 운전 따고 한거예요. 절대 저거 아니면 나갈 수가 없어요. ... 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는지 몰라요. 아니면 방안에서 우울증 걸리고 어찌고 했을 거예요. 진짜 외출이 힘들었어요. 차부터 탈 수가 없어요. 앞에 안서니까. 뭘 수도 없고. (지체장애인 C)

대중교통 중에서도 지하철이나 KTX는 지체장애인의 이용이 비교적 편리하지만 버스의 경우 중증장애인의 경우 이용이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의 높은 계단이나 비좁은 공간이 지체장애인들에게 적합하지 않고, 버스가 급하게 출발할 경우 탑승 자체도 시도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체장애인 C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에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서 좋았고, 심지어 자동차가 없으면 죽었을 거라는 표현을 통해서 대중교통 활용의 어려움과 자유로운 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숙박을 하려해도 정말 좋은 숙박지 아니면 사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썩 잘 되어있진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잘 되어있다고 하는 숙박지도 가보면 턱도 많고 그렇게 장애인 편의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있는 데는 사실 거의 드물어요. (지체장애인 A)

유명하다는 관광지가 하나 있어요. 무슨 사찰이에요. 이게 딱 보니까 가기가 어려워요. 갈 수 있는 데가 한정되어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못가니까 포기하기도 하고…….우리가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잘 갑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체장애인 B)

자기들끼리 음식점 가더라도 턱이 있으면 굉장히 문제예요. 그리고 또 식당 같은데 가면 휠체어가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갖춘데 많지 않아요. … 휠체어가 거기 들어가서 회전반경이 나오려면 보통 일반화장실보다 2배 정도 이상 사이즈가 나와야 돼요. 근데 정부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하라곤 하나까 자꾸 나와서 시설점검 하고 그러니까. 하기는 하되 형식적으로 해놓은 데가 많아요. 사이즈도 안 맞고 가다보면 문 잠겨있고 그나마도 만들어놔서 가면 걸레니 뭐니 창고스타일로 그냥 사용을 하는 거예요. (지체장애인 A)

지체장애인들은 관광지나 숙박시설, 식당, 화장실 등 다양한 시설에서 구조적 제약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로나 입구 등에 턱이 많아서 이동이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특히 휠체어를 이용할 경우 낮은 턱에도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화장실의 경우에도 법률상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하지만 형식적으로 조성된 곳이 많기 때문에 실제 이용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제약들로 인해 관광지를 포기하거나 식사 메뉴를 정할 때도 음식의 종류나 맛이 아닌 편의시설을 기준으로 한다고 응답했다.

여가생활이라는 건 사실 건강도 중요하고 편의시설도 중요하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여유가 되지 않으면 마음뿐이지 사실 남들 간다고 다 빙내서 갈 순 없잖아요. … 정부에서 뭘 주는 것 보다는 장애인들도 뭔가 일을 해서 자기가 소득을 보장받아서 그 소득을 가지고 본인들도 여가생활도 하고 가정생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여행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할 거예요. … 기초수급 내지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장애인 수당이라든지, 정부에서 주는, 그런 걸로 생활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목돈을 들여서 약간 또 자기 생활수준에 부담되는 여행은 못가요. (지체장애인 A)

장애인분들 중에서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 우리는 그런 관광을 정말 이렇게 마음먹어야만 할 수 있는 정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지체장애인 B)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과 물리적인 환경인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뭐 여기서 문화 활동 바꾸쳐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일 년에 오만 원 뭐. 이런 건 실제로 도움이 안 되고 좀 더 정치적인 지원이 좀 더 있으면 좋겠죠. (지체장애인 B)

두 번째는 비용이죠. 제가 애만 돌을 키우고 있으니까. 대학생. ... 시간을 내려면 얼마든지 낼 수는 있어요. 비워둘 수는 있는데. 딱 여건이 그거. (시각장애인 C)

교통이나 시설과 같은 인프라 차원의 제약 외에도 경제적 부담이 주요한 제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류성욱·오치욱·이훈(2012)의 연구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장애인들은 취업률이 낮고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체장애인 A는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기 보다는 장애인 스스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생길길 희망했으며, 지체장애인 B씨는 박승현·이영진(2011)의 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나 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으로 하면 일일이 턱이 몇 센치고 이런 거까지 다 물어보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주인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외국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약할 때 턱이 몇 센치나 만약 이렇게 물어봐도 이해를 하고 해주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묻는 게 쉽지가 않고 하여튼 괜찮다고 했지만 가보면 또 아닌 경우도 있고. (지체장애인 B)

지체장애인들은 인프라 측면의 구조적 제약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여가·관광을 즐기기 위해서는 목적지의 시설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선행연구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이 구비되어 있다해도 이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면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상세 정보 부족을 주요한 여가제약 중 하나로 손꼽았다(McKercher, Packer, Yau, & Lam, 2003; Devile & Kastenholz, 2018; Gassiot, Prats, & Coromina, 2018). 지체장애인 B씨는 정보를 확인하고 싶어도 종사원의 몰이해로 인해 현황 파악이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숙박 예약 사이트에 있는 사진을 확인해도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환불을 한 경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도 저한테 맞는 건 없어요. 좀 시시하고 그리고 지적장애인분들하고 같이 해놓으니까 진도를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 구분을 해줘야지 맞는 거잖아요. ... (지체장애인 C)

지체장애인 C씨는 여가장소로 장애인복지관을 자주 방문했는데, 발달장애인과 지체장애인 간의 구분이 되지 않아 개인의 수준에 맞지 않는 수업을 들어야 했고 이에 따라 흥미를 잃어 결국 참여를 포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장애 유형에 따라 이해도가 상이하지만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해 여가참여에 제약을 느끼게 된 것이다.

(2) 발달장애인

■ 내재적 제약

인터뷰 결과 지체장애인은 심리적 위축이나 두려움과 같은 내재적 제약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발달장애인들도 이와 유사하게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으로 관광에 제약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터뷰 참가자들의 자녀들은 부모의 도움으로 여가·관광을 반복해서 즐길 수 있었고 현재에는 관광 선호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 보호자 C) 애네 들은 일단 여행이라는 단어에 기분이 이만큼 좋아져가지고.

(발달장애인 보호자 B) 해피바이러스가 올라가 있지. 말도 잘 듣고.

(발달장애인 보호자 C) 그래서 말도 잘 듣고, 규칙은 진짜 잘 지켜요.

(발달장애인 보호자 B) 아 이러면 엄마가 여행 안 데리고 가는구나, 라고 해서 그거 물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발달장애인 보호자들이 자녀들에게 여행을 간다고 말할 때 평소보다 자녀의 기분이 좋아지고 규칙을 잘 지킨다고 공통적으로 응답했다. 발달장애인 본인의 의견을 직접 듣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과 자녀의 행동을 통해 관광에 대한 발달장애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발달장애인 보호자 B)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딱. 만약에 우리 아이가 여기 상담실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온통 두려운 제일 무서워하는 동물들이 가득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가 보는 시선에서는. ... 이쪽저쪽에서 호랑이, 사자가 앙앙거리고 있다고 보시면, 애네들 심정이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람도 두렵지, 물체도 두렵지,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서 많이 세상 구경을 시키려고 많이 데리고 나가요.

(발달장애인 보호자 C) 제주도를 갔는데, 비행기가 사실 두렵잖아요. 일반사람들도 공항장애 약간 있고, 우울증 있으면 타기 힘들듯이. 그 친구가 비행기 타는 게 어려웠어요. 경험이 없어서. 비행기가 너무 공포스러운거예요. ... 돌아올 때는 안타려고 난리를 치는데 어땠겠어요. 공항직원들과 엄마들이 애를 묶어가지고 태웠어요. 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7) 그룹 인터뷰를 실시한 경우, 전사내용 또한 실제 상황을 반영하여 대화문 형식으로 기재

그러나 발달장애인 특성 상 새롭고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관광을 선호하기 전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발달장애인 보호자 B는 새로운 환경이 발달장애인들에게는 마치 육식동물이 가능한 위험한 곳과 동일하게 느껴진다고 응답했으며, 보호자 C는 비행기를 처음 타보는 발달장애인이 공포에 질려 힘들어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들은 관광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장애가 갖는 특성 상 '두려움'이라는 내재적 제약을 경험할 확률이 높는데, 이는 여가·관광에만 적용되는 제약이라기보다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생활 전반에 적용되는 제약이라 볼 수 있다.

■ 대인적 제약

지체장애인이 타인의 부정적 태도에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발달장애인도 관광지 뿐 아니라 일상생활 곳곳에서 타인의 부정적 시선과 연사를 빈번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 보호자 C) 눈초리예요. 눈초리. 제일 안타깝고 제일 상처받는 게 저는 그거예요. 좀 이상하게 보는 거 있잖아요. ... 사실은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20살. 저희 아이는 20살이에요. 그런데 등치는 있고, 아가씨 같이 보이는데 행동이 좀 이상하면 그 눈초리들이. 줌.. 할머니들은 '아휴 엄마가 버릇을 아주 그냥 응? 예쁘다 예쁘다만 해서 버릇이 저렇게 없다'고.

(발달장애인 보호자 C) 혼자만 신나서 춤을 출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고 막 이게 있거든요? 그럴 때 일반인들은 이해를 못하시죠. '재 갑자기 왜 저래?' 이렇게.

(발달장애인 보호자 B) 정신병 이라고 이렇게 딱.

(발달장애인 보호자 C) '너 내려 다음정거장에서 내려 이 새끼야.' 그럼 어떻게 해요. 개는 나는 엄마가 여기서 버스를 타서 몇 정거장 지나서 육교 지나서 한 번 더 가서 내리라고 했는데. 한정거장 갔는데 내리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면 개는 그동안 했던 훈련이 다 바닥이 되는 거예요.

발달장애인들은 외적으로 비장애인과 동일하기 때문에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소리를 크게 치거나 뛰는 등의 행위를 할 때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에 대한 비장애인의 부정적 태도가 편견과 무지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 선행연구와 관련이 높다고 볼 수 있다(McKercher, Packer, Yau, & Lam, 2003; Devile & Kastenholz, 2018).

하지만 비장애인 중 일부는 발달장애인이란 것을 인지한 후에도 그들에 대해 배려하기 보다는 특이한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 거친 언사를 쏟아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행위는 발달장애인에게 극심한 스트레스가 되어 공포심을 유발하고 반복훈련을 통해 쌓아온 일상행동을 멈추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 보호자 B) 전 중학교 때 수련회는 갔어요. 따라갔어요. 오래요. 학교에서.

(발달장애인 보호자 C) 부모가 와 주길 바래요.

(발달장애인 보호자 C) 좋게 얘기해서 오라는 거고. 처음에 수련회가 딱 잡히면 방잡고 뭐 하기 전에 엄마를 일단 불러요. 불러서 가지마라라고 막 회유를 시키죠. 위협하다 이것도 위협하고, 다 위협하다.

(발달장애인 보호자 B) 되도록이면 안가는 방향으로 하라는 무언의.

(발달장애인 보호자 B) 아 우리 애도 가야죠 뭐, 이래버리면 거기서는 안 데려갈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당연히 데려가야 되는 거니까.

발달장애인들은 특수학교에서도 대인적 제약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발달장애인을 교육하는 학교 내에서도 수련회나 기타 행사를 할 경우 부모가 동반을 하거나 또는 보내지 말 것을 강요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영유아 부모와 같이 수십 년 동안 자녀의 24시간을 함께했기 때문에 신체적·심리적 피로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특수학교에서 발달장애인의 교육과 활동을 분담해준다면 큰 도움이 되겠지만 학교에서 아이들의 자유로운 행위를 억제하려고 시도한다는 점에서 실망감을 느낄 것으로 추측된다.

(발달장애인 보호자 B) 단단해지기 위해서 한번이 힘들지 두 번, 세 번 하면 아 그렇구나. 자꾸 이해를 시키고. 듣던 안 듣던 이해를 하든 안하던 열 번이던 백 번이던 저희는 이제 반복이죠. 이제.

(발달장애인 보호자 B) 더 다녀야 되는 그게 맞아요.

(발달장애인 보호자 A) 여행 다니면 애들도 많이 배워요.

(발달장애인 보호자 B) 그만큼 또 커요.

(발달장애인 보호자 A) 기다리는 것도 배우고

(발달장애인 보호자 B) 이제, 이제 여행이고, 사회가 이렇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체험이 되니까.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자녀의 경험과 교육을 위해 관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발달장애인 부모의 이러한 태도는 자녀를 위해 관광활동이 매우 필요하다고 말하고(Shuxia, 2018), 자녀가 행복하다면 나도 행복하다고 응답한(Therkelsen, 2010) 영유아 부모들과 유사성이 높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지체장애인이거나 고령자는 가족의 과도한 보호나 반대와 같은 대인적 제약을 경험하지만 발달장애인에게 가족이랑 영유아와 동일하게 제약이 아닌 촉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다만 영유아는 일반적으로 6세 미만의 아이를 지칭하지만 본 조사에 참여한 부모님들의 자녀(발달장애인)는 모두 20세 이상 성인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구조적 제약

지체장애인들이 제약 요인 중 구조적 제약을 가장 크게 인지하는 것과 달리 발달장애인들은 신체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시설이나 교통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제약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교육 및 여가 프로그램의 확대를 희망했다.

(발달장애인 보호자 B)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지자체에서 무슨 시설을 해주려고 하지 말고. 힘드니까. 각 동사무소 있잖아요. 동사무소에서 저희를 위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하나씩만 개설해줘도 수원시내 동이 몇 개예요. 그렇게 시작을 해달라. 어디 체육관 복지관을 지어달라는게 아니다. 거기서 시작하자라고 항상 저희가 얘기하죠.

(발달장애인 보호자 B) 왜냐하면 성인이 되면서 시간이 너무 많아요. 100이면 100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8시간 근무를 하는게 아니거든요. 8시간 근무를 한다고 쳐도, 주말을 주말 여가가 또 그렇잖아요. 그 여가 생활이라는 것도 사람인데 누리게 해줘야 되는거고, 지자체에서 부담하겠단 말만하지 말고 그렇게 시작을 해달라. 프로그램 이런 것도.

(발달장애인 보호자 B) 이용자는 소수고. 저희가 수원시내 장애인이 몇 명인데, 센터 여기 하나잖아요. 복지관 몇 군데, 3군데 있죠. 장애인들이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이 아니에요. 한번 개설해도 7명, 8명 이러니까. 그걸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또 제한이 있잖아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시간, 요일 이런 게 다 있고, 평일만 되고 주말은 또 안되고. 주말 여가가 토요일, 일요일 이틀이니까 엄청 길어요. 그 이틀은.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은 학생시절보다 가용시간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이 제한되어 있어 여가를 즐기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기존의 장애인 센터나 복지관은 수용 가능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주민자치센터나 문화센터 내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해주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종 프로그램은 주로 주중에만 운영하기 때문에 가용시간이 가장 많은 주말까지 운영시간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2) 고령자의 여가제약

(1) 고령자

■ 내재적 제약

선행연구에 따르면 고령자들은 내재적 제약 중 신체와 관련된 ‘건강 제약’을 가장 크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Fleischer & Pizam, 2002; 이유리·박미석, 2005; Nyaupane, McCabe, & Andereck, 2008; 김철원·김응상·정병옥·이태숙, 2015; 김미경·김지은, 2017; Huber, Milne, & Hyde, 2018), 인터뷰 참가자들은 건강 문제를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스스로 그럴 나이가 아니라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나이에 대한 인식은 문화센터 이용에 대한 문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고령자도 다양한 연령대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본인은 고령자 중에서도 젊은 층에 속하기 때문에 노인들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ibson(2002)의 연구에서 확인된 관광에 대한 ‘흥미 부족’도 참가자들에게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는데 고령자 B는 여행가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고 언급했으며, 나머지 참여자들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를 통해 인터뷰 참가자들은 선행연구에서 발견되는 내재적 제약을 크게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령자 A) 그렇지. 몸이 힘들지는 않아.

(고령자 B) 아직은 그 나이는 아니니깐.

...

(고령자 B) 난 여행가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좋아해요. 그렇게 가는 것도 좋고.

...

(고령자 A) 그러니까 오십 몇에서 65세까지가 청년이고 66세인가 거기서 부터 75세까진가 중년. 그다음에 그 이후가 노년이라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우리는 지금 청년에 속한거야. 칠십 안 되면.

■ 대인적 제약

고령자들은 여가·관광 동반자로서 친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동반자의 부재로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돌봐야할 가족(손주), 가족에 대한 미안함, 타인의 부정적 태도와 같은 대인적 제약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타인의 부정적 태도는 선행연구에서 고령자의 대인적 제약으로 언급이 많지 않았던 새로운 요인이며 주로 장애인들의 제약으로 알려져 있다.

*(고령자 C) 우리는 친구끼리 가는 게 좋지. 자녀들하고 가는 것보다 친구하고 가서 편안하게
그렇죠? 그 나이 또래, 대화도 하고 최고예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친구가 좋아요.*

(고령자 C) 남편도 이제 글썄.

(고령자 A) 같이 가면 좋지. 근데 바쁘니까, 남편은.

고령자들은 여가·관광 동반자로서 배우자나 자녀보다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친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적인 설명은 부족했지만 남편과는 대화가 잘 통하지 않거나 선호하는 관광패턴이 달라서 남편의 시간이 부족해서 함께 관광 가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뷰 참가자들은 모두 종교 활동을 통해서 친구들을 사귀었으며, 그들과 자주 만나 여가를 즐기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 커뮤니티의 존재가 고령자의 대인적 제약을 해소시켜 주는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다.

(고령자 A) 싫어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모처럼 일상 거기에서, 우리가 열심히.

(고령자 B) 요즘에는 그렇게 터치하는 세상이 아니니까.

(고령자 A) 그래서 잘 갔다 오기를 바라고.

*(고령자 B) 그래서 가족들도 막지는 않지. 근데 자신이. 우리 자신이 돈 들어가고 자식들한테
미안하고 피해가 갈 것 같아서.*

...

(고령자 B) 반대는 전혀 안하지.

...

*(고령자 C) 그렇지, 집이 엉망이야. 갔다 오면. 잘 해먹을게. 내가 해먹을게 해도 갔다 오면
그대로 있어.*

(고령자 A) 사서 먹겠지.

(고령자 C) 응. 사서 식사하시고.

(고령자 A) 요새는 시대가 시대인 만큼 사서 먹어야 돼. 나는 솔직히 집에서 있어도 낮에 한 끼는 사먹고 싶더라.

이영숙·박경란(2009)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이 인지하는 제약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고령자가 가족의 반대(지지 부족)로 여가참여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터뷰 참가자들은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진 않지만 반대하지도 않는다고 응답했는데, 다만 부인이 집을 비우면 배우자(남편)가 식사를 제대로 못 챙겨먹거나 청소를 제대로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시대가 변한만큼 밥을 사먹으면 된다고 응답하여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족과 관련한 고령자의 제약도 점차 해소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배우자와 달리 자녀들은 부모의 관광을 심리적·경제적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령자들은 자녀들의 경제적 도움에 미안함을 느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보다 친구들과 여가·관광을 즐기는 것이 더욱 편안하다고 토로했다.

우리 세대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세대였고 그렇다 또 편찮으시면, 저도 어머니를 잠깐 모셨지만, 그다음에 또 어머니 소천하시고 자녀들, 손주들도 케어해야되는 세대, 나이 대예요. 그래서 여가라는 게 하고는 싶어도, 그렇잖아요. 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령자 D)

50~69세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손주가 있는 응답자 중 51.5%가 황혼육아를 경험했으며, 시간 사용 제약(49.8%, 중복응답), 체력적 한계(55.6%)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응답자 중 72.2%는 고령이나 질병으로 인해 몸이 불편한 부모님을 6개월 이상 장기간 간병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부터 손자녀까지 다양한 가족 구성원 부양을 담당하고 있는 5060세대의 고충을 파악할 수 있었다(미래에셋은퇴연구소, 2018).

고령자 D도 편찮으신 부모님의 병간호와 손자녀의 양육을 순차적으로 담당함에 따라 여가·관광을 즐기기 어려운 실정이며, ‘돌봐야할 가족의 존재’와 같은 가족으로 인한 대인적 제약은 이영숙·박경란(2009)의 연구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다만 연구에서는 고령자가 이러한 제약을 경제적 제약이나 사회적 제약에 비해 낮게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밥값하고 거의 비슷해. 우리들도 관광 가서 너무 비싸고 불친절하고 좀 시선 이렇게 하고 그러면 불쾌하듯이. (고령자 A)

고령자 A는 관광지에서 단독주택 등을 개조해서 만든 카페를 이용할 때 높은 가격도 부담스럽지만 종업원의 불친절함과 부정적 시선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선행연구에서 고령자의 대인적 제약으로 '타인의 부정적 태도나 시각'을 언급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장애인들의 주요 제약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자가 타인의 부정적 시선을 느낀 것은 현재 우리사회가 노인층에 대한 청장년층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세대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유추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7).

■ 구조적 제약

고령자들은 국내 선행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경제적 부담'을 구조적 제약 중 가장 크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가를 위해 이용할 만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손자녀와 함께 외출을 하고 싶어도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활동을 포기하기도 했다.

(고령자 A) ... 너무 관광객이라고 해서 비싸게 안 팔았으면 좋겠다.

(고령자 A) 카페들이 단독주택을 개조해서 차를 많이 팔더라고. 근데 이제 엄마들이 한 바퀴 돌때도 스스럼없이 가서 먹으려면 그런 건 저렴해야 되잖아.

(고령자 A) 밥값하고 거의 비슷해. 우리들도 관광 가서 너무 비싸고 ...

(고령자 A) 근데 관광지가 너무 비싸서 진짜, 엄마들 맨날 비싸다 하지.

(고령자 A) 근데 이제 여행이다 하면은 비용 면이 가장 그렇지. 부모입장에서는.

(고령자 B) 그렇지. 비용이 제일.

(고령자 C) 나는 가고 싶은데 안 가봤어. 이제 한 번 같이 가자하는데.

(고령자 A) 그런 사람들은 어쩌다 있겠지. 우리들은 경비가, 돈이 엄두를, 백만 원 이백만 원 삼백만원내서 보통 여행가면 백단위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엄두를 못 내겠더라. 그게 부모들 마음일거야. 아따.

고령자들은 관광지의 이용 요금이나 식음료 가격, 관광 상품 비용이 고가라서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를 자주 언급했는데 관광을 갈 경우 가장 먼저 소요비용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고령자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여가생활을 위한 경제적 대비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경제적 제약을 가장 크게 느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활동 및 취업기획 확대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려정 · 김병용, 2012)

(고령자 A) 문화센터는 진짜 시간이 안돼요.

(고령자 B) 문화센터 보니까 다 주간이던데 뭐. 야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고령자 C) 아직도 그런 문화센터를 이용할 만큼 한가하고 (그렇지 않지)

(고령자 A) 응. 여유가 없지. 시간 여유가.

본 조사에 참여한 고령자들 모두 직장을 다니거나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은퇴 후 시간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일반적인 고령자와는 여가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거주지 주변의 문화센터를 이용하고 싶어도, 시설의 주된 운영시간과 개인의 여가시간이 상이하여 여가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액티브시니어

■ 내재적 제약

인터뷰에 참여한 고령자들이 내재적 제약을 크게 인지하지 못하는 것과 유사하게 액티브시니어들도 신체적·심리적 문제와 관련된 내재적 제약을 전혀 인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액티브시니어 A는 관광활동에 대한 강한 참여의지를 지니고 있으며, 자전거를 타고 국토 종주와 4대강 종주를 즐기고 탁구 동호회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고 있었다. 액티브시니어 B 또한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스스로의 건강을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액티브시니어 B는 건강, 재산, 친구, 배우자, 자녀를 모두 갖추고 있던 말로 내재적, 대인적, 구조적 제약 전 영역에 걸쳐 어려움을 크게 느끼지 않고 있음을 표현했다.

가장 하고 싶은 거 일단은 세 가지만 하자. 저기에 내가 만족을 하면 이어나가고, 만족하지 못하면 그냥 여기서 스탱하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첫째. 그 다음에는 집사람하고 둘이서 약속한 게 전반기하고 하반기에 꼭 여행을 가자. 꼭 여행을 둘이 가자. (액티브시니어 A)

우리나라 국토 종주가 있고, 4대강 종주가 있어요. 전부다 더하면 1800km야. 이거를 내가 종주한 사람이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국토 종주 메달이 있고, 행정자치부장관하고 국토부장관이 수여하는 메달이 있어요. 이거는 국토종주 메달. (액티브시니어 A)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나 같은 경우에는 전혀 건강도 괜찮고. 그래요. 난 72세인데 전혀 아

무 후회 없어. 다들 나를 부러워하는데. (액티브시니어 B)

마음대로 하고. 그러니까 다들 부러워하지 노는 건 다 노니까 뭐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 건 많아요. (액티브시니어 B)

노인이 되어서 필요한 거 다섯 가지 이런 거 돌아다니잖아요. 다 가졌어. 뭐 건강 가졌지, 경제적으로 어려운거 없지. 마누라 살아있지, 친구 많지, 애들 잘하지. (액티브시니어 B)

■ 대인적 제약

액티브시니어들은 가족, 친구와 여가·관광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뷰에 참여한 고령자의 경우와 유사하게 동반자의 부재나 가족들의 반대 등으로 인한 대인적 제약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고령자 C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액티브시니어 A도 돌봐야 할 가족으로 인해 제약을 느낀 것으로 나타나 시간이나 경제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도 사회적 역할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는 노년층의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은 이제 아버님이 요양병원에 계시요 이제는 그러기 때문에 안 계실 때는 모시고 살았지만,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시니까 내 여가시간이 그만큼 늘어난 거예요. ... 그리고 손녀딸은 오후 1시45분부터 저녁 6시까지 케어하는거지, 쫓아다니면서 계속. (액티브시니어 A)

애기가 어렸을 때는 자녀들이 보니까. 우리가 여행갈 때는 마음대로 다녔죠. 어렸을 때는. 그런데 지금은 여행을 어떻게 가느냐. ... 부부동반해서 가는 거는 데리고 가고, 남자들만의 모임으로 가는 건 할머니한테 맡기고 가고. 할머니가 내일 또 여행가요. 그래서 또 일주일 동안 애기를 전담을 해야 돼. (액티브시니어 A)

액티브시니어 A는 노부모님과 손자녀를 책임진다는 점에서 고령자 D와 상황이 유사하지만 노부모님이 집에서 요양병원으로 거처를 옮기시면서 여가시간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고령자 D는 손자녀의 나이가 만 1세로 보육기관에 보내고 있지 않고 조부모가 양육에 투자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여가시간이 부족한 반면에 액티브시니어 A는 손자녀가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손자녀가 학교에 간 시간 동안 복지관에서 교육과 운동을 즐기고 있다. 손자녀가 영유아 시기 일 때는 여가를 즐기기 어려웠지만 아이가 점차 성장하면서 배우자와의 협력 하에 각각 또는 손자녀와 함께 관광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액티브시니어 A와 고령자 D는 ‘돌봐야 할 가족이 존재’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손자녀의 연령이 상이하며 A는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지만 D는 혼자서 양육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여가·관광 참여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캠핑가도 아침에 물 떠오고 밥하고 찌개 끓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파스타 만들고 된장찌개 만들고, 다 내가 해요. 다 내가 해서 집사람하고 얘기는 차, 식사하세요. 하고 불러다 놓고 밥 먹으면 탁 가져가서 설거지 해놓고.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어 성격이. (액티브시니어 A)

당신은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한다고 하면 ‘그걸 뭐 하러 해’ 절대 하면 안 되죠. 아 그래? 그거하면 뭐가 좋으냐? 남자도 배우면 좋으냐? 이렇게 의기를 북돋아주는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자가 하기 싫어도 더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뭐 하고 싶을 때 마음에 안드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그렇게 해줬으니까 한 번에 자르지 못하지 ‘그래? 그럼 당신도’ 하고 마지못해 승낙하는 것도 있고. 그런 재미도 있죠. (액티브시니어 A)

절대 간섭안하기로 했어요. 심지어 돈 쓰는 것도 각자 나눠가지고 있으니까 아무 간섭을 안 해요. (액티브시니어 B)

이렇게 지내는 걸 대단히 잘하는 걸로 아이들도 생각하고 있죠. (액티브시니어 B)

내가 젊었을 때 내가 돈 번다고 고생을 엄청 했으니까. 오히려 아주 지지 해줘요. 불만이 있을리가 없지. (액티브시니어 B)

인터뷰에 참여한 고령자들과 마찬가지로 액티브시니어들은 가족의 반대(지지 부족)로 인한 대인적 제약을 느끼지 않았으며, 더 나아가 본인 스스로도 배우자의 여가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액티브시니어 A는 배우자가 하고자 하는 여가활동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본인도 함께 참여할 수 있냐고 묻는 등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며, 액티브시니어 B는 부부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서로의 활동에 간섭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내가 자전거를 타고 부산을 가고 싶은데 혼자 가기는 불안하고, 위험하니까. 같이 갈 사람을 구하려면 내가 친구들한테 밥 먹을 때. ... 야 내가 오늘 부산 을석도를 가려고 하는데, 자전거를 타려고 하는데. 이게 왜 좋으냐. 이게 이런 점은 나쁘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 이렇

계 설명을 해주면 동조하는 사람이 꼭 나와요. (액티브시니어 A)

가끔 가족들, 다 같이 갈 때가 있어 그렇게도 다녀봤어요. 다녀봤는데, 이제 시간이 안 맞고, 아이들이 학교 다니고 뭐 배우고 하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액티브시니어 B)

친구들이랑 가는 거죠. ... 그럼요 제일 편하죠. (액티브시니어 B)

Gao & Kerstetter(2016)의 연구에서 고령자들은 '동반자의 부재'라는 대인적 제약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액티브시니어들은 이를 전혀 느끼고 있지 않았으며, 본인이 희망하는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동반자를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액티브시니어 A는 가족, 친구, 모임 등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관광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액티브시니어 B는 고령자와 유사하게 친구와의 동행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들의 관광은 일정 조율이 어렵고, 친구와의 관광이 가장 편하다고 응답했다.

■ 구조적 제약

국내 선행연구(이영숙·박경란, 2009; 김철원·김응상·정병옥·이태숙, 2015)와 인터뷰를 통해 '경제적 부담'이 고령자의 가장 주요한 경제적 부담 중 하나인 것을 확인했으나 액티브시니어들은 노후준비가 잘 되어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적 제약이나 인프라, 정보 측면에서도 큰 제약이 없다고 응답했다.

우리가 막 은퇴하기 전에 은퇴자들의 은퇴하고 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은퇴자금은 얼마나 필요한가. 이런 것들에 사회적인 이슈가 그때 막 시작됐었어요. ... 저는 저 나름대로 제테크를 시작을 해서 지금은 아주 뭐라고 할까요.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 건물가지고 있고, 임대도 받고, 편안한 게 살고 있죠. (액티브시니어 A)

그분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그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시간도 얼마든지 많고 해서 지금 사실 노년을 엄청 잘 즐기는 사람에 속합니다. 그래요. 복지관이용을 최대한으로 잘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액티브시니어 B)

시간이 없다고 한다기보다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만들어서 써야지 누가 뭐 시간 가져 주냐. ... 누구나 다 시간은 24시간 똑같아요. 그 시간을 활용할 줄 알아야지. (액티브시니어 A)

액티브시니어 A는 은퇴이후 생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가 고조되자 개인적으로 노후준비를 실시하여 현재에는 편안하게 살고 있다고 밝혔으며 액티브시니어 B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별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뷰에 참여한 고령자들은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느낄 뿐 아니라 직장생활로 인한 시간적 제약도 느끼는 반면 액티브시니어들은 노후 준비를 통해 경제적 부담과 시간적 제약으로부터 모두 비교적 자유로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모습은 Fleischer & Pizam(2002)의 연구에서 묘사한 액티브시니어의 모습(은퇴와 함께 시간 제약이 사라지고 소득은 최고조에 달하며 건강 제약은 아직 유효하지 않음)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액티브시니어 A는 그렇지 않은 액티브시니어 B에 비해 시간제약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지할 확률이 높지만 누구에게나 시간은 똑같이 주어졌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은 본인의 몫이라는 말을 통해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자세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가지 정보 중에 내가 필요한 정보는 내가 다 컴퓨터를 배우면서. 내가 컴퓨터를 여기서 2년 동안 받으면서, 2년 동안 반장을 했어요. (액티브시니어 A)

우리가 우리 친구들도 그런 거 잘 못해. 그래서 자녀들이 스케줄 다 짜주던가 그렇게 하더라고. 아니면 그냥 뭐 여행사 따라다니는 거지. 우리끼리는 잘 못해. 그런데 지금 일본어를 배우고 있는데, 친구들이 다섯 명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한번 다녀보자고 일본어를 좀 배워야 마음대로 다니니까. 그래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액티브시니어 B)

Gao & Kerstetter(2016)은 중국의 고령자들이 제한된 정보접근성으로 인해 구조적 제약을 경험한다고 밝혔는데 액티브시니어 B 또한 본인을 포함해서 또래 집단은 정보 검색에 익숙하지 않다고 토론했다. 그러나 자녀의 도움을 받거나 여행사를 통해 예약을 하는 등 정보제한으로 인해 관광에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 여행에 앞서 친구들과 일본어 공부를 계획하는 등 편리한 의사소통을 목표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었다. 액티브시니어 A는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수업을 통해 정보검색에 능숙하며 관련해서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토론했다. 거주지 근처에 문화센터, 복지관과 같은 시설이 고령자 교육과 여가에 긍정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영유아의 여가 제약

■ 내재적 제약

영유아는 발달장애인의 경우와 유사하게 연령 특성 상 보호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기 때문에 아이의 내재적 제약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부모님들의 응답을 통해 영유아가 여가·관광 활동을 선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별한 내재적 제약을 발견하지 못했다.

저희는 남자아이만 둘이거든요. 그러다보니 사실은 실내보다는 바깥을 좋아해요. (영유아 보호자 B)

(수원화성과 같은 실외공간) 엄청 좋아해요. 거기서 연 날리고, 그냥 막 뛰는 거예요. 잔디밭에서 거기는 이제 넓게 다 이용할 수 있으니까 보통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영유아 보호자 C)

■ 대인적 제약

선행연구를 통해 ‘관광종사원과 영유아 사이의 상호작용’, ‘부모에게 동반된 객체가 아닌 여행의 주제로서 인정’ 과 같은 영유아의 대인적 제약을 유추할 수 있었는데 본 인터뷰를 통해 지체·발달 장애인이 경험하는 ‘타인의 부정적 태도’를 영유아들도 경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남편의 도움이 없이는 아이들과 외출하기가 힘들다는 응답을 통해서 ‘배우자의 참여 부족’ 또한 대인적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커피숍을 가고 싶어도 가보면 노키즈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항상 확인을 하고 가야 되요. (영유아 보호자 A)

아무래도 여행을 가면 검색을 해요. 노키즈존 이런 게 많으니까, 한번 어디 북카페 같은 게 있어서 가보고 싶었는데 그 앞에 딱 갔는데 노키즈존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영유아 보호자 B)

어떤 엄마는 파워더룸, 화장실에 좀 있잖아요. 거기서 얘기 넘혀서 하는 거 봤는데 좀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요 저는. (영유아 보호자 A)

저 같은 경우는 안 나갈 수 없는 게 큰 아이가 있으니까 나갔는데 작은 아이 때문에 수유나 이런 게 걸리니까 그런 델 또 못가는 거죠. 왜 어린애 데리고 나와? 이러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부모도 나와야 되고 또. (영유아 보호자 B)

너무 힘들더라고. 밖에서 밥 먹는 시간이. 밖에서 밥 먹는 시간이 즐거운 게 아니고 지옥 같은 거예요. 빨리 먹고 나가야되고,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는 거예요. 주변의 시선이랑 내 아이의 어떤 다른 사람에게 방해하는 그런 행동들이. (영유아 보호자 C)

놀이터에서 시끄럽게 한다고 낮 시간에, 그런 플랜카드 건 곳도 있어요. 시끄럽지 않게 놀라고 놀이터에. 그런데 정말 그런 경험을 해봤었거든요. '시끄러워' 이렇게, 노는데. ... 그러면 '조금만 참아주세요'하고 그랬죠. 왜냐하면 거기서 내가 너무 저버리면, 이 놀이터를 올 수가 없거든요. (영유아 보호자 A)

영유아 보호자들은 카페나 식당, 화장실 등 다양한 장소에서 영유아와 그 보호자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 시선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영유아 보호자 A는 아이들을 위해 조성된 놀이터에서 낮 시간대에 놀고 있었음에도 “시끄럽다”는 표현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토론했다. 영유아 보호자들은 주로 고령자로부터 부정적인 시선이나 표현을 들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간혹 영유아 부모들 사이에서도 부정적 태도로 감정을 상하는 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마들 중에서도 내 아이가 너무 정적이고 얌전한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엄마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왜 애를 저렇게 키워?' 이렇게 들었죠. 제가. ... 이제 그런 엄마들도 있어요. 눈치주고. (영유아 보호자 A)

조용한 성향을 가진 부모들은 활발한 아이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그 부모를 비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보호자 A는 “왜 애를 저렇게 키워?”라는 공격적인 말을 들었지만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토론했다.

저는 제주도가 시댁이었어요. 저는 정말 갓난 애기 때 제주도를 비행기를 타고 가야되잖아요. 정말 고민하다가. 애들이 대부분 우는 게 기압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탕을 빨면 기압이 덜하다고 그래서 정말 그 유명한 감기사탕 같은 걸로 쪽쪽쪽 빨게 한다든지 아니면 저는 분유 수유를 했기 때문에 분유를 열심히 먹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저희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썼고, ... 오죽하면 배타고 간적도 있어요. 시댁을 가야하니까. (영유아 보호자 A)

구경은 많이 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나가라고 그러셔가지고 구경은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너무 애들이 안쓰러웠던 게 어디만 가면 무조건 유모차에 앉아있으라고 했어요. 아예 잠가 놓는거죠 애들. (영유아 보호자 B)

무조건 식당가면 5살짜리는 스마트폰을 줘요. 왜냐면 피해주는 건 싫고 또 안 그러면 사실은 “가만히 있어”해도 남자아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영유아 보호자 B)

‘타인의 부정적 태도’를 경험한 영유아 보호자들은 부정적인 시선이 없는 상황에서도 타인의 시선을 미리 의식하여 이동수단, 관광지, 식당 등에서 아이들을 절제시키기 위해 유모차에 앉히거나 스마트폰을 쥐어주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토론했다.

공공시설에 전화한다고 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있냐요? 하면 아 그거 확인해봐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계시니까. 거의 보면 아이들을 뛰게 하지마세요 하고 바라기만하지 ... 이런 것들을 편하게 한다든지 그런 고민은 없다고 봐요. 고민하지 않고 무조건 아이들을 여기서 뛰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마세요 못하게만 하지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없잖아요 전혀. (영유아 보호자 A)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유롭게 뛰어놀고자 하는 아이의 본성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고 무조건 절제시키고 조용히 시키려고 하는 사회 분위기에 대한 아쉬움과 섭섭함을 토로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저는 사실 아빠 없는 날은 밖에 안 나가요. 쉽지 않아요. (영유아 보호자 C)

제가 운전을 못하니까 ... 남편이 없으면 제가 뭘 못해서. (영유아 보호자 D)

영유아 보호자 C와 D는 배우자가 없을 경우 자녀와의 야외 활동이 어렵다고 토로하였는데, 특히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배우자의 조력 없이 혼자서 여러 아이를 책임지는 것이 체력적으로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유실이나 기저귀교환대 등 영유아용 편의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개인차량을 이용해야 하는데, 본인이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남편이 꼭 필요하다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배우자의 지지 부족은 영유아 여가에 대인적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일을 하다 보니 주말이 되면 쉬고 싶은 게 있어 나가는 게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아이를 데리고 어디든 나가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 아무래도 아이가 집에서 노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도 좀 더 많은 걸 보여주고, 해주고 싶으니까. (영유아 보호자 B)

평일에는 시간이 얽매어 있으니까. 오히려 직장 다니는 엄마들 마음이 그런 거 같아요. “집에 있는 시간에 내가 더 많이 놀아줘야겠다.” ... 밖에도 주말에는 비가와도 날씨가 조금 안 좋아도 일단 밖에 같이 나가서 뭘 할 수 있게끔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영유아 보호자 C)

저희도 워킹 맘이다 보니까 5일 동안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적잖아요. 그 시간을 토요일 하고 일요일 날, 물론 우리도 쉬고 싶지만 그 시간에 저희는 7일 중에 이틀이라도 난 너를 위해서 모든 걸 해줄 수 있다는 걸 아이가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더. (영유아 보호자 D)

인터뷰 참여자들은 모두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내가 체력적으로 힘들고 지치더라도 쉬는 날만이라도 자녀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여가활동을 즐기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rkelsen(2010)의 연구에서 인터뷰 참여자가 관광활동을 통해 자녀가 행복하다면 보호자인 본인도 행복하다고 응답한 것과 유사하게 “너를 위해서 모든 걸 해 줄 수 있다”, 또는 “좀 더 많은 걸 보여주고, 해주고 싶으니까.” 라고 응답하여 자녀에 대한 부모의 헌신적인 애정과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를 통해 영유아에게 있어 가족은 제약요인보다는 촉진요인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는 추측을 하였는데, 본 인터뷰를 통해서 이를 증명할 수 있었다.

■ 구조적 제약

선행연구를 통해 영유아가 장애인과 고령자와 유사하게 이동, 숙박, 편의시설 등 구조적 제약을 경험하면서도 타 집단에 비해 안전과 위생을 강조했고, 식사, 수면, 체험활동 등 다양한 범주에서 상세한 요구사항을 가졌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인터뷰 결과 영유아 보호자들은 화장실, 유모차, 수유실, 식사 등 다양한 구조적 제약에 대해 토로하여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점을 보였다.

기저귀도 화장실에 조금 애가 나를 잡고 설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차안에서 기저귀를 간다던지. ... 차에 커튼을 다 해놓고 거기서 기저귀를 갈고 거기서 수유를 하고. 수유를 할 때 혹시 차안에 앞 유리로 보일까봐 이렇게 수유 이저 해가지고 먹이고 그다음에 좀 설 수 있는 때는 화장실에 가서 변기뚜껑 달아놓고 거기서 많이 갈았어요. ... 근데 갔을 때 우연치

않게 세워서 벽에 내려놓는 게(기저귀교환대) 있으면 너무 반가운거예요. 그럼 또 그걸 열심히 닦아요. 닦아가지고 거기 눕혀서 해주고. ... 차에서 똥이든 오줌이든, 커서는 쉬를 해야 되는데 또 아이들은 어디서 싸지 모르잖아요. 그때는 남자애들은 편해요. 딱 병으로. 그런데 여자애는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컵도 써보고, 컵도 좀 큰 거. 컵을 약간 길쭉하게 늘려가지고 거기다가 싸게 하던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아니면 유아용이 있는데 그건 집에서 좀 몇 번 연습을 시켜가지고 여기서 싸게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했었죠. (영유아 보호자 A)

여주를 갔는데 ... 길도 너무 나쁘고 중간 중간 화장실 문제도 크고 특히 작은아이가, 큰 아이는 이제 화장실을 혼자 가는데, 수원쪽이든 어디든 공공화장실을 가면은 아빠가 있으면 괜찮은데 엄마가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남자아이인데 끌고 가면은 이제 여자변기에서 할 수 없이 작은 아이를, 왜냐면 형아 보고 데려가라기에는 아직은 좀 그러니까, 그런 거가 좀 불편하고. 화장실, 그리고 변기, 안고 해야 돼요. 왜냐면 유아용 변기가 없는데가 많으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아빠는 힘이 좋으니까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다섯 살이면 아직은 유아변기를 하거든요. (영유아 보호자 B)

화장실 같은 경우가 저는 가장 불편하더라고요. 좀 어린 아이들... 차라리 기저귀하는 애들은 차라리 차에서라도 하면 되는데 정말 애는 여자 변기에 키가 안 되니까 당잖아요. 닦아주긴 해도 애도 짹짹하고, 튀면 또 저도 여길 닦아야 되니까 서로 짹짹하고 차라리 남아 소변기가 있으면 편한데. (영유아 보호자 B)

영유아 보호자 A와 B는 기저귀교환대가 흔치 않기 때문에 개인차량에서 해결한 경우가 많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아이가 성장할수록 차에서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화장실을 이용하지만, 연령에 맞는 유아용 변기나 기타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영유아와 보호자 모두가 불편할 뿐 아니라 위생상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쇼핑 같은 걸 갈 때도 유모차 대여가 이제 나이제한이 있어서, 그러니까 수원만 봐도 ... 나이제한이 있어요. 저희 5살도 사실은 유모차를 타요. ... 근데 저의 돌쟁이들 아니면 24개월까지 밖에 유모차 대여가 안돼요. (영유아 보호자 B)

길만 이렇게 턱 같은데도 없고 그래도, 왜냐면 유모차를 미는 게 사실은 이쪽 동네는 그래도 신도시라서 유모차 밀 때 그런 게 없어요, 힘든 게 없어요. ... 여기 신도시만 벗어나도 수원 보면 옛날 길 그런데 가 많잖아요. 그런데는 정말 유모차 힘들어요. 턱도 너무 많고 이게 비탈

이 너무 졌다 이렇게 되면 정말 이게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영유아 보호자 B)

영유아 보호자 B는 유모차와 관련한 구조적 제약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24개월 이상의 아이들도 유모차가 필요하지만 대여 서비스는 주로 24개월 이하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활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도시나 박물관 같은 곳은 도로상태가 우수하지만 수원화성이나 구도심은 턱이나 장애물이 많기 때문에 유모차 이용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백화점 이런 데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수유실도 있고 너무 좋은데, 저도 그때 아이들이 둘 다 아예 젖병을 안 해가지고 거부를 해서 ... 그럼 정말 차에 가가지고 하고 올면 그냥. 왜냐면 수유실 같은게 저런 야외 공간에는 없으니까, 왜냐면 아이들도 그렇고 그 어린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도 어쨌든 야외를 나가고 싶고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불편해요. (영유아 보호자 B)

저는 대중교통을 절대 안 된다고 ... 차가 꼭 있어야 되어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차를 이부제를 한다거나 하면 그럼 쉬는 날은 어떻게 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거들은 아무런 배려 없이 무조건 국가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애 많이 낳으라고 하면서 10년 전과 지금이 전혀 달라진 게 없는 이 현실을 보면서 누가 애를. 그것부터 시작해서 좀. (영유아 보호자 A)

그냥 저는 없으면 없는 대로 맞췄던 것 같아요. 그게 불편하다고는 못 느꼈고요. 그냥 애가 기저귀갈이가 필요하면, 가까이 있었으면 더 편했겠죠. 근데 없으니까 차에 가서 던 것 같아요. 그게 없다고 불편하거나, 그러니까 있는 곳에서 우리아이를 키웠다면 없는 환경이 좀 불편했겠죠. ... 그러다보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제가 차가 있으니까 차에서 다 해결을 했던 것 같아요. 차에서 다 해결을 하고 뭐, 화장실도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차에서 기저귀 같이 해주고. (대신 차가 없으면) 못나가죠. (영유아 보호자 D)

영유아 보호자 B는 수유실의 부족 문제도 언급하였는데, 대형쇼핑몰이나 백화점은 영유아용 편의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지만 야외 공간에는 수유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개인차량을 주로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와 동반하여 외출할 경우 가까운 놀이터나 공원이 아니라면 개인차량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차량이부제와 같은 정책은 영유아 가정의 여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책 시행에 앞서 보다 세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영유아 보호자 D는 다른 보호자에 비해 대인적·구조적 제약을 크게 느끼지 않았으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스스로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영유아 보호자 A와 B와 같이 차량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를 통해 영유아 가정에게 차량이랑 교통수단일 뿐

아니라 아이들이 휴식하고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자 화장실로도 활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즘 식당가면은 아이들 먹을 수 있게 볶음밥이나 돈가스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애가 항상 식당가면 아이용은 돈가스니까 돈가스를 특히 싫어해요. 매번 먹는 게, 어느 식당에 가도 볶음밥이나 돈가스니까. “또 돈가스야? 나 돈가스 말고 밥 먹을래.” 주로 그런 것들. (영유아 보호자 C)

영유아 보호자 C는 식당마다 마련된 아이용 메뉴에 대해서 언급하였는데, 많은 식당들이 아이용 메뉴로 돈가스를 주로 판매하다보니 자녀가 실증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는 부모님과 같이 온 객체가 아니라 한 명의 손님으로서 인정하고 이들을 위한 메뉴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차라리 이런 놀이 시설, 한 번씩 이렇게 놓고, 보면 동물원 같은데도 별거 아닌데 미끄럼틀 같은 거 있으면 꼬맹이들은 거기 줄 서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한번타면 별거 아닌 거 같은데도 아이 입장에서는 너무 즐거운 거죠. (영유아 보호자 B)

선행연구(ÖZEL, 2015; Khoo-Lattimore et al, 2015)에서 부모들이 영유아 자녀를 위해 체험 프로그램이나 놀이 공간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진 것과 유사하게 영유아 보호자 B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거대한 시설을 조성하길 원하지 않았으며 간단한 놀이기구만 설치하여도 아이들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고 응답했다.

3. 대상별 분석

1) 장애인

지체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보호자 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이들의 여가제약을 분석하면 <표 4-8>, <표 4-9>와 같으며, 이들이 언급한 각종 제약들은 선행연구의 연구 결과와 유사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체장애인들은 내재적 제약으로 '심리적 위축', '두려움', '타인에 대한 미안함'을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개인의 심리와 관련된 이러한 제약은 Yau, Mckercher, & Packer(2004)의 연구에서 장애인 스스로 본인의 장애를 인정하고 수용하지 못하면 공공장소를 피하거나 관광을 거의 또는 전혀 하지 못한다는 주장과 바와 유사한 맥락으로 스스로가 이를 극복해내지 못하면 제약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

하지만 인터뷰 참가자들은 내재적 제약으로 인해 여가·관광을 포기하기보다는 장애인들과 함께 하거나 익숙한 곳에 혼자서 드라이브를 떠나는 등 자신이 편안한 방법을 활용해 여가·관광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체장애인 A는 장애인모임을 통해 나들이를 떠날 때 참석자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언급하여 환경만 주어진다면 지체장애인들이 여가·관광을 떠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달장애인 또한 내재적 제약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낮은 장소에 대한 발달장애인들의 일반적인 반응으로 여가·관광에만 해당하는 제약이 아닌 사회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약이라고 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보호자들은 자녀들이 새로운 곳을 두려워하지만 반복 학습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현재에는 자녀들이 여가·관광을 선호하여 여행을 가기로 약속했을 경우 평소보다 규칙을 잘 지키는 등 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인터뷰 참석자들은 발달장애인 중에 집안에만 머물거나 등산 중에 몇 시간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하여 반복학습을 하더라도 발달장애인의 심리적 문제가 여가·관광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했다.

지체·발달장애인은 공통적으로 선행연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타인의 부정적 태도'를 주요한 대인적 제약으로 느끼고 있었다. 특히 발달장애인 보호자는 모든 제약 중에 '타인의 부정적 태도'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하여 이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했다. 지체장애인 C씨는 "아 이런데 왜왔어, 장애인들인데"와 같은 표현을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발달장애인 보호자 C도 "재 잡자기 왜 저래?"와 같은 표현이나 부정적 시선들이 가장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지체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조력자 없이는 여가·관광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도 장애 특성 상 부모님이나 봉사자 등 조력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인터뷰에 참가한 부모님들은 영유아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자녀를 위해서 여가·관광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여 제약이 아닌 촉진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모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자녀의 여가·관광에 관심이 없다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

지체장애인은 '이동의 어려움'이나, '경제적 부담'에 대해 자주 언급하면 그들이 경험하는 구조적 제약을 강조하였다. 반면에 발달장애인들은 신체적으로 이상이 없기 때문에 구조적 제약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했는데, 발달장애인 보호자 A는 자녀가 등산을 좋아해서 함께 히말라야 등반을 다녀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체장애인들은 휠체어나 목발을 이용할 경우 특히 구조적 제약을 더욱 많이 인지한다고 강조하며, 교통시설이나 숙소, 도로, 화장실 등에서 만나는 많은 장애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고 토로했다. 지체장애인 A씨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들은 장거리를 이동할 경우 전용 리프트가 설치된 차량이 필요하지만 차량 자체가 흔하지 않고 차량 한 대에 수용 가능한 인원이 많지 않아 이동이 어렵다고 말했으며, 지체장애인 C씨는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에서 이동할 때 턱이 많고 화장실에서도 장애인용 편의시설을 형식적으로 시설을 갖춰놨을 때 공간이 비좁거나 창고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응답했다.

박승현·이영진(2011)의 연구에서 장애인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구조적 제약을 느낀다고 주장한 것과 같이 지체장애인들은 비용 문제로 인해 여가·관광에 한계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체장애인 A는 장애인들 중에서 소득이 낮아 여가·관광을 가고 싶어도 실행에 옮기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하기보다 일자리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체장애인 B와 C 또한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고 토로하여 지체장애인들 상이에 '경제적 부담'이 일반화되어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발달장애인 보호자들은 구조적 제약으로 발달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가 프로그램 부족'을 언급하였는데,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이 직장을 다녀도 여가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의 운영시간이나 대상연령이 맞지 않아서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건설하기보다 주민센터와 같이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발달 장애인을 위한 여가 프로그램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표 4-8〉 지체장애인의 여가제약 조사결과

구분		관련 내용	선행연구
내재적 제약	심리적 위축	비장애인하고 있을 때는 항상 움츠려있고 못 따라가니까. (지체장애인 C)	McKercher, Packer, Yau, & Lam(2003)
	(낮선 곳에 대한) 두려움	뭔가 이렇게 세상이 무섭고 제 몸이 제 마음대로 도망도 못가잖아요. (지체장애인 C)	Devile & Kastenholz(2018)
	타인에 대한 미안함	그런데 그분들에게 피해 줄까봐. 이동하는데. 그제 제일 먼저 앞서요. (지체장애인 C)	Yau, McKercher, & Packer(2004), Devile & Kastenholz(2018)
대인적 제약	타인의 부정적 태도	뒤에서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요. 아 이런 데 왜왔어 장애인들인데. (지체장애인 C) 나이 드신 분. “쯧쯧 어쩌다 저랬노” 막 이러면서 묻는 사람도 있어요. (지체장애인 C)	McKercher, Packer, Yau, & Lam(2003), Yau, McKercher, & Packer(2004), Devile & Kastenholz(2018), Gassiot, Prats, & Coromina(2018)
	동반자 (조력자) 부재	그 분들이(활동 보조인) 반드시 필요하니까 어디 여행을 가시더라도 그분들 항상 같이 대동해서 가시려고 하니까 (지체장애인 A)	Yau, McKercher & Packer(2004)
구조적 제약	이동의 어려움	사실 리프트 차가 없어요. ... 그 한 대에 많은 사람을 태울 수 가 없잖아요. ...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거를 네다섯 대 실으면 더 이상 못 실어요. 부피가 커서. (지체장애인 A) 전혀. 버스도 탈 수가 없어요. 너무 이게 턱이 높아서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지체장애인 C)	박승현 · 이영진(2011), 류성욱 · 오치욱 · 이훈(2012), Devile & Kastenholz(2018)
	무장애 관광환경 부족 (인프라 측면)	숙박지도 가보면 턱도 많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되어있는 데는 드물어요. (지체장애인 A) 자기들끼리 음식점 가더라도 턱이 있으면 굉장히 문제예요. ...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갖춘 데가 많지 않아요. ... (지체장애인 A)	류성욱 · 오치욱 · 이훈(2012), Gassiot, Prats, & Coromina (2018)
	경제적 부담	여유가 되지 않으면 마음뿐이지 사실 남들 간다고 다 빙내서 갈 순 없잖아요 (지체장애인 A)	박승현 · 이영진(2011), Gassiot, Prats, & Coromina (2018)
	정보 접근의 한계	그래서 디테일하게 묻는 게 쉽지가 않고 하여튼 괜찮다고 했지만 가보면 또 아닌 경우도 있고. (지체장애인 B)	McKercher, Packer, Yau, & Lam(2003), Devile & Kastenholz(2018), Gassiot, Prats, & Coromina (2018)
	여가 · 관광 프로그램의 부족	프로그램도 저한테 맞는 건 없어요. 좀 시시하고 그리고 지적장애인분들하고 같이 해놓으니까 진도를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지체장애인 C)	McKercher, Packer, Yau, & Lam(2003), 류성욱 · 오치욱 · 이훈(2012), Devile & Kastenholz(2018)

〈표 4-9〉 발달장애인의 여가제약 조사결과

분		관련 내용	선행연구
내재적 제약	(낮선 곳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딱 ... 그러면 여기는 온통 두려운 제일 무서워하는 동물들이 가득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가 보는 시선에서는. (발달장애인 보호자 B)	Devile & Kastenholz(2018)
대인적 제약	타인의 부정적 태도	<p>눈초리에요. 눈초리. 제일 안타깝고 제일 상처받는 게 저는 그거예요. 좀 이상하게 보는 거 있잖아요. (발달장애인 보호자 C)</p> <p>일반인들은 이해를 못하시죠. '재 갑자기 왜 저래?' 이렇게. (발달장애인 보호자 C)</p> <p>처음에 수련회가 딱 잡히면 ... 불러서 가지마라라고 막 회유를 시키죠. ... 다 위험하다. (발달장애인 보호자 C)</p>	McKercher, Packer, Yau, & Lam(2003), Yau, Mckercher, & Packer(2004), Devile & Kastenholz(2018), Gassiot, Prats, & Coromina(2018)
구조적 제약	여가·관광 프로그램의 부족	<p>지자체에서 무슨 시설을 해주려고 하지 말고. ... 동사무소에서 저희를 위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하나씩만 개설해줘도. (발달장애인 보호자 C)</p> <p>거기에 또 제한이 있잖아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시간, 요일 이런 게 다 있고, 평일만 되고 주말은 또 안 되고. (발달장애인 보호자 B)</p>	McKercher, Packer, Yau, & Lam(2003), 류성옥·오치옥·이훈(2012), Devile & Kastenholz(2018)

2) 고령자

고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선행연구 결과와 대인적, 구조적 제약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음을 확인했으며, 액티브시니어 또한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별다른 제약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응답자 중 일부가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관련한 대인적 제약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내용으로 국외에서 액티브시니어 연구를 주로 진행함에 따라 문화적 차이가 있는 국내 실정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 판단된다.

고령자와 액티브시니어가 경험한 여가제약을 정리하면 〈표 4-10〉, 〈표 4-11〉과 같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고령자는 내재적 제약 중 '건강 제약'을 크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leischer & Pizam, 2002; 이유리·박미석, 2005; Nyaupane, McCabe, & Andereck, 2008; 김미경·김지은, 2017; Huber, Milne, & Hyde, 2018),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신체적 활동 및 움직임에 부담을 느껴 '건강 제약'을 크게 인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김철원·김응상·정병욱·이태숙, 2015). 그러나 고령자와 액티브시니어와의 인터뷰 결과 고령자는 60대,

액티브시니어는 70대 임에도 연령에 따른 차이 없이 모두 ‘건강 제약’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체 움직임이 둔화되고 건강이 악화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령자가 ‘건강 제약’을 경험할 확률이 높지만 액티브시니어의 경우와 같이 개인의 노력과 환경에 따라 제약으로서의 작용 시기를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인적 제약에 있어서도 고령자와 액티브시니어 간 유사점이 발견됐는데, 이영숙·박경란(2009)의 연구에서 주장한 ‘돌봐야 할 가족의 존재’로 인해 제약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D와 액티브시니어 A는 모두 노부모 공양과 손자녀 양육으로 인해 여가시간 부족을 경험하였다. 다만 액티브시니어 A는 노부모님이 집에 계시다가 현재에는 요양병원으로 거처를 옮겼으며, 손자녀도 초등학교에 입학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여유시간이 증가했다고 응답하여 시간의 흐름과 상황의 변화로 가족으로 인한 대인적 제약이 일부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액티브시니어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돌봐야 할 가족의 존재’에 대해 언급한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웠는데, 이는 관련 연구들이 주로 국외에서 진행됐으며 자녀이자 부모로서 가족들을 돌봐야 하는 책임은 국가마다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타 국가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를 통해 액티브시니어는 ‘경제적 부담’, ‘건강 악화’와 같이 고령자의 일반적 여가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국내외가 동일하지만 개인에게 요구하는 사회적 역할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지역별로 상이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령자 A는 대인적 제약으로 ‘타인의 부정적 태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는데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는 장애인이 흔하게 경험하는 제약으로 고령자 연구에서는 언급된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 액티브시니어와의 인터뷰에서도 이러한 제약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우리 사회 내에 노인층에 대한 청장년층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세대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앞으로 고령자가 대인적 제약으로 ‘타인의 부정적 태도’를 빈번하게 느낄 위험이 있다고 예상된다(국가인권위원회, 2017).

국내 연구에서 고령자의 ‘경제적 부담’을 구조적 제약 중 가장 주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한 바와 같이(이영숙·박경란, 2009; 이려정·김병용, 2012) 고령자들은 인터뷰 동안 관광지 물가가 너무 비싸거나 관광상품 가격이 부담스럽다는 말을 자주 언급하였다. 이영숙·박경란(2009)은 고령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제적 제약을 크게 느낀다고 주장하였는데, 인터뷰에 참여한 고령자들은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제약을 느끼고 있어 경제활동 여부와 그로인한 소득, 그리고 경제적 제약 간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자들은 직장을 다니거나 손자 양육을 담당하고 있어 은퇴 이후 시간적 제약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일반적인 고령자와 달리 ‘시간 부족’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주말에 주로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지만 해당 시간에 운영하는 여가시설이 부족하여 ‘여가 프로그램의 부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액티브시니어는 경제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지만 탄탄한 노후준비 덕분에 ‘경제적 부담’과 ‘시간 부족’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여가시설로서 주거지 인근 복지관에 크게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Fleischer & Pizam(2002)의 연구에서 주장한 은퇴와 함께 시간 제약이 사라지고 소득은 최고조에 달하는 액티브 시니어의 전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10〉 고령자의 여가제약 조사결과

구분		관련 내용	선행연구
내재적 제약	-	-	-
대인적 제약	돌봐야 할 가족이 있음	우리 세대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세대였고 ... 자녀들, 손주들도 케어해야되는 세대 ... 여가라는 게 하고는 싫어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령자 D)	이영숙 · 박경란(2009)
	타인의 부정적 태도	불친절하고 좀 시선 이렇게 하고 그러면 불쾌하듯이. (고령자 A)	-
구조적 제약	경제적 부담	밥값하고 거의 비슷해. 우리들도 관광 가서 너무 비싸고. (고령자 A) 보통 여행가면 백단위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엄두를 못 내겠더라. (고령자 A)	Fleischer & Pizam(2002), Nyaupane, McCabe, & Andereck(2008), 이영숙 · 박경란(2009), 이려정 · 김병용(2012), Huber, Milne, & Hyde(2018)
	시간 부족	아직도 그런 문화센터를 이용할 만큼 한가하고 (그렇지 않지) (고령자 C) 응. 여유가 없지. 시간 여유가. (고령자 A)	-
	여가 · 관광 프로그램의 부족	문화센터는 진짜 시간이 안돼요. (고령자 A) 문화센터 보니까 다 주간이던데 뭐. 야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고령자 B)	김철원 · 김응상 · 정병욱 · 이태숙(2015)

〈표 4-11〉 액티브시니어의 여가제약 조사결과

구분		관련 내용	선행연구
내재적 제약	-	-	-
대인적 제약	돌봐야 할 가족이 있음	아버님이 요양병원에 계세요 이제는 그러기 때문에 안 계실 때는 모시고 살았지만, ... 그리고 손녀딸은 오후 1시45분부터 저녁 6시까지 케어하는거지, 쫓아다니면서 계속. (액티브시니어 A)	이영숙 · 박경란(2009)
구조적 제약	-	-	-

3) 영유아

장애인이나 고령자에 비해 영유아 여가제약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키즈 마케팅이나 영유아 동반 가족의 의사결정 관련 연구를 통해 그들이 경험하는 제약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구조적 제약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참고하여 영유아 보호자 대상 인터뷰를 실시하였는데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구조적 제약에 있어 다양한 어려움을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인적 제약으로 ‘타인의 부정적 태도’나 ‘조력자의 부재’를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4-12>과 같다.

인터뷰에 참여한 고령자와 액티브시니어가 내재적 제약을 크게 인지하지 않은 것과 유사하게 영유아도 여가·관광 참여에 있어 별다른 내재적 제약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뷰에 참여한 영유아 보호자들은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어 여가시간이 부족하고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자녀를 위해 키즈파크나 박물관과 같은 실내공간부터 공원이나 놀이터, 캠핑장 같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실외공간을 자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가 활동에 대한 영유아의 높은 선호와 욕구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영유아 보호자들은 대인적 제약으로 ‘타인의 부정적 태도’에 대해 자주 언급하였는데, 장애인들의 경험과 유사하게 “왜 어린애를 데리고 나와?”, 또는 “시끄럽다”와 같은 부정적 언사와 눈초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키즈로 운영되는 카페나 식당 등을 자주 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지은·이우진(2017)의 연구에서 영유아 보호자들은 자녀가 관광의 주체가 아닌 부모에게 동반된 객체로 여겨져 관광종사자나 다른 관광객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것과 유사하게 영유아들은 관광 약자로서 타인으로부터 존중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 야기된 ‘부정적 태도’가 영유아는 물론 영유아 보호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

반면 영유아는 발달장애인의 경우와 유사하게 가족의 존재가 대인적 제약이 아닌 촉진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선행연구에서 영유아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관광활동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고(Shuxia, 2018), 관광활동을 통해 자녀가 행복하다면 나도 행복하다고 말한 것과(Therkelsen, 2010)과 마찬가지로 영유아 보호자 B는 일을 하기 때문에 주말에 쉬고 싶지만 더 많은 걸 보여주기 위해 어디든 나가려고 한다고 응답했으며, 영유아 보호자 D 또한 직장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주말만이라도 자녀를 위해 모든 걸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아이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더욱 적극적으로 여가·관광에 참여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자녀의 수가 많거나 나이가 어릴수록 배우자의 도움 없이는 여가·관광 참여에 한계를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유아 보호자 B와 C는 모두 자녀가 2명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없을 경우 아이들과의 외출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으며, C는 특히 야외에서의 화장실

이용, 안전 등의 측면에서 배우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영유아 보호자 D는 자녀가 1명이기 때문에 배우자 없이도 외출은 가능하지만 본인이 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이가 어릴수록, 장거리로 이동할수록 배우자의 조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자녀의 여가·관광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부부 간에 상이할 수 있으며,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영유아 여가·관광의 대인적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예상된다. 그러나 태도와 별개로 직장생활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모가 경험하는 '시간 부족'이라는 구조적 제약이 영유아에게 대인적 제약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측된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영유아가 숙박, 편의시설 등과 관련한 구조적 제약을 경험하며 타 집단에 비해 다양한 범주에서 상세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한 결과와 동일하게 영유아 보호자들은 이동, 화장실, 식사메뉴, 놀이공간 등 여러 분야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영유아 보호자 A는 자녀가 영아 시절 때 기저귀교환대가 흔치 않아 개인차량에서 생리현상을 해결해야 했다고 응답했으며, 영유아 보호자 B는 유모차 대여 서비스의 나이제한으로 활용에 제약이 있다고 토로했다. 보호자들은 자녀들과 외출할 때 이동수단으로 개인차량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여가·관광지에 영유아를 위한 휴식공간, 화장실 편의시설, 수유실 등이 부족하고 개인차량이 이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보호자 C는 아이용 메뉴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식당에서 주로 판매하는 아이 메뉴가 돈가스에 한정되어 있고 이것만 반복해서 먹다보니 아이가 나중에는 돈가스를 싫어하게 됐다고 답했다. 영유아는 세부 연령에 따라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종류와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유식, 유아식, 성인식의 순서로 음식을 먹어야 하며, 아이가 성장했다라도 신체적 특성 상 자극적이거나 매운 음식은 먹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이를 고려한 메뉴 준비가 필요함에도 영유아 보호자 C의 경우와 같이 아이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 친편일률적인 메뉴를 준비함에 따라 영유아의 기본적 욕구 해결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을 위해 시설 건설을 요구하기 보다는 주민자치센터와 같은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여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해달라고 요구한 것과 유사하게 영유아 보호자는 아이들을 위한 대규모 놀이공간을 요구하기 보다는 소규모의 간단한 시설이라도 아이들에게 즐거운 놀이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놀이공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공원이나 놀이터에서도 영유아가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아이들을 위한 모래 놀이터를 강아지의 배변공간으로 활용하거나 킥보드 이용자로 인해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응답하여 영유아를 위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여가·관광 시설의 확대 필요성을 입증했다.

〈표 4-12〉 영유아의 여가제약 조사결과

구분		관련 내용	선행연구
내재적 제약	-	-	-
대인적 제약	타인의 부정적 태도	왜 어린이 데리고 나와? 이러시는 분도 있지만 (영유아 보호자 B) 밖에서 밥 먹는 시간이 즐거운 게 아니고 지옥 같은 거예요. ... 주변의 시선이랑 내 아이의 어떤 다른 사람에게 방해하는 그런 행동들이. (영유아 보호자 C)	임지은 · 이우진(2017)
	조력자 (배우자)의 부재	저는 사실 아빠 없는 날은 밖에 안 나가요. 쉽지 않아요. (영유아 보호자 C) 제가 운전을 못하니까 ... 남편이 없으면 제가 뭘 못해서 그걸 요즘 많이 느끼는데. (영유아 보호자 D)	-
구조적 제약	무장애 관광환경 부족 (인프라 측면)	화장실, 그리고 변기, 안고 해야 돼요. 왜냐면 유아용 변기가 없는데 가 많으니까. ... 화장실 같은 경우가 저는 가장 불편하더라고요. (영유아 보호자 B) 쇼핑 같은 걸 갈 때도 유모차 대여가 이제 나이제한이 있어서 (영유아 보호자 B) 동물원 같은데도 별거 아닌데 미끄럼틀 같은 거 있으면 꼬맹이들은 거기 줄 서 있거든요. (영유아 보호자 B)	Therkelsen(2010), Backer & Schanzel(2013), 전미화 · 조재경(2015), ÖZEL(2015), Khoo-Lattimore et al(2015), 임지은 · 이우진(2017), Khoo-Lattimore et al(2018)
	영유아 메뉴 부족	저희애가 항상 식당가면 아이용은 돈가스니까 돈가스를 특히 싫어해요. (영유아 보호자 C)	ÖZEL(2015)

4) 대상별 비교분석

인터뷰 내용에 기초한 각 집단의 여가제약을 비교분석한 결과 지체장애인은 제약의 모든 범위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언급했으며, 발달장애인 또한 내재적, 대인적, 구조적 제약을 모두 경험하지만 지체장애인에 비해 각 요소별로 인지하는 제약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와 액티브시니어, 영유아는 내재적 제약을 크게 느끼지 않았으며, 액티브시니어는 대인적 제약을 일부 느낄 뿐 내재적 제약이나 구조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으로 확인됐다.

내재적 제약에 있어 지체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은 동일하게 ‘(낮선 곳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토로했는데, 지체장애인은 신체적 한계로 인해 위험 발생 시 대처능력이 떨어 지므로 낮선 곳을 가기가 무섭다고 답했으며, 발달장애인들은 ‘낮선 곳에 대한 두려움’이 해당 장애유형이 지닌 고유의 특성 중 하나로 여가·관광에만 적용되기보다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작용하는 제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체장애인은 ‘두려움’ 외에도 ‘타인에 대한 미안함’과 ‘심리적 위축’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발달장애인 보호자는 여가·관광 활동의 내재적 제약으로서 ‘심리적 위축’에 대해 언급하진 않았지만 반복학습을 통해 스스로 버스를 탈 수 있게 된 발달장애인이 대인적 제약 중 하나인 ‘타인의 부정적 태도’를 경험할 경우 학습결과를 모두 상실할 수 있다고 답했다.

지체장애인 또한 ‘타인의 부정적 태도’를 자주 언급했으며, 비장애인의 부정적 언어나 눈초리를 경험하면서 비장애인과 활동의 포기했다는 점을 참고할 때, 장애인들이 공통적으로 ‘타인의 부정적 태도’라는 대인적 제약을 자주 경험할 경우 ‘심리적 위축’과 같은 내재적 제약의 발생 확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타인의 부정적 태도’는 장애인 외에 고령자와 영유아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장애인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만 ‘타인의 부정적 태도’가 언급된 것과 다른 결과로 고령자는 이러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영유아는 장애인과 유사하게 ‘시끄럽다’거나 ‘어린애를 왜 데리고 나왔느냐’ 등의 직접적인 언어표현과 따가운 시선을 자주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체장애인과 영유아는 대인적 제약 중 하나로 ‘조력자의 부재’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지체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할수록 가족이나 봉사자 등 조력자 부재 시 여가·관광 참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는 주로 가족단위로 여가를 즐기고 있는데, 부모 중 1인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가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끼거나 야외활동을 포기한다고 응답했다.

고령자와 액티브시니어는 이영숙·박경란(2009)의 연구에서 언급한 ‘돌봐야 할 가족의 존재’로 인해 대인적 제약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노부모 공양과 손자녀 양육으로 인해 여가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부모님의 거처가 바뀌거나 손자녀의 성장과 함께 이러한 대인적 제약이 점차 해소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인적 제약은 주로 ‘여가·관광 프로그램의 부족’, ‘경제적 부담’, ‘무장애 관광환경 부족’이 언급되었는데, 지체장애인과 발달장애인, 고령자는 공통적으로 자신들의 수준과 시간에 맞는 여가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장애유형별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주로 주중에만 운영하기 때문에 지체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모두 이용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고령자 또한 주변 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이 주로 주중에만 운영되어 참여에 한계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체장애인과 고령자는 동일하게 ‘경제적 부담’을 높이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류성옥·오치옥·이훈(2012)의 연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장애인은 개인이 지닌 신체적·정신적 한계로 인해 취업이 어렵고, 보조금이나 수당과 같이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또한 이력정·김병용(2012)의 연구와 같이 경제적 부분에서의 관광제약을 매우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터뷰에 참여한 고령자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액티비시니어는 모두 은퇴 준비를 잘 마쳤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발달장애인과 영유아 보호자는 주어진 여건에 맞춰 여가·관광을 즐기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구조적 제약으로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체장애인은 단순히 길을 걸거나 화장실을 가는 등 평범한 일상생활에서도 무수한 장애물을 만난다고 강조했으며, 숙소나 식당 등을 가도 지체장애인을 위한 안전시설이 제대로 마련된 경우가 많지 않다고 응답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할수록 구조적 제약은 더욱 심해지는데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은 장거리 이동 시 리프트가 설치된 특수차량이 필요하지만 차량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동에서부터 한계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보호자는 아이들을 위해 수유실, 기저귀교환대, 놀이공간 등 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이러한 시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 개인차량에서 생리현상을 해결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보호자는 아이들의 식사 메뉴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대부분의 식당에서 아이 메뉴에 대한 고민 없이 돈가스를 준비함에 따라 반복해서 먹은 자녀가 이를 싫어하게 됐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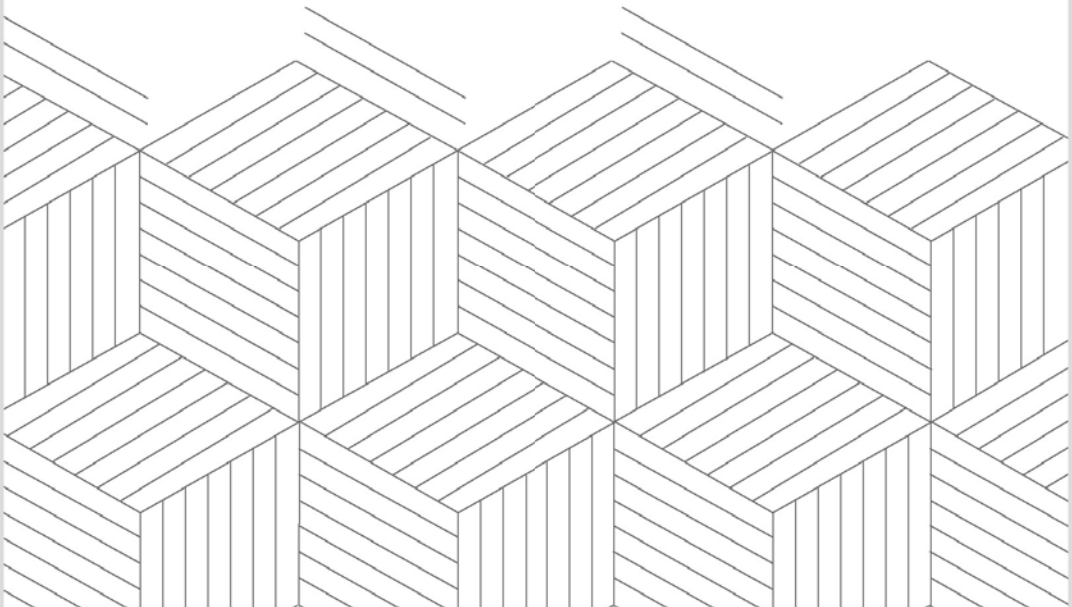
대상별 비교분석을 통해 각 집단 별로 인지하는 여가제약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확인하였는데, 각 대상이 경험하는 제약이 유사하더라도 집단 별 특성에 따라 제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다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또한 상이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 관광약자의 제약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각 대상의 특성을 이해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하여 공동으로 적용가능한 방안과 개별적인 방안을 각각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4-13〉 대상별 조사결과 비교분석

	지체장애인	발달장애인	고령자	액티브시니어	영유아
내재적 제약	(낮선 곳에 대한) 두려움	(낮선 곳에 대한) 두려움			
	타인에 대한 미안함		-	-	-
	심리적 위축				
대인적 제약	타인의 부정적 태도	타인의 부정적 태도	타인의 부정적 태도		타인의 부정적 태도
	동반자(조력자·가족) 부재		돌봐야 할 가족이 있음	돌봐야 할 가족이 있음	조력자(배우자)의 부재
구조적 제약	여가·관광 프로그램의 부족	여가·관광 프로그램의 부족	여가·관광 프로그램의 부족		
	경제적 부담		경제적 부담		
	무장애 관광환경 부족 (숙소, 식당, 화장실 등)			-	무장애 관광환경 부족 (화장실, 놀이시설 등)
	이동의 어려움				영유아 메뉴 부족
	정보 접근의 한계				

제5장 결론

제1절 종합분석
제2절 정책 제언



제5장 결론

제1절 종합분석

1. 연구 분석

과거로부터 관광 약자의 관광은 주로 지체장애인 중심의 ‘장애인 관광’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산업이 아닌 복지의 일환으로 약자를 위한 시혜적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체장애인 뿐 아니라 고령자, 영유아와 같이 대상의 범위를 확대한 ‘무장애 관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장애인 관광’과 달리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등 각기 다른 대상의 교집합을 활용해 이들의 제약 상태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함께걸음, 2018.02.21.).

정부는 2015년부터 관광약자를 위한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또한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계획(2017)을 수립했고, 경기도에서도 2019년 「경기도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새로 개정하는 등 관련 정책을 실현 중에 있지만 이러한 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률을 검토한 결과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내 ‘관광활동의 차별금지(제24조의 2)’ 조항을 통해 장애인들의 관광권리를 인정한 반면 영유아나 고령자 등 그밖에 약자에 대한 법률적 보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무장애 관광’ 관련 사업들도 관광약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세부 내용은 ‘장애인 관광버스 도입’, ‘장애인 여행 지원’, ‘휠체어 경사로 안전바 설치’와 같이 지체장애인 위주의 물리적 개선 사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자와 영유아를 직접 대상으로 한 사업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서울시에서 발간한 ‘배리어프리 관광상품 개발 가이드북’ 또한 ‘무장애 관광’을 목표로 하지만 지체장애인의 시각에서 작성한 자료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보유여부’, ‘장애인 객실 이용 가능여부’ 등을 확인했을 뿐 ‘영유아를 위한 수유실이나 기저귀교환대’, ‘고령자를 위한 휴식공간’에 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관광약자의 교집합을 활용한다는 무장애 관광의 목표와 달리 국내 무장애 관광 사업들이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물리적 환경 개선에 중심을 두는 이유는 장애인이 편한 환경은 누구에게나 편하다는 인식과 물리적 편의성이 절실한 휠체어 장애인들의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져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체장애인을 무장애 관광의 기준 값으로 삼아 장애인 편의 시설, 장애인 관련 환경의 편의성 확장이 강조되어 왔는데(함께걸음, 2018.02.21.), 독일의 국립박물관에서는 지체장애인 뿐 아니라 청각, 시각장애인을 위한 해설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고령자를 위한 가이드 투어, 영유아 놀이공간을 각각 마련하는 등 관광약자 별 세부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관광환경을 조성하였다. 또한 독일 관광청에서는 관광시장으로서 ‘무장애 관광’의 수요와 필요성을 인지하여 홈페이지에 지체, 청각, 시각, 인지기능장애 등 장애유형별로 자신에게 맞는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지체장애인을 기준으로 한 물리적 개선 위주의 국내 무장애 관광 사업은 유모차를 이용하는 영유아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나아가서 일반 성인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편적인 관광환경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국외 사례와 같이 각 대상의 세부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환경을 조성하고 물리적 공간 뿐 아니라 콘텐츠와 정보까지 아우르는 무장애 관광환경으로의 발전 없이는 영유아와 고령자에 대한 소외와 소프트웨어측면의 관광환경 부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장애인 관광’에서 ‘무장애 관광’으로의 전환과 의미 실현을 위해 관광 약자 전체를 아우르는 관광환경 조성을 목표로 ‘수원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방향’ 도출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를 주요대상으로 삼아 수원시의 관광약자 관련 정책 및 현황을 파악하고 선행연구 분석과 관광약자 대상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이 느끼는 여가·관광 제약요인을 확인하였다. 또한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가 인지하는 여가·관광 제약 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해 교집합을 활용한 공통의 방안과 각 대상별 맞춤형 방안을 각각 도출하였다.

수원시는 국내 광역·기초 지자체 중 최초로 고령자·아동·여성 친화도시로 모두 인증을 받은 곳이자 장애인 친화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장애인복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광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조성에 대한 다방면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 사업에 ‘장애물 없는 안전 환경 구축’, ‘문화·여가권 보장’(장애인복지 5개년 기본계획), ‘고령자 사회복지시설 지원’과 ‘교통약자 배려환경 지원’(고령친화도시), ‘문화공간 확보’, ‘안전 강화’(아동친화도시) 등의 사업을 제시함에 따라 수원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수원시의 대표 관광자원인 수원화성을 대상으로 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사 결과 관광약자가 이용하기에 구조적·물리적 제약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화성 일대 화장실에 관광약자를 위한 다목적화장실이나 영유아를 위한 기저귀교환대 등이 설치되어 있지만 입구에 턱이 있어 휠체어 이용자의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영유아 편의시설의 안전장치가 파손되어 있고 청결상태가 불량하여 실제 사용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다.

관광약자들이 지역의 여가·관광환경 현황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2차 자료를 확인한 결과 영유아 > 고령자 > 장애인 순으로 수월 관광환경을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간의 인식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한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각각 상이한 설문문항을 기준으로 진행한 개별연구 결과를 비교했기 때문에 상호비교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무장애 관광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초가 되는 여가·관광의 제약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장애인과 고령자, 영유아의 여가제약을 확인한 결과 각 집단이 보유한 신체·정신적 특성으로 인해 일반 성인(비장애인)이 경험하는 여가제약과는 차별화되는 제약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은 내재적 제약으로 ‘관광권리에 대한 장애인 스스로의 인식’과 ‘장애에 대한 인정과 수용’, ‘신체적·심리적 의존성’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McKercher, Packer, Yau, & Lam, 2003; Yau, Mckercher, & Packer, 2004), 고령자들은 신체와 관련된 ‘건강 제약’을 크게 인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Fleischer & Pizam, 2002; 이유리·박미석, 2005; Nyaupane, McCabe, & Andereck, 2008; 김철원·김응상·정병욱·이태숙, 2015; 김미경·김지은, 2017; Huber, Milne, & Hyde, 2018).

대인적 제약 차원에서 장애인은 ‘타인의 부정적 태도’ 나 ‘가족의 염려와 반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McKercher, Packer, Yau, & Lam, 2003; Yau, Mckercher, & Packer, 2004; Devile & Kastenholz, 2018; Gassiot, Prats, & Coromina, 2018), 고령자는 남편, 아들, 며느리 등 가족의 이해가 부족(반대)하거나 집안일이 많아서 또는 돌봐야할 가족의 존재로 인한 제약을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영숙·박경란, 2009). 반면 영유아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관광활동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고(Shuxia, 2018), 관광활동을 통해 자녀가 행복하다면 나도 행복하다고 말했다는 점에서(Therkelsen, 2010), 가족이 관광의 촉진요인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고 추측된다.

장애인은 내재적·대인적 제약에 비해 ‘물리적 시설’과 ‘경제적 부담’과 관련된 구조적 제약을 가장 크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봉구·안선희·이유하·공주, 2008; 박승현·이영진, 2011; 류성욱·오치욱·이훈, 2012; Devile & Kastenholz, 2018), 고령자도 이와 유사하게 시설과 비용 측면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영숙·박경란, 2009; 이려정·김병용, 2012). 반면에 기존 고령자와 달리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높은 소득과 자산을 가지고 있는 액티브 시니어(한상철, 2013)는 구조적 제약을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Fleischer & Pizam, 2002), 기존 고령자층과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영유아는 장애인과 고령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숙박, 편의시설 등으로 인한 제약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타 집단에 비해 안전과 위생을 강조하였으며, 아이들의 식사, 수면,

체험활동 등 다양한 범주에서 상세한 요구사항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Therkelsen, 2010; Backer & Schanzel, 2013; 임지은·이우진, 2017)

장애인과 고령자, 영유아 여가제약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세 집단 모두 구조적 제약을 크게 인지하고 있으며, 대인적 제약 중 가족과의 관련성이 높은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장애인은 시설(정보) 부족, 고령자는 경제적 부담, 영유아는 안전과 위생을 강조했다. 이 점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가족과의 관련성 부분에 있어서도 장애인과 고령자는 가족들의 염려 또는 반대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만 영유아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여가·관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아이의 행복에서 본인의 행복을 느낀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방향의 기준이 될 관광약자 별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장애인 연구는 이동에 제약이 있는 지체장애인 또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으며, 고령자와 관련한 국내 연구에서는 최근 등장한 액티브시니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또한 영유아의 경우 여가·관광 제약을 목적으로 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워 마케팅이나 의사결정 관련 연구를 통해 제약을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를 기초로 지체장애인, 발달장애인(보호자), 고령자, 액티브시니어, 영유아(보호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그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여가·관광 제약을 파악하고 집단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했다. 또한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이전 연구에서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제약들을 확인하여 수원시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

조사 결과 지체장애인은 내재적·대인적·구조적 제약 전체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토로했으며, 발달장애인 또한 모든 범위에서의 제약을 경험했으나 지체장애인에 비해 각 요소별로 인지하는 제약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와 액티브시니어, 영유아는 내재적 제약을 크게 느끼지 않았으며, 액티브시니어는 대인적 제약을 일부 느낄 뿐 내재적 제약이나 구조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으로 확인됐다.

발달장애인은 ‘타인의 부정적 태도’를 경험할 경우 반복학습을 통해 익힌 행동을 모두 상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체장애인 또한 비장애인의 부정적 언어나 눈초리를 경험하면서 비장애인과 활동의 포기했다는 점을 참고할 때, 장애인들이 공통적으로 ‘타인의 부정적 태도’라는 대인적 제약을 자주 경험할 경우 ‘심리적 위축’을 경험할 위험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행연구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타인의 부정적 태도’만을 언급한 것과 달리 인터뷰에서는 고령자와 영유아(보호자)도 ‘타인의 부정적 태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체장애인과 영유아는 공통적으로 ‘조력자의 부재’라는 대인적 제약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증의 지체장애인일수록 가족이나 봉사자 등 조력자가 없을 경우 여가·관광

참여에 한계가 있었으며, 영유아는 부모 중 1인이 여가·관광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가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끼거나 야외활동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유아 보호자와 발달장애인 보호자는 공통적으로 자녀의 여가·관광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가 높기 때문에 제약보다는 주로 촉진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영유아와 발달장애인 보호자는 체력적·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자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발달장애인 보호자는 자녀가 영유아시기를 지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24시간 함께해야하기 때문에 체력적 부담이 높아 여가·관광 참여에 있어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고령자와 액티브시니어는 이영숙·박경란(2009)이 주장한 ‘돌봐야 할 가족의 존재’로 인해 대인적 제약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공통적으로 노부모 공양과 손자녀 양육으로 인해 여가시간 부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노부모의 거처를 요양병원으로 옮기고 손자녀가 성장하여 학교를 다닌 후에 여가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자녀와 부모로서 수행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방안이 있다면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조적 제약으로는 ‘여가·관광 프로그램의 부족’, ‘경제적 부담’, ‘무장애 관광환경 부족’을 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체장애인과 발달장애인, 고령자는 자신들의 수준과 시간에 맞는 여가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지체장애인은 교통편, 편의시설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유아 보호자는 아이들을 위해 수유실, 기저귀교환대, 놀이공간 등의 개선과 아이들을 고려한 먹거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2. 연구 시사점

이상의 연구를 기초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과 고령자, 영유아를 포괄하는 통일된 여가·관광 통계 조사가 필요하다. 선행 연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각 집단의 제약요인을 파악했으며, 집단 별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지만 이는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의미가 있을 뿐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목표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광약자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 정확한 실태분석이 필요하다. 현재 수원시에서 관광약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수원시 아동친화도 조사(이영안, 2018)’,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추진전략(수원시, 2016)’와 같이 타 분야 연구의 한 요소로서 관광에 대해 문의한 것이 대부분으로 관광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어려움과 욕구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연구별로 각각 상이한 설문문항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상별 비교분석을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이에 기초하여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공통방안과 대상별 맞춤형 방안 도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수원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통해 관광약자의 여가·관광 참여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정책 실현에 앞서 관광약자를 대상으로 한 통계를 실시하여 그들의 현황과 제약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해당 통계가 일회성 조사로 그치지 않고 매년 진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여 관광약자의 여가·관광 제약들이 개선되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약자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해야 한다. 선행연구와 인터뷰를 통해 지체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뿐 아니라 고령자와 영유아까지 '타인의 부정적 태도'라는 대인적 제약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체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은 비장애인으로 부터의 폭력적인 언사와 부정적인 눈초리를 자주 경험한다고 응답했다. 장애인들이 '타인의 부정적 태도'를 반복해서 경험함에 따라 내재적 제약인 '심리적 위축'이 발생하여 여가·관광을 포기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바 관광 약자에 비장애인의 인식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고령자와 영유아 관련해서도 최근 한국사회가 노인층에 대한 청장년층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세대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높으며(국가인권위원회, 2017), 노키즈존으로 대표되는 영유아(보호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경험하는 '타인의 부정적 태도'가 갈수록 심화될 위험이 높다. 따라서 관광약자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운동이나 관련 교육 등을 진행하여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가 여가·관광에 참여하는데 있어 '타인의 부정적 태도'로 고통 받지 않을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수원시 대표 관광지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한 '무장애 관광구역 조성'이 필요하다. 조사를 통해서 지체장애인은 교통이나 화장실 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마련이 필요하며, 영유아는 기저귀교환대, 영유아용 변기, 수유실, 놀이공간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인프라 측면의 개선은 충분한 예산과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표자인 수원화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수원시 전역으로 점차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경우 실수요자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사업대상지 전체의 환경 개선을 실시한다면 오류로 인한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관광약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수원형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기반이 되는 수원시 조례 제정이 요구된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무장애 관광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률상에서 이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책의 흐름을 점검하고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수원시에서 관광약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탄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수원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해당 조례에 '관광약자 여가·관광 통계', '인식 개선 운동', '시범 사업' 등에 대해 명시함으로써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추진할 원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수원시가 관광 약자를 위해 추진해왔던 친화 도시사업이나 장애인 관련 계획들에서 산발적으로 진행해왔던 '무장애 관광' 관련 정책이 관광분야에서 통합되어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본 연구는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모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대상 별 여가제약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집단 간 유사점 및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발달장애인이거나 액티브시니어, 영유아의 여가제약 파악에 한계가 있어 각 집단의 제약요인을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지체장애인, 발달장애인(보호자), 고령자, 액티브 시니어, 영유아(보호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선행연구와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장애유형이 2000년 5종에서 10종, 2003년 10종에서 다시 15종으로 확대됐다는 것을 고려할 때 여전히 전체 관광약자 중 일부(지체장애, 발달장애)의 의견만을 확인했으며, 시각장애나 청각장애, 언어장애인 등의 제약은 파악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영유아 여가제약에 대한 선행연구가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어 마케팅이나 의사결정 등의 연구를 통해 제약을 간접적으로 확인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영유아(보호자) 대상 인터뷰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와 실제 제약에 일부 차이가 있을 우려가 있다.

서울시에서는 '배리어프리 관광상품 개발 가이드북'의 일환으로 주요 무장애 코스(배리어 프리 6)를 개발하면서 6인의 장애인 자문위원(지체장애인 3인, 시각장애인 3인)과 함께하는 등 실 수요자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노력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수원화성의 무장애 관광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하면서 연구진만 참여하였기 때문에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보호자)가 느끼는 무장애 관광 실태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인터뷰를 통해서 각 계층의 의견을 수용하고자 했으나 연구 전 과정에 있어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지체장애인 중심의 무장애 관광 논의를 발달장애인과 고령자(액티브 시니어), 영유아까지 확대했으며, 각 대상의 여가제약을 상호 비교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이에 기초하여 수요자 욕구를 고려한 정책 방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연구를 통해 다양한 장애유형, 임신부, 더 나아가서는 외국인 관광객 등을 아우르는 무장애 관광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2절 정책 제언

1. 각 집단을 포괄하는 여가·관광 통계 실시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추진전략(수원시, 2016)’, ‘수원시 아동친화도 조사(이영안, 2018)’ 등 수원시에서 추진한 기존 연구를 통해 관광약자의 여가·관광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각 연구는 관광을 주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연구의 일부분으로 여가·관광에 대해 문의한 것이기 상세한 실태 파악이 어렵다. 또한 장애인의 경우 여가·관광에 있어 인지하는 제약에 대해 문의하였지만 고령자나 영유아는 ‘수원시에 늘려야하는 공공편의시설’, ‘지역 내 아동이 놀 공간’ 등에서만 문의했기 때문에 관광약자를 위한 여가·관광 개선사항 파악이 어렵고, 집단 별로 상이한 통계를 실시함에 따라 비교를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수원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관광약자를 대상으로 한 통합된 통계 수행을 위해 <표 5-1>과 같이 ‘여가·관광 참여 현황’, ‘여가·관광 만족도’, ‘여가·관광 제약’ 등으로 구성된 설문지(안)를 제시하는 바이다. 해당 통계는 문체부에서 수행하는 ‘국민여가활동조사’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실태조사’, ‘노인실태조사’,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참고하였으며, 여가·관광 제약과 관련한 선행 연구 및 인터뷰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설문문항은 장애인과 고령자, 영유아를 포괄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질문들로 구성하였는데 현재 여가·관광 참여 현황과 만족도, 여가·관광의 어려움 등에 대해 문의함으로써 관광약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방향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조사는 ‘수원시 무장애 관광 조례(가안)’에서 보장한 통계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연간 현황과 장기간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의 경우 만 0~8세는 보호자가 대리 응답하였으며 만 9~18세 미만 아동에 한해 본인이 직접 응답하고 있다. 이처럼 영유아와 발달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한계로 본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보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신체장애인과 고령자는 본인에게 설문조사를 하되 신체적 한계로 인해 문항을 읽거나 글을 쓰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설문조사원이 보조하거나 보호자의 도움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조사를 통해 행정구역별로 관광약자 분포 및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무장애 관광사업의 지역별 우선순위와 세부 사업내용을 선정할 수 있고, 선행연구에서 확인이 어려웠던 발달장애인의 여가·관광 제약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관광 약자의 여가·관광 실태를 통합한 국내 최초의 통계로서 가치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5-1〉 수원시 관광약자 여가·관광 실태조사 설문지(안) 구성항목

항목		세부문항
여가·관광 참여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시간 - 여가활동 목적 -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 - 가장 만족스러운 여가활동 - 여가·관광 소요 비용 - 여가·관광 주요 동반자
여가·관광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방문하는 여가·관광 시설 - 시설에 대한 만족도
여가·관광 제약(어려움)	내재적 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선 곳에 대한) 두려움 - 타인에 대한 미안함 - 심리적 위축
	대인적 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의 부정적 태도 - 조력자의 부재 - 돌봐야 할 가족이 있음
	구조적 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관광 프로그램의 부족 - 경제적 부담 - (숙소, 식당, 화장실 내) 편의시설 부족 - 정보 접근의 어려움 - 이동의 어려움
응답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 연령 - 거주지 - 학력 - 월평균 가구 소득

2. 관광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 실시

관광약자 심층 인터뷰 결과 장애인과 고령자, 영유아 모두 여가·관광에 있어 ‘타인의 부정적 시선’을 느꼈을 뿐 아니라 “저 언니는 느리잖아” 또는 “부모가 오냐오냐 키워서” 등의 부정적 언어표현도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될 경우 ‘심리적 위축’이란 내재적 제약까지 경험할 위험이 높아 관광약자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인식 개선이 요구되는 바이며, 본 연구에서는 ‘관광약자의 신체적·심리적 한계의 이해와 수용’, ‘관광약자의 관광 권리 인정’ 측면에서의 개선을 제안한다.

‘관광약자의 신체적·심리적 한계의 이해와 수용’은 관광약자의 신체적·심리적 한계를 이해하고 그들의 행동 특성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장애인에게 여담이문이나 도로 위의 경계석은 방해가 되지 않지만 지체장애인이나 고령자에게는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하여 건강 상태가 나쁠수록 턱 하나에도 이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발달장애인이나 영유아가 산만하게 움직이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은 비장애인 시각에서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것은 연령과 건강상태에서 기인한 특성이며, 반복학습으로도 수정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관광약자의 모습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비장애인들의 태도가 없다면 관광약자들은 지속적으로 ‘타인의 부정적 태도’를 경험할 것이다. 비장애인이 기준이 되는 사회에서 관광약자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물리적 환경 개선 및 배려는 수혜적인 복지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이며, 그들의 신체적·심리적 한계는 비장애인 시각에 맞춰 수정할 수 없는 그들의 특성이라는 것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식할 때 관광약자가 경험하는 ‘타인의 부정적 태도’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약자의 관광권리 인정’은 인간의 권리로서 누려야 할 ‘관광’은 비장애인 뿐 아니라 관광약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인식을 모두가 갖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관광을 먹고 노는 ‘사치’의 영역으로 간주했으며, 사회복지에서는 관광을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로 간주해 왔지만(함께결음, 2018.04.16.), 201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내 ‘관광활동의 차별금지’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장애인들의 ‘관광할 권리’를 인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인터뷰를 통해 영유아 가족이 “왜 어린애 데리고 나와?” 라는 표현을 듣거나 특수학교에서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 자녀를 수련회에 보내지 말라고 회유를 하는 등 여가·관광 참여에 있어 타인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광’은 비장애인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관광약자들도 버스나 기차를 타고 관광지에 가서 체험을 하고 색다른 음식을 맛볼 수 있으며 친구, 가족들과 추억을 쌓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통편의 개선, 식당 내 편의시설 마련 등이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관광약자들도 관광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사회 내의 보편적

인식과 인정이 있어야만 관광약자들이 ‘타인의 부정적 태도’로부터 자유롭게 관광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3.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한 ‘관광약자 별 맞춤형 설정(zoning)’

관광약자에 대한 선행연구와 인터뷰를 통해서 이들이 단순 이동부터 숙소, 식당, 화장실 등 각종 시설 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은 화장실의 입구가 좁거나 식당 입구에 계단이 있으면 해당 시설 이용을 포기해야하기 때문에 이들의 관광권리를 위해 물리적 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공공화장실의 경우 관리 주체인 지자체에서 개선을 할 수 있지만 식당이나 숙소와 같이 상업시설은 민간 영역에 속해있는 경우가 많고, 경사로 설치 등은 사업주들의 재량에 맡겨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의 시설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수원시 전역의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최종 목표로 하되 수원시 대표 관광지인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하여 ‘관광약자 별 맞춤형’을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수원화성은 도시를 보호하고 전쟁에 대비한 공격·방어용 시설이기 때문에 가파른 계단이 있거나 보행로의 폭이 좁은 등 물리적 제약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관광자원 이전에 보전해야 할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경사면이나 계단 등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개선 가능범위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장조사 결과 화성행궁 주변과 연무대~창룡문 구간에 광장과 잔디밭이 조성되어 있으며 화장실, 수유실, 매점 등의 편의시설이 근접하고 주차장도 비교적 가까워 관광약자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장안문은 성문 안팎을 연결하는 통행로이자 주변에 장안공원과 화서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고령자의 이용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맞춤형 영역을 각각 설정하고 구조적 제약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각자의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도로, 화장실, 휴식공간, 놀이시설 등의 시설개선이 요구된다. 수원화성 주변의 숙소, 식당, 카페와 같은 상업시설의 경우 사업주들과의 논의를 통해 관광약자의 이용가능 여부와 관련 시설 설치 여부 등을 파악하여 출입구 경사로, 영유아용 편의 시설(영유아용 침대, 의자 등), 시설 내 안전장치, 지체장애인 시각에 맞춘 샤워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비용의 문제로 인해 민간영역에서의 개선이 어려울 경우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지자체차원에서 비용을 일부 지원 등의 방안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숙소의 경우 수원시에서 ‘수원호스텔’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관광약자 특화 숙소’로 활용하여 대상별 맞춤형 객실을 각각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설적인 개선 외에도 관광약자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이나 정보 제공이 필요한데 장애인과 고령자, 영유아를 위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보다는 기존의 프로그램을 지체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게 변형하거나 해설 프로그램을 고령자와 영유아의 시각에 맞춰 재구성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콘텐츠 개선이 가능하다. 정보 부분에 있어서는 수원시 전역을 대상으로 관광약자가 이용가능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확인한 후 관광약자 별 지도를 제작하여 관광안내소나 복지관, 보육기관 등에 비치하거나 수원시 관광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제공하는 방안을 활용할 수 있다.

4. 무장애 관광을 위한 수원시 조례 제정

수원시는 국내 광역·기초 지자체 중 최초로 고령자·아동·여성 친화도시로 모두 인증을 받았고, ‘장애인복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장애인친화도시로의 변모를 추진하고 있으며, 각 사업 내에 관광 약자의 여가·관광을 위한 세부사업을 수립하는 등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바탕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각 사업은 ‘관광’을 주요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친화도시 추진의 한 요소로서 다루지고 있으며 사업마다 주체가 상이하기 때문에 업무 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높다.

따라서 관광이라는 틀 안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원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이 요구되며, 본 연구에서는 <표 5-2>와 같이 ‘수원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시한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라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참고하였으며, ‘관광약자 여가·관광 통계’, ‘인식 개선 운동’, ‘시범 사업’에 대해 명시함으로써 개별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 관련 정책의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였다.

수원시에서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수원시 무장애관광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해당 계획에는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 관광콘텐츠 발굴, 정보 확충, 관광약자에 대한 인식개선 운동 등이 포함된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앞서 ‘수원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기존 조례에서는 관련 전문가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수원시 조례(안)’에는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등 관광약자 관련자 또한 위원회로 구성할 것을 명시하였다.

〈표 5-2〉 수원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수원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 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2.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장애 관광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수원시민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관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원시 무장애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무장애관광을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
2. 관광약자 관광활동 지원방안
3. 무장애관광 관광콘텐츠 발굴 및 육성
4. 무장애관광 정보 확충
5. 관광약자에 대한 인식개선 운동
6. 그 밖에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관광복지에 필요한 사항

제6조(관광통계) 시장은 관광약자의 여가·관광 현황 및 제약을 파악하고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효과적으로 시행하여 관광약자 관광향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수원시 관광약자 대상 통계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무장애관광환경조성 및 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 및 지원에 따른 제도개선과 사업추진 자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관광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수원시 문화체육교육국장, 도시개발국장, 안전교통국장, 복지여성국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관광, 사회복지, 교통, 건축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6명 내외,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등 관광약자 관련자 6명 내외로 시장이 위촉한다.

제8조(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수원시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간사가 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밖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사업) 시장은 수원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무장애관광 조성 시범사업
2.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3. 무장애관광 실태조사
4. 무장애관광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5.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활동 지원
6. 무장애관광 정보제공
7. 무장애관광 전문인력 양성
8. 특장차량 임대를 통한 관광약자 여행 이동편의 지원
9. 관광·교통사업자 인식개선 교육
10.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도내 시·군, 관광관련 전문기관, 민간단체, 관광사업자, 관광약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개선 및 관광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 사업자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은 이 조례 제11조에 따라 수원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사업으로 본다.

| 참고문헌 |

〈국문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2017). 노인인권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
- 김광모(2014). [조례][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약자의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아름다운 경관을 완성해가는 제주, 월간 공공정책 103: 94-95.
- 김남진(2017). 수원시 문화관광시설의 교통약자 접근성 개선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 김미경·김지은(2017). 노인들의 여가제약이 여가만족 및 삶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 32(8): 91-109.
- 김병용·조광익(2019). 관광학원론, (주)한울출판사.
- 김철원·김응상·정병옥·이태숙(2015). 시니어 관광 제약요인에 관한 인식 차이 연구, 관광레저연구 27(12): 533-551.
- 글레스넨, C.(2008). 질적 연구자 되기, Glesne, C., Becoming Qualitative Researchers(안혜준 역), 아카데미프레스.
- 류성옥·오치옥·이훈(2012). 장애인의 관광활동 제약 협상과정, 관광학연구 36(1): 287-305.
- 류성옥·이영진·박승현(2011). 복지관광 프로그램 참가 장애인의 관광제약요인과 촉진요인 분석,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구 중복·지체부자유아교육) 54(3): 177-203.
- 메이슨, J.(2010). 질적 연구방법론, Mason, J., QUALITATIVE RESEARCHING(김두섭 역), (주)나남.
- 문화관광부(2006). 무장애 관광레저도시 조성방안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2008). 장애인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접근성 조사와 전략방안,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장애인편의시설추진시민연대.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년도 열린관광지 사업 공모.
- 미래에셋은퇴연구소(2018). 5가지 키워드로 본 5060 세대의 가족과 삶.
- 박승현·이영진(2011). 장애유형에 따른 관광제약의 차이 분석: 지체, 시각, 청각 장애를 대상으로, 관광연구논총 23(1): 193-212.
- 박용수(2016).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추진전략, 수원시
- 박창석(2013). “관광진흥법”의 현황과 입법적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30(2): 41-56.
- 보건복지부(2018). 장애인현황.
- 서울특별시(2015). 서울시 배리어프리 관광상품 개발 가이드북.
- 서울특별시(2017). 서울시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계획.

- 선은애(2018). 영유아보육법상 영유아학대예방을 위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83: 223.
- 송미·윤희정(2019). 문화·관광분야 사회적 경제 조직간 협력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기여: 춘천시 사회적 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관광연구저널 33(6): 5-17.
- 송화성(2017). 2017 수원 관광객 실태조사 및 동향분석, 수원시정연구원.
- 송화성(2018). 수원화성 성곽길 이용실태 및 개선방안, 수원시정연구원.
- 수원시(2017).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 엄서호(2018). 관광도 기술이다: 관광입문필독서, 일조각.
- 오찬교·박인아·장현(2014). 지체장애인의 여가활동 유형과 여가만족의 관계에 있어 여가제약의 매개효과, 한국장애인복지학 23: 27-46.
- 오훈성(2018). 고령층의 국내 관광 활성화 방향: 개념적 접근, 관광연구 33(8): 407-431.
- 윤채빈·박수정(2018). 직장인의 여가소비유형별 여가제약 연구, 여가학연구 16: 67-97.
- 윤혜진(2015). 노인여가 연구의 학문적 동향 및 연구 제언, 관광레저연구 27(7): 169-186.
- 이려정·김병용(2012). 노년층 특성 및 관여도와 관광제약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24(4): 441-460.
- 이봉구(2008). 관광 관련 제약요인이 장애인의 관광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Seligman 의 무력감이론의 적용, 관광학연구 32(2): 39-59.
- 이봉구·안선희·이유하·공주(2008). 장애유형에 따른 관광 제약요인 관광활동 참여 시 고려사항 차이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20(3): 7-24.
- 이상훈·고동완(2017). 생활공간의 관광지화에 따른 지역사회연대 변화 연구, 관광학연구 41(2): 139-161.
- 이영숙·박경란(2009). 노인의 여가제약, 여가활동참여와 생활만족도의 관계 분석, 한국생활과학회지 18(1): 1-12.
- 이영안(2018). 모든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위한 수원시 아동친화도 조사, 수원시정연구원.
- 이유리·박미석(2005). 시설거주노인의 여가프로그램 참여 제약요인에 관한 연구-무료양로시설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5(3): 41-58.
- 이인재·이훈(2006). 선행 여가행동과 관련된 제약연구의 비판적 고찰, 관광학연구 30(4): 339-357.
- 임지은·이우진(2017). 영유아를 동반한 관광객의 여행경험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한국외식산업학회지 13(1): 175-192.
- 전미화·조재경(2015). 국내호텔의 골드키즈 서비스 마케팅 사례 연구, 상품학연구 33: 59-68.
- 지현진·이철원(2003). 여가, 레크리에이션: 보편적 여가제약 척도의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2(5): 441-449.
- 진미정·한경혜·장미나·변주수(2012). 가족의 여가활동이 영유아기 및 학령초기 자녀의 발달에

- 미치는 영향 보령 베이비패널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356-356.
- 한국장애인개발원(2018). 장애인 여가활동증진을 위한 국내외 여행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한상철(2013). 진격의 5060세대, Active Senior를 주목하라, KAA Journal 7-8월호.
- 한연주(2017). 수원시 장애인복지정책 5개년 기본계획 연구, 수원시
- 행정안전부(2018). 주민등록인구통계.

〈영문 자료〉

- Backer, E., & Schanzel, H. (2013). Family Holidays_Vacation or Obligation. *Tourism Recreation Research*, 38(2), 159-173.
- Crawford, D. W., & Godbey, G. (1987). Reconceptualizing barriers to family leisure. *Leisure Sciences*, 9, 119-127.
- Crawford, D. W., Jackson, E. L., & Godbey, G (1991). A hierarchical model of leisure constraints. *Leisure Sciences*, 13(4), 309-320.
- Curtale, R. (2018). Analyzing children's impact on parents' tourist choices. *Young Consumers*, 19(2), 172-184.
- Devile, E., & Kastenholz, E. (2018). Accessible tourism experiences: the voice of people with visual disabilities. *Journal of Policy Research in Tourism, Leisure and Events*, 10(3), 265-285.
- Fleischer, A., & Pizam, A. (2002). Tourism constraints among Israeli seniors. *Annals of Tourism Research*, 29(1), 106-123.
- Gao, J., & Kerstetter, D. L. (2016). Using an intersectionality perspective to uncover older Chinese female's perceived travel constraints and negotiation strategies. *Tourism Management*, 57, 128-138.
- Gassiot, A., Prats, L., & Coromina, L. (2018). Tourism constraints for Spanish tourists with disabilities: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Documents d'anàlisi geogràfica*, 64(1), 49-71.
- Gibson, H. J. (2002). Busy travelers Leisure-travel patterns and meanings in later life. *World Leisure Journal*, 44(2), 11-20.
- Henderson, K. A., Stalnaker, D., & Taylor, G. (1987, May). Personality traits and leisure barriers among women. In fifth canadian congress on leisure research, Dalhousie University, Nova Scotia.
- Hubbard, J., & Mannell, R. C. (2001). Testing competing models of the leisure

- constraint negotiation process in a corporate employee recreation setting. *Leisure sciences*, 23(3), 145-163.
- Huber, D., Milne, S., & Hyde, K. F. (2018). Constraints and facilitators for senior tourism. *Tourism management perspectives*, 27, 55-67.
- Jackson, E. L., & Searle, M. S. (1985). Recreation non-participation and barriers to participation: Concepts, and models. *Loisir et Societe/Society and Leisure*, 8(2), 693-707.
- Jackson, E. L. (1988). Leisure constraints: A survey of past research. *Leisure Sciences*, 6, 47-60.
- Jackson, E. L., & Scott, D. (2005). Constraints to leisure (pp. pp-299). E. L. Jackson (Ed.). State College, PA: Venture Publishing.
- Kazeminia, Azadeh, Giacomo Del Chiappa, and Jafar Jafari. "Seniors' travel constraints and their coping strategies." *Journal of Travel Research* 54.1 (2015): 80-93.
- Kazeminia, A., Del Chiappa, G., & Jafari, J. (2015). Seniors' travel constraints and their coping strategies. *Journal of Travel Research*, 54(1), 80-93.
- Khoo-Lattimore, C., delChiappa, G., & Yang, M. J. (2018). A family for the holidays: delineating the hospitality needs of European parents with young children. *Young Consumers*, 19(2), 159-171.
- Khoo-Lattimore, C., Prayag, G., & Cheah, B. L. (2015). Kids on board: Exploring the choice process and vacation needs of Asian parents with young children in resort hotels. *Journal of Hospitality Marketing & Management*, 24(5), 511-531.
- Kozak, M., & Duman, T. (2012). Family members and vacation satisfaction: Proposal of a conceptual framework.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Research*, 14(2), 192-204.
- McKercher, B., Packer, T., Yau, M. K., & Lam, P. (2003). Travel agents as facilitators or inhibitors of travel: perception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Tourism Management*, 24(4), 465-474.
- Nyaupane, G. P., McCabe, J. T., & Andereck, K. L. (2008). Seniors' travel constraints Stepwis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urism Analysis*, 13(4), 341-354.
- Shuxia, W. (2018). Children Tourism Investigation and Analysis in Zhejiang Province, China. *Asia Pacific Journal of Multidisciplinary Research*, 6(3), 74-81.
- Smith, R. W. (1987). Leisure of disabled tourists: Barriers to travel. *Annals of Tourism Research*, 14(3), 376-389.

- Therkelsen, A. (2010). Deciding on family holidays. *Journal of Travel & Tourism Marketing*, 27(8), 765-779.
- Wade, M. G., & Hoover, J. H. (1985). Mental retardation as a constraint on leisure. *Mental retardation as a constraint on leisure.*, 83-110.
- White, D. D. (2008). A structural model of leisure constraints negotiation in outdoor recreation. *Leisure sciences*, 30(4), 342-359.
- Witt, P. A., & Goodale, T. L. (1981). The relationships between barriers to leisure enjoyment and family stages. *Leisure Sciences*, 4(1), 29-49.
- Yau, M. K. S., McKercher, B., & Packer, T. L. (2004). Traveling with a disability: More than an access issue. *Annals of tourism research*, 31(4), 946-960.
- Özel, Ç. H. (2015). Marketing to Children in Tourism Industry: Descriptive Analysis of Kid-Friendly Hotels' Practices in Turkey. In *Marketing Places and Spaces* (pp. 193-208). Emerald Group Publishing Limited.

〈기타 자료〉

- 굿뉴스, 2018.12.26. 제주도, 교통약자 위한 승차대 100개소 시설 개선.
- 동아일보, 2008.04.09. '차별금지법' 장애인 실질적 인권보호 계기로.
- 월페이퍼뉴스, 2017.04.05.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년, 장애인 인권 위해 법이 나아가야 할 길은?
- 함께걸음, 2018.02.21. 장애인 관광 vs. 무장애 관광.
- 함께걸음, 2018.04.16. 무장애 관광, 복지인가? 산업인가?
- 함께걸음, 2019.01.09. 우리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어떤 의미인가?
- SBS뉴스, 2018.04.22. [취재파일] 장애인도 여행 가고 싶다.
- Global Accessibility News. 2019.04.15. New Accessible Travel Database Announced by German National Tourist Board.

〈웹사이트〉

- 국립독일박물관 홈페이지(<http://www.deutsches-museum.de/>)
- 독일 관광청 홈페이지(<https://www.germany.travel/>)
- 순천만습지 홈페이지(<https://www.suncheonbay.go.kr/>)

Abstract



The Basic Research for the Establishment of a Barrier-Free Tourism Environment in Suwon

As 20% of city's population is composed of the disabled, elderly, and infants/toddlers, Suwon city has the highest disabled population among the cities and counties in Gyeonggi-do, and the highest number of infants/toddlers in the nation's lower-level local governments (as of 2018). Reflecting its population status and the needs of its citizens, Suwon City is the first to be certified as an age-, child-, and women-friendly city. Currently, Suwon is pursuing various policies with the goal of creating an urban environment for underprivileged tourist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 "Five-Year Plan for the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policy to create a disability-friendly city nationwide.

However, the result of a field survey for Suwon Hwaseong, the representative tourism resource in Suwon, showed that lack of ramps in pathways or restrooms limited the movement of the disabled and elderly, and damaged safety devices and poor cleanliness in infant/toddler facilities also limited their use by visitors. When tourism is being discussed as a right of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Anti-discrimination in tourism activities" provision in the Anti-Discrimination of Disabled Act in 2017, the actual status of Suwon Hwaseong reveals limitations in Suwon citizens' right to enjoy sightseeing.

Thus,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a barrier-free tourism environment in which underprivileged tourists can safely enjoy sightseeing, through the examination of domestic policies and the review of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 studies, an analysis of previous research, and in-depth interviews. Although policies for underprivileged tourists has shifted from "tourism for the disabled" narrowly focused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a more encompassing tourism for all

underprivileged persons, the promotion of barrier-free tourism has still focused mainly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so that it marginalizes thus marginalizing the needs and desires of the elderly and infants/toddlers.

In previous leisure constraint researches, all three groups - the disabled, elderly, and infant/toddlers - had structural constraints, but they differed such that the disabled had a lack facilities (information), the elderly had economic burdens, and infants/toddlers had safety and hygiene concerns. In addition, whereas the disabled and elderly met with interpersonal constraints from concerned or opposing siblings, caregivers actively participated in leisure and tourism for the sake of their infants/toddlers and derived happiness from their children's enjoyment of these activities.

These differences were also evident in the in-depth interviews with underprivileged tourists that the disabled and infants/toddlers experienced the "absence of helpers" as part of their interpersonal constraints, and the elderly felt constraints by "caretaking of family members." In relation to structural constraints, the elderly reported that they did not have enough access to leisure programs that fit with their personal schedules, and the disabled strongly expressed the need for improvement in transportation and amenities. Caregivers of infants/toddlers discussed the need for improvement in nursing rooms, diaper-changing tables, and play ground areas, as well as the availability of child-friendly foods and meals.

Although the disabled, elderly, and infant/toddlers all have high limitations in leisure and tourism participation, the differences in each of their specific restrictions point to the need to establish a barrier-free tourism environment that addresses the similar needs of the groups as well as the customized plans for the different needs of each group, instead of establishing a barrier-free tourism environment for the disabled only. The present study recommends the following policies in order to establish a barrier-free tourism environment in Suwon that is differentiated from current barrier-free tourism practices.

First, a comprehensive and unified survey analysis of leisure and tourism of the disabled, elderly, and infants/toddlers is needed. A detailed and accurate analysis

of the subject is necessary in order to establish a systematic and long-term barrier-free tourism. Although Suwon City has examined the tourism status of the underprivileged through the “Suwon City Child-Friendliness Survey” and “WHO Age-Friendly City Certification Strategy,” the detailed information is still lacking, and it is not possible to identify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because differently-purposed surveys are used across studies. Thus, a regular study of statistical analysis of all underprivileged tourists is required in order to promote a “barrier-free tourism” policy in Suwon.

Second, an “underprivileged tourist awareness campaign” should be conducted for the non-disabled underprivileged group. Previous research and interviews confirmed that all of the disabled, elderly, and infants/toddlers experienced interpersonal constraints in the form of “negative attitudes of others.” The concern is how these constraints may lead to psychological withdrawal in the disabled and their giving up of leisure and tourism. Given the recent controversies in Korean society over the negative perceptions of the elderly, and social exclusion of infants/toddlers (caregivers) through “no-kid zones,” the awareness of underprivileged tourists should be promoted in order to create a social environment in which no one has to suffer from the negative attitudes of others in relation to their participation in leisure and tourism.

Third, “zoning” customized to each underprivileged group is necessary, starting with Suwon City’s most representative tourism resource of Hwaseong Fortress. As infrastructure improvements require a lot of budget and significant time span, a pilot project should be first carried out at Suwon’s Hwaseong Fortress before the gradual expansion throughout the remainder of Suwon City is carried out. If customized zones for each underprivileged group are established through the application of both a universal plan for underprivileged tourists and customized plans for each target group at the pilot site, then it would be possible to meet the detailed leisure and tourism needs of the disabled, elderly, and infant/toddlers.

Lastly, the Suwon Ordinance Enactment is required to enact that can support policies for the establishment of Suwon City’s barrier-free tourism environment. Although central government and higher-level local governments are promoting

barrier-free tourism projects, there are limitations to checking and improving policy trends due to the lack of a legal basis. Related ordinances thus need to be enacted in order to reach goals. Through these ordinances, the “barrier-free tourism” policies pursued independently of the various projects and plans for underprivileged tourists undertaken by Suwon City can now be integrated into one that makes more detailed promotion of customized plans for the different underprivileged tourist groups possible.

Keyword : Barrie-Free Tourism, Underprivileged Tourists, Leisure Constraint, the Disabled, Elderly, and Infant/Toddlers Tourism, Underprivileged Tourist Awareness Campaign

| 저자 약력 |

송화성

관광학 박사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현)

E-mail : hssong@suwon.re.kr

주요 논문 및 보고서

「수원화성 방문객 집계 및 관리 개선방안」 (2019, 수원시정연구원)

「영유아 동반 가족을 위한 접근가능한 수원화성 관광환경 조성 방안」 (2019, 수원시정연구원)

「관광교통을 활용한 수원 관광 활성화 방안」 (2018,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화성 성곽길 이용실태 및 개선방안」 (2018, 수원시정연구원)

「Value-Based Profiles of Visitors to a World Heritage Site: The case of Suwon Hwaseong Fortress (in South Korea)」(2019, Sustainability)

「장소에착 잠재프로파일 분류 및 특성 분석: 수원화성문화제 방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18, 관광연구)

「Visitors' Perceived Place Value and the Willingness to Pay in an Urban Lake Park」 (2018,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CVM을 활용한 역사관광자원의 입장료 지불가치 추정: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2016, 지방정부학회)

